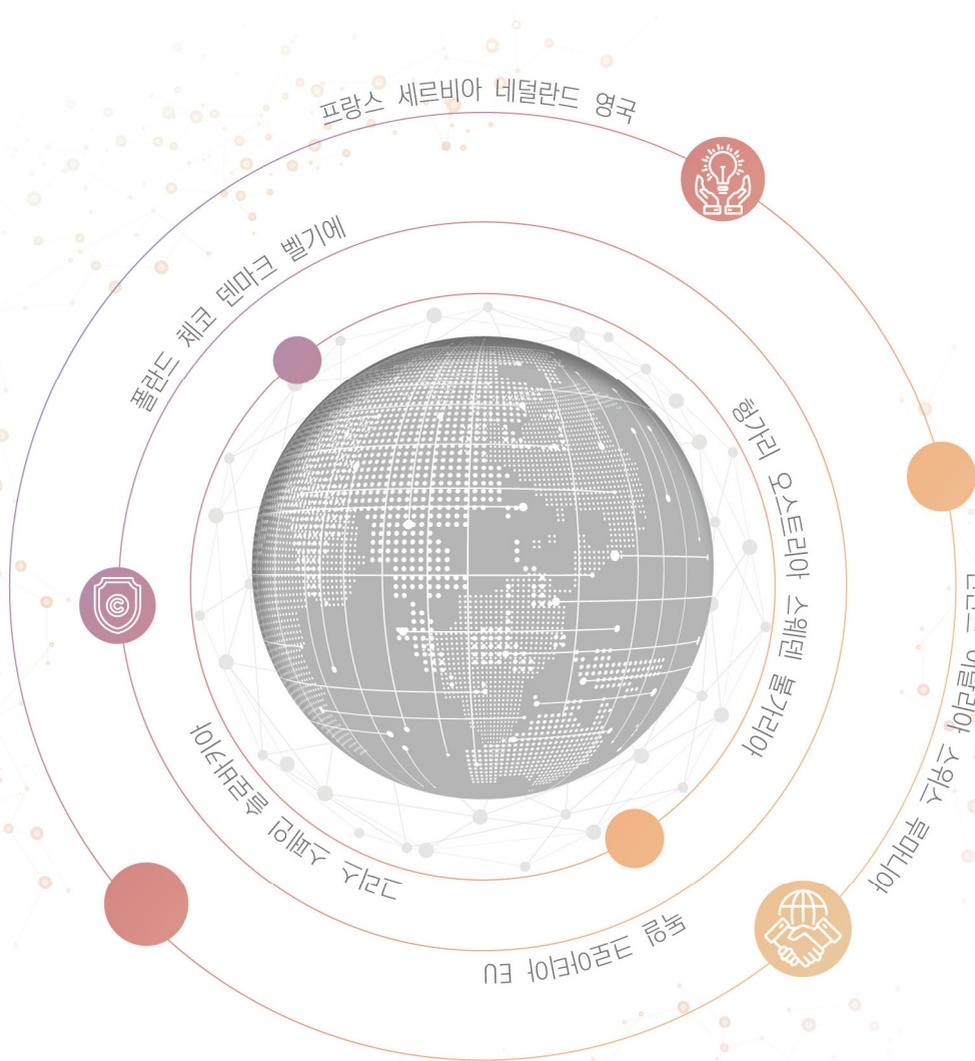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b>I. EU</b>	<b>1</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5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5
<b>II. 그리스</b>	<b>17</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3
<b>III. 네덜란드</b>	<b>35</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7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40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58
<b>IV. 덴마크</b>	<b>61</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63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66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75
<b>V. 독일</b>	<b>77</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79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82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00
<b>VI. 루마니아</b>	<b>103</b>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05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07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18

---

**Ⅶ. 벨기에** **11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2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2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31

---

**Ⅷ. 불가리아** **133**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3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3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50

---

**Ⅸ. 세르비아** **151**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5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57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72

---

**X. 스웨덴** **175**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7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18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195

---

**XI. 스위스** **197**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19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01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13

---

**XII. 스페인** **217**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1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2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36

---

**XIII. 슬로바키아** **23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4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4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51

---

**XIV. 영국** **253**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5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5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75

---

**XV. 오스트리아** **281**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8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286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293

---

**XVI. 이탈리아** **295**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29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0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06

---

**XVII. 체코** **307**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0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12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21

---

**XVIII. 크로아티아** **323**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2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2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38

---

**XIX. 폴란드** **33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4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4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54

---

**XX. 프랑스** **355**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5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6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74

---

**XXI. 핀란드** **37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38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38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397

---

**XXII. 헝가리** **399**

---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40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40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413





### 1.1. 지식재산권 보호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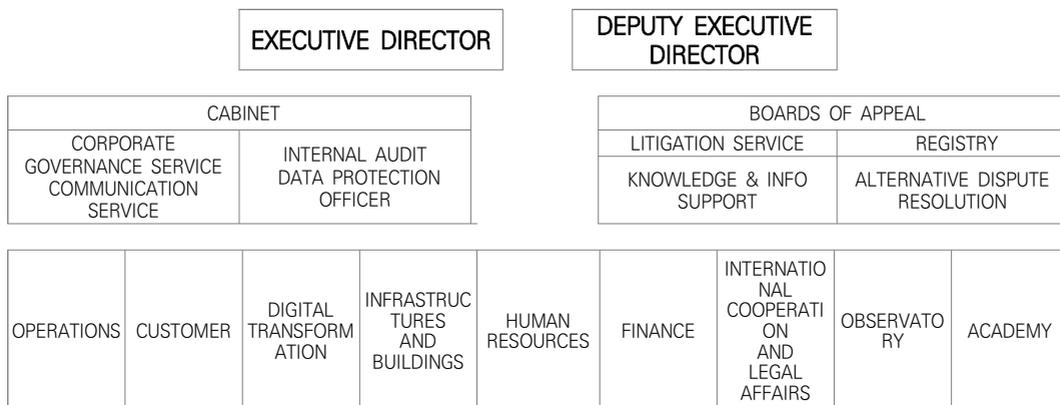
유럽연합(이하 'EU'라고 함)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경로는 크게 ① EU 가입국 개별 단위의 보호와 ② EU 차원에서의 보호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특허의 경우, EU에 가입한 각국 개별 출원 및 개별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거나('① 경로'), EPO(유럽특허청)에서 출원 및 심사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후, 등록 이후 단계부터는 출원 시 지정한 국가에서 등록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② 경로').

또한, 상표 및 디자인의 경우, 각국 개별 출원 및 개별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① 경로'), 특허와 달리 유럽공동체상표(EUTM) 및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제도를 둬으로써 출원부터 등록까지 하나의 통합된 절차를 통해 EU 가입국 전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② 경로').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특허 출원 및 심사에 관해서는 EPO에서,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심사 및 등록에 있어서는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서 담당하며, 그 외의 지적재산권 보호 운영 주체로서 각 회원국 정부 및 EU 집행위원회 등이 있다.<sup>1)</sup>



[그림] 유럽지식재산청의 조직도<sup>2)</sup>

1) 정인숙, 성재호, 지성우, "해외 뉴스저작권 관련 제도 및 판례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2. 8. 31., 92쪽

2)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the-office/organisational-chart>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3)</sup>

특허							
연도	EU회원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기타	전체
2015	76,194	42,597	21,421	5,728	6,407	7,657	160,004
2016	76,038	40,032	20,943	7,092	6,687	8,295	159,087
2017	78,493	42,463	21,774	8,641	6,457	8,766	166,594
2018	81,594	43,789	22,591	9,480	7,263	9,764	174,481
2019	82,493	46,201	22,066	12,247	8,287	10,112	181,406

디자인							
연도	EU회원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기타	전체
2015	59,346	8,113	2,261	6,071	1,107	9,437	86,335
2018	62,696	10,875	2,610	8,967	520	7,817	93,485
2019	61,521	11,179	2,211	13,897	730	7,479	97,017

상표							
연도	EU회원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기타	전체
2015	89,412	16,886	2,616	4,189	2,060	15,268	130,431
2016	86,324	15,507	2,334	8,036	1,600	10,955	124,756
2017	96,803	16,707	2,734	12,216	1,473	16,644	146,577
2018	100,108	17,474	2,744	13,546	1,567	17,173	152,612
2019	104,016	18,158	3,129	15,277	1,820	18,116	160,516

3)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strategic-drivers/ipexcellence/quality>

## 2.1. 특허

### 가. 보호대상<sup>4)</sup>

EPC(유럽특허조약)는 유럽특허 부여에 관한 협약으로 유럽 특허법을 의미한다. EPC는 ‘발명’의 의미에 대해 정의내리고 있지 않으나, 발견, 학문상의 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지적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나열 등 추상적이거나 비기술적인 것들을 발명으로 볼 수 없는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특징 모두를 가져야만 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취득절차 - EPO를 통한 유럽특허 출원 절차

#### 1) 개요<sup>5)</sup>

① 출원, ② 방식 심사, ③ 서치(search)심사, ④ 공개(명세서/서치보고서), ⑤ 심사청구, ⑥ 실체심사, ⑦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통지 또는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를 극복한 경우) 특허 허여, ⑧ 특허 허여한 경우, 등록 단계로 이루어진다.

#### 2) 구체적 특징<sup>6)</sup>

##### 가) 출원 단계

영어, 프랑스, 독일 중 택일할 수 있고, 그 외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기 3개 국어 중 1개 국어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및 서치보고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하다.

4)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PO

5) 온-나라정책연구, 유럽 지재권제도 해설서

6) [http://biz.kista.re.kr/patentmap/front/diy.do?method=m03L\\_03\\_02](http://biz.kista.re.kr/patentmap/front/diy.do?method=m03L_03_02) (IP통합지원포털)

## 나) 심사 단계

예비심사를 통해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고, 서치보고서를 발급하면 그 결과에 대해 보정이 가능하며, 출원 철회도 가능하다.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공개되며, 조기공개 요청도 가능하다.

심사관이 실제심사를 하여, 거절이유가 발견되는 경우 기간을 지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 다) 등록 단계

특허증을 발급하고, 특허결정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지정국에 지정국 언어로 명세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 유지료는 3년차부터 매년 출원일에 납부하고, 등록 유지료는 각 지정국에 매년 납부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및 유럽특허 권리행사의 특이점

존속기간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까지이고, 유럽특허는 회원국 국내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특허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적용한다.

개별 국가의 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국내 특허와 유럽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특허의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지정국가 내의 법원 판결은 해당 지정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sup>7)</sup>

### 2) 보호범위

EPC는 발명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유럽특허와 유럽특허출원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참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최효선 변리사, “유럽지재권 제도 최신동향”, 14쪽

## 마. 심판제도

### 1) 거절결정 또는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부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 또는 이의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무효심판<sup>8)</sup>

등록 특허권을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는 1개국 1특허제도의 특성에 따라 각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바. 비용<sup>9)</sup>

구분		금액
출원료	온라인 출원	€ 125
	서면 출원	€ 260
	35면 초과 1면당	€ 16
조사료	2005년 7월 1일 이전 출원	€ 920
	2005년 7월 1일 및 이후 출원	€ 1,350
지정료	모든 EPC 계약국 지정 (2009.4.1. 및 그 이후 출원)	€ 610
	EPC 계약국 지정 1개국당 (2009.4.1. 이전 출원)	€ 105
심사료	2005.7.1. 이전 출원	€ 1,900
	2005.7.1. 및 이후 출원	€ 1,700
등록료	2009.4.1. 및 이후 출원	€ 960
	35면 초과 1면당	€ 16

8) <https://www.bioin.or.kr/board.do?num=119291&cmd=view&bid=system> (BioIN)

9) <https://my.epoline.org/epoline-portal/classic/epoline.Scheduleoffees> (EPO)

## 2.2. 실용신안

실용신안제도는 EU의 각 회원국 간의 제도 차이가 큰 이유로 회원국 간의 국내법 통일화는 별개로 하고, 단일 실용신안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2.3. 상표 - 유럽공동체상표

### 가. 보호대상

유럽공동체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디자인,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표장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등록요건

직권 심사에서는 절대적 거절이유, 즉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인지 여부 및 '식별 가능성' 여부만이 심사대상이 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거절이유, 즉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 판단' 등이 상표 등록을 위한 심사 대상이 된다.

### 다. 취득절차

#### 1) 개요

① 출원, ② 예비 심사(방식 심사), ③ 유럽공동체 조사, ④ 심사, ⑤ 출원 공고, ⑥ 이의신청, ⑦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2) 구체적 특징

예비 심사(방식 심사) :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은 실제 심사 전에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예비 심사가 이루어진다. 출원일이 부여된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은 모든 EU 회원국에서 통상의 국내 출원과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유럽공동체상표 출원은 절대적 거절이유 유무에 대한 심사만이 이루어지고, 상대적 거절이유 유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효력 발생 및 존속기간

상표가 등록되면 그 효력은 EU 회원국 전체에 발생한다. 유럽공동체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가능하다.

### 2) 양도 및 사용권

#### 가) 양도 등록

유럽공동체상표권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회원국 단위로는 양도할 수 없다. 양도는 공동체 상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양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나) 사용권 등록

사용권은 양도와 달리 특정 회원국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고, 상품 또는 용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권 역시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출원인은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유럽공동체상표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등록상표를 법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불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역시 가능하다.

## 바. 비용<sup>10)</sup>

구분		금액
출원료	온라인 출원	€ 850
	서면 출원	€ 1,000
이의제기 수수료		€ 320
불복심판 수수료		€ 720
취소 또는 무효 심판 수수료		€ 630
등록료		별도로 없음

10)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fees-payable-direct-to-euipo> (EUIPO)

## 2.4. 디자인 - 유럽공동체디자인

### 가. 보호대상

유럽공동체디자인 제도는 등록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 공동체디자인(RCD)’과 등록되지 않았으나 공중에게 이용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음을 조건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 공동체디자인(UCD)’의 2 종류의 보호체계가 있다.

유럽공동체디자인 규칙(CDR)은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을 제품 자체 및/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조직 및/또는 재질의 특징에서 얻어지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등록을 위해서는 방식 심사와 함께 해당 디자인 출원이 CDR이 규정하는 디자인 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공서양속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일부) 실체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성, 독창성 등의 실체 심사는 하지 않으며, 위 요건에 대한 심사는 등록 후 제3자의 무효청구 시 이루어진다.<sup>11)</sup>

### 다. 취득절차

#### 1) 개요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등록공고, ④ 무효 청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2) 구체적 특징

디자인 창작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지시킨 날로부터 1년 안에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보호받을 수 있다(출원 유예기간).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상표의 경우와 달리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등록 무효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11)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rcd-registration-process> (EUIPO)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RCD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최대 4회 한도로 갱신이 가능하여 최장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2) 보호범위<sup>12)</sup>

RCD와 UCD 모두 EU 전체에 걸쳐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RCD의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등록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당해 물품을 보관하는 행위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에 반해, UCD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디자인 창작자가 UCD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UCD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디자인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의 효과는 EU 회원국 전체에 발생한다. 따라서 EU 회원국 단위로 양도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사용권은 EU 전역 또는 회원국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독점적 사용권 및 비독점적 사용권 모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유럽공동체디자인 출원에 대한 방식 심사에서 거절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디자인 등록에 대한 불복절차로 EUIPO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EUIPO는 RCD 소유자에게 심판 청구사실을 통지하고 2개월 기간의 답변기회를 부여하며, 무효심판에서 패소한 자는 항고심판을 제기하여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sup>13)</sup>

12) <https://euiipo.europa.eu/ohimportal/en/cd-general-questions> (EUIPO)

13) <https://euiipo.europa.eu/ohimportal/en/disputes> (EUIPO)

**바. 비용<sup>14)</sup>**

구분		금액
등록료		€ 230
디자인 추가에 따른 추가 등록 수수료	2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각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	€ 115
	11번째부터 각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	€ 50
공개 수수료		€ 120
디자인 추가에 따른 추가 공개 수수료	2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각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	€ 60
	11번째부터 각 디자인에 대한 수수료	€ 30

**2.5. 저작권**

**가. 개요 및 보호대상**

EU는 지침을 제정하여 EU 회원국들이 국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회원국 내 저작권 관련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EU와 국제 수준에서 완전히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가법이 적용된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 안무저작물, 건축 및 응용미술의 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하다.

**나. 저작권의 내용**

사용권으로 저작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저작물의 공표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할 권리, 저작물상 자신이 저작자임을 인정하는 권리,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금지권으로서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중지 청구권, 저작권 침해 복제본 또는 기타 결과물의 출처 및 판매경로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권리,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침해물의 폐기를 청구할 권리 등이 있다.

<sup>14)</sup>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rcd-fees-directly-payable-to-euipo> (EUIPO)

## 다. 저작권의 존속기간

EU는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에는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음반 저작권은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 라. 저작권의 양도 및 저작물의 이용 허락<sup>15)</sup>

저작권이 있는 제3자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특정하여 허용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EU 국가(예를 들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제외)에서는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 저작권 소유권을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관련 저작권의 완전한 이전을 수반하므로, 특별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권리의 양도는 영구적으로 이루어진다.

## 마. 등록요건<sup>16)</sup>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EU에서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잠재적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하고 저작권 고지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 바. 비용

별도로 등록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sup>17)</sup>

15) European IPR Helpdesk, 'Fact Sheet Copyright essentials', 8-9쪽 (EU)

16) European IPR Helpdesk, 'Fact Sheet Copyright essentials', 3-4쪽 (EU)

17) European IPR Helpdesk, 'Fact Sheet Copyright essentials', 6쪽 (EU)

## 2.6 기타

### 가. 영업비밀<sup>18)</sup>

#### 1) 보호대상 및 요건

영업비밀은 사업, 상업 또는 영업에 관한 기밀 정보를 말하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상업적 가치,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와 달리 영업비밀은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등록 절차 역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조치

비공개 계약(Non-disclosure agreements : NDAs)의 체결, 각종 계약서에 비공개 및 비경쟁 조항 삽입, 직원 활동 모니터, 문서 등에 영업비밀임을 알리는 표시, 기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호 가능하다.

### 나. 지리적 표시<sup>19)</sup>

#### 1) 보호대상

제품이 특정 지리적 원산지 및 명성(특정 품질 또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받을 수 있다.

#### 2) 지리적 표시의 효력

지리적 표시는 등록된 명칭의 오용 또는 모용으로부터 권리자의 상품을 보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보증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 지역의 모든 생산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집단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18) European IPR Helpdesk, 'Fact Sheet Trade Secret', 2-4쪽 (EU)

19)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 (EU)

### 3.1. 사법적 구제

#### 가. 특허 분쟁

EPC에 의해 설립된 유럽 특허청을 통한 통일화된 심사 및 허여 절차를 구비하고 있으나, 유럽 특허에 대한 통일화된 무효소송 절차나 침해소송 절차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권 행사에 따른 분쟁은 각국 법원이 관할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동일 사안의 경우에도 특허소송 결과나 소송 비용 및 절차에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sup>20)</sup>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 단일특허제도’ 및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발효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영국의 EU 탈퇴 등의 영향으로 위 제도 및 협정의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sup>21)</sup>

#### 나. 상표 및 디자인 분쟁<sup>22)</sup>

EU는 공동체상표법원을 두고 유럽공동체상표권의 사용에 따른 침해 소송, 유럽공동체상표권의 무효, 취소 소송 및 출원 공고 이후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공동체상표법원 및 공동체디자인법원에서의 판결을 유럽공동체 전역에 효력이 있다.

공동체상표법원은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회원국별로 몇 개의 법원을 지정하여 유럽공동체 상표에 관한 사건을 관할한다. 공동체상표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공동체상표 제2심 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 제2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회원국법에 따라 상고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소송 역시 회원국들이 지정한 공동체디자인법원에서 담당한다.

### 3.2. 행정적 구제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의 관련 지침 및 국경조치로서 세관 절차에 따른 통관 보류, 압류 및 폐기 처분을 통해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20)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심층이슈보고서, 유럽 주요 국가별 소송 제도의 차이와 그에 따른 대응 방법’, 4쪽

21) 법령정보관리원, ‘유럽 단일특허제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9쪽

22) 세계법제정보센터, ‘유럽의 지적재산권제도 연구’, 86쪽 및 108쪽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II. 그리스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2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3



## 1.1. 개요

그리스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저작권, 식물품종, 전통적 지식(Traditional knowledge) 등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전통적 지식은 일정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지역 문화와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적응에 기초하여 개발해왔고 개발을 유지하고 있는 정보를 말하며,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특정 식물의 사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7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 역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같은 규정에서 보호하고 있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그리스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상표법 제2239/94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절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보호(연장 가능)된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 2121/1993에서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그리스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0. 10. 9.)	가입	가입	가입 (2000. 8. 10.)	가입	미가입

한편, 그리스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는 그리스 산업재산권 기구인 OBI에서, 상표의 등록은 그리스 상표청(Greece Trademark Office)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는 그리스 저작권 기구인 OPI에서 주로 관장한다.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23)</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745	19	-	-	1,223	348
2015	640	23	-	-	1,218	368
2016	679	40	-	-	1,210	310
2017	600	91	-	-	1,442	539
2018	550	149	-	-	1,154	482

2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GR](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GR)

## II. 그리스(Greece)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그림] 그리스 OBI의 조직도<sup>24)</sup>

24) <http://www.obl.gr/el/timeline/>

## 2.1. 특허<sup>25)</sup>

### 가. 보호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발명의 유형으로 물건발명 및 물건의 제법발명이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예술/문학 작품
- 컴퓨터 프로그램
- 디자인,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게임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법칙 내지 방법
-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수술 방법 및 과정
- 인체 또는 동물에 적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
- 공중도덕에 반하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 1) 개요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및 조사보고서(search report) 작성, ④ 조사보고서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제출, 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를 극복한 경우) 특허하여 단계로 이루어진다.

#### 2) 구체적 특징

그리스는 부가특허권 제도(Patent of Addition, PoA)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이미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다른 특허발명(주된 특허발명)에 대한 개량(modification)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특허권 존속기간을 포함하여 주된 특허발명과 운명을 같이 한다.

25) GUIDELINES on how to acquire Patents, PoA and UMC (그리스 산업재산권 기구, OBI)

출원인은 조사보고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경우, 조사보고서 결과 통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관련 수수료를 산업재산권 기구(OBI)에 지불한 경우에만 취득되어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특허권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특허권 소유자에게 그 발명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아래에 관해 독점적이고 시간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 해당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을 생산, 제공 또는 보유하는 행위
-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공정을 시장에서 적용 및 제공하는 행위
-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공정을 통해 형성된 제품을 생산, 제공 또는 해당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목적을 위해 제품을 사용 및 보유하는 행위
- 상기 항들의 의미 내에서 제3자가 해당 발명을 생산적으로 이용하거나, 특허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 2) 존속기간<sup>26)</sup>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며, 부가특허권의 경우 주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시점에 함께 만료된다. 해외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그리스에 출원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 3)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특허 출원 및 특허권을 서면 계약에 따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내지 상속은 특허등록부에 양도계약서 또는 상속 증서를 등록하여 공고하는 때에 완료된다.<sup>27)</sup>

특허권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특허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특허의 경우에는 모든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시권 설정에 관한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실시권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도 내지 상속이 불가하다.<sup>28)</sup> 또한, 상기 계약에 의한 경우 외에 공중 보건 또는 국방을 위한 목적으로 특허 실시권이 공공 부문 기관에 부여될 수 있다.

26) 그리스 특허법 제11조 규정 참조

27) 그리스 특허법 제12조 규정 참조

28) 그리스 특허법 제12조 규정 참조

#### 4) 특허권의 효력 제한

그리스 특허법은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로, 비전문적 또는 연구목적의 발명의 사용, 일시적으로 그리스 영토로 진입하는 자동차, 철도, 선박 또는 비행기에 구축된 발명의 사용과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0조)

#### 마. 심판·소송 제도

하자있는 특허권에 대하여 해당 특허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특허권 소유자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허무효소송은 민사재판소에서 관할한다. 발명의 일부에 대해서만 법원에 무효가 제기되어 인용될 경우 특허는 무효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한된다(특허법 제15조).

#### 바. 비용<sup>29)</sup>

(단위 : €)

항목	비용
출원료	50
11번째 이후 각 청구항에 대한 수수료	청구항 당 30
조사보고서 수수료	300
특허 등록료	150

29) 상세 비용은 그리스 산업재산권 기구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www.obl.gr/obi/?tabid=201>)에서 검색 가능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그리스는 명확한 형태를 가진 3차원의 물체(예: 도구, 기기, 장치 등)로서 기술적 문제를 해결 하는데 적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신규 개발(신규성)되었으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산업상 이용가능성)한 실용신안 모델에 대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다. 취득절차<sup>30)</sup>

실용신안 출원 신청서는 산업재산권 기구(OBI)에 제출되고, 신청서 제출 요건 기타 관련 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다.

출원서 신청 방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OBI는 출원인의 책임을 전제로 실용신안의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실용신안 등록증을 부여한다.

그 밖의 실용신안권 취득절차에 관한 사항은 특허에 관한 현행법이 적용된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실용신안권 소유자에게 그 실용신안을 생산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실용신안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을 생산, 제공 또는 보유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시간제한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7년간 보호된다.

#### 2) 실용신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실용신안 출원 및 실용신안권을 서면 계약에 따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내지 상속은 실용신안 등록부에 양도계약서 또는 상속 증서를 등록하여 공고하는 때에 완료된다.

30) 그리스 실용신안에 관한 법률 참조

실용신안권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특허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모든 실용신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시권 설정에 관한 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실시권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도 내지 상속이 불가하다.

또한, 상기 계약에 의한 경우 외에 공중 보건 또는 국방을 위한 목적으로 실용신안 실시권이 공공 부문 기관에 부여될 수 있다.

### 3)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

실용신안권 역시 특허법을 준용하여, 비전문적 또는 연구목적의 사용, 일시적으로 그리스 영토로 진입하는 자동차, 철도, 선박 또는 비행기에 구축된 실용신안의 사용과 같은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마. 심판·소송 제도

특허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하자있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해당 실용신안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실용신안권 소유자를 상대로 실용신안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바. 비용<sup>31)</sup>

(단위 : €)

항목	비용
출원료	50
11번째 이후 각 청구항에 대한 수수료	청구항 당 30
실용신안 등록료	100

31) 상세 비용은 그리스 산업재산권 기구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www.obi.gr/obi/Default.aspx?tabid=202>)에서 검색 가능

## 2.3. 디자인<sup>32)</sup>

### 가. 보호대상

그리스는 선, 모양, 색상 등과 같은 특징에서 비롯되는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산업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성은 실질적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디자인과 다르다는 인상을 줄 때 독창성이 인정된다.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경우, 디자인이 통합된 제품의 기능이 전적으로 기술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그리스에서 디자인 등록절차는 짧고 간단하다. 디자인이 출원되어 4개월의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관련 수수료가 모두 지급될 경우 OBI는 별도로 신규성 및 독창성에 대한 심사 없이 출원인의 책임을 전제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허용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디자인권은 사용자로 하여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사디자인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보호된다.

32) [http://www.obl.gr/obl/Portals/0/ImagesAndFiles/Files/sxedia\\_ypodeigmata\\_en.pdf](http://www.obl.gr/obl/Portals/0/ImagesAndFiles/Files/sxedia_ypodeigmata_en.pdf) (출처: 그리스 산업재산권 기구)

## 2)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5년까지 존속 가능하다.

## 3) 효력 제한

디자인권은 업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실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그리스 영토에 진입한 타국에서 등록된 선박 및 항공예의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 4)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에 대한 실시권을 서면 계약에 의해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서면 계약에 따라 등록디자인에 대한 독점권을 양도 내지 상속할 수 있고, 이는 권한 기관의 등록 내지 인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라. 심판·소송제도

등록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 등록 디자인권의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 무효 사유에는 디자인권 소유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신규성이나 독창성이 결여되었음에도 등록된 경우,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효화된 디자인권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 마. 비용<sup>33)</sup>

(단위 : €)

항목	비용
출원 및 등록료	100
공개료	30
등록 갱신료	6년차-10년차 : 100 11년차-15년차 : 150 16년차-20년차 : 200 20년차-25년차 : 250

33) 상세 비용은 그리스 산업재산권 기구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www.obl.gr/obi/Default.aspx?tabid=203>)에서 검색 가능

## 2.4. 상표<sup>34)</sup>

### 가. 보호대상

그리스는 상거래에서 타인의 상품 및 상표와의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 문자, 로고, 상품 또는 포장의 모양 기타 전통적 형태, 색상 및 색상의 조합을 모두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상표법은 소리 및 그래픽에 대해서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가져야 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표시
- 공공질서 및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상표
- 제품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 그리스 상표법에 규정된 국가명, 국기, 인장 등
- 종교적 상징이나 기타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공익적 표시 등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심사, ③ 의견서 제출, ④ 등록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심사관이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등록이 하여되고, 이후 이의제기 목적으로 사무국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심사관이 출원상표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한 경우, 출원인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럼에도 출원인의 의견서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출원인은 상표 행정위원회에 다시 불복할 수 있고, 나아가 상표 행정위원회 역시 출원인의 의견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1심 행정법원에 추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직권심사에서 거절이유 통지가 없으면 상표출원은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등록이 진행되나, 거절이유가 제기된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상표를 등록받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된다.<sup>35)</sup>

34) 상표법 규정, <https://iclg.com/practice-areas/trade-marks-laws-and-regulations/greece> 참조

35) <https://iclg.com/practice-areas/trade-marks-laws-and-regulations/greece>

## 라. 상표권의 효력

###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간 연장될 수 있다.

### 2) 보호범위

상표권의 법적 보호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고,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처분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 3) 상표권 이전 및 사용권 설정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표 양도 신청서와 함께 양도증서를 제출하고, 양도 수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표권자는 독점배타적 사용권 내지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제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 마. 심판·소송제도<sup>36)</sup>

### 1) 상표취소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등록상표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상표권자가 등록 5년 동안 등록상표를 불사용한 경우
- 등록상표에 등록 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등록상표 취소 결정에 대하여 패소 당사자는 1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 상표무효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상표 등록 후 5년 이내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관련 절차는 이의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무효소송은 상표 행정위원회(Trademarks Administrative Commission)에서 심리되며, 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패소당사자는 1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36) <https://iclg.com/practice-areas/trade-marks-laws-and-regulations/greece>

**바. 비용<sup>37)</sup>**

1류 1상표 출원을 위한 관납료는 110 €이고, 상표 류를 추가하는 비용은 각 20 €이다. 상표등록에는 별도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2.5. 저작권<sup>38)</sup>****가. 보호대상**

저작권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는 독창적인 지적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창작물, 특히 글이나 구술 텍스트, 음악적 구성, 음악, 안무 및 연극 작품,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등을 말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의 선택 도는 배열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나. 저작권의 효력****1) 독점배타적 권리 및 존속기간**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그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이다.

존속기간은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이며, 공동저작물에 관해서는,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의 생애 및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그의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

**2)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저작권 중 재산권은 양도 가능하나, 인격권은 자연인 사이에 양도할 수 없으며, 다만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에게 전가되고, 저작권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 저작권자의 뜻에 따라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37) <https://iclg.com/practice-areas/trade-marks-laws-and-regulations/greece>

38) 그리스 저작권법 참조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계약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 상대방은 수탁받은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저작물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의 저작권 위탁 및 사용권 설정은 독점적 내지 비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다. 등록요건<sup>39)</sup>

그리스는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그리스 저작권법은 작품의 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식도 규정하지 않는다. 작가는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특정 날짜에 작품의 존재 등에 대한 증거를 얻고자 할 경우, HCO(그리스 저작권 기구)에 해당 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다.

#### 라. 비용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는 이유로 저작권 유지료가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39)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copyright-2020/greece> (출처 : Chambers And Partners)

### 3.1. 민사적 대응

#### 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침해 대응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지방법원의 민사법원에서 관할한다.<sup>40)</sup>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소유자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협이 있는 경우, 침해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고 관련 침해 물건에 대한 제거 또는 폐기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상표권 침해 대응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민사법원에 심리된다. 이 경우 상표 등록의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행정법원 및 상표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

상표권 침해금지청구는 침해발생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청구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는 침해발생 년도가 완료된 후 5년까지 청구 가능하다.

#### 다. 저작권의 침해 대응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65조에 따라,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협이 있는 경우, 침해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고 관련 침해 물건에 대한 제거 또는 폐기 또한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2. 행정적 대응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65A조에 따라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0)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4-622-976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4-622-976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

### 3.3. 형사적 대응

#### 가. 특허, 실용신안권의 침해 대응

그리스 법에 따르면 특허 침해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다만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행위가 불공정 경쟁행위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형사소송이 가능할 수 있다.

#### 나. 상표권의 침해 대응<sup>41)</sup>

그리스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고, 고의적인 상표 침해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 처벌은 최소 6개월의 징역 및 최소 6,000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다. 저작권의 침해 대응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6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3.3. 기타 관련 내용<sup>42)</sup>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된 특허 침해 소송은 일반적으로 2 ~ 3 년 동안 지속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 된 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 제기 후 160일 이내에 심리를 진행해야 하고, 즉시 결정을 내려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41) <https://iclg.com/practice-areas/trade-marks-laws-and-regulations/greece>

42)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4-622-976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4-622-9768?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Ⅲ. 네덜란드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4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58



## 1.1. 개요

네덜란드는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에 발맞추어 내부 규정을 정비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재권 중에서도 특히 저작권, 상표권, 상호권, 특허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에서 발표한 2020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다.

특허법으로는 새로운 기술제품·기술공정의 발명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네덜란드는 베네룩스협약에 기한 상표 및 디자인법으로 기업가의 재화를 구별하기 위한 기호(sign) 등을 보호하고 제품의 2차원 혹은 3차원 외관 형상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4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추가로 10년간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법을 통하여 문학, 학술,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인접권법을 통하여 실연자(연주자, 배우, 댄서 등),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외에도 상호권, 데이터베이스권, 식물 품종보호권 등을 인정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이름, DB에 대한 재산권,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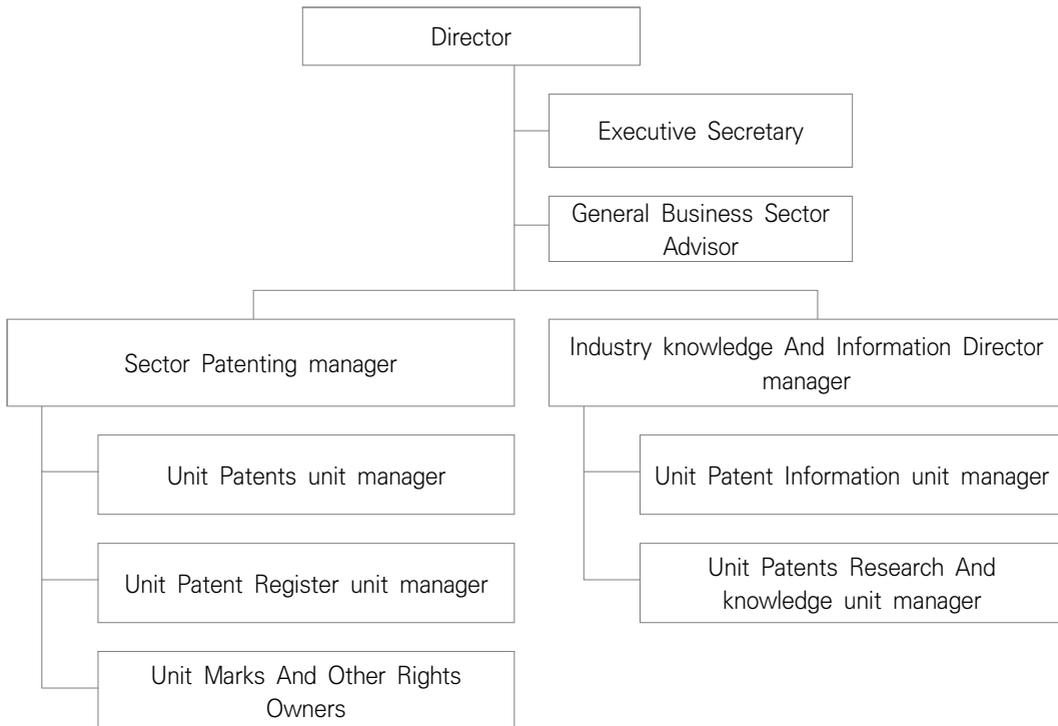
네덜란드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제품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9. 7. 10.)	가입	가입	가입 (1998. 4. 1.)	가입	가입

한편, 네덜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sup>43)</sup>

네덜란드 특허청 (NL patent Office)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그 전에는 특허에 대한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1893년 현재와 같은 상표법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후, Patent Act 1995의 공포를 통해서 그동안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방식심사, 선행기술조사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출원된 특허 검토 및 등록, 특허 및 특허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일반인 및 발명자에게 제공, 선행 기술 조사, 초청 강연 및 특허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네덜란드 특허청 조직도

43)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11~16쪽

### III. 네덜란드(Netherlands)

네덜란드 발명자 보호 기구(Nederlandse Orde van Uitvinders- NOVU)는 네덜란드 자국 내의 발명자 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발명자들이 자신의 연구 및 발명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식 및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허 검색(Patent Search), 시장 검색(Market Research), 프로토타입에 대한 기술적 검색(Technical research including prototyping), 사업 계획 준비(Preparing a Business Plan)를 주된 업무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베네룩스 사무소(BOIP, 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는 상표 및 디자인의 등록에 대한 베네룩스 3국의 공식기관이다. 협약과 그 시행규정의 구현, 베네룩스 국가에서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를 촉진, 이사회가 지정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직무를 수행, 국제 EU 발전에 비추어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상표 및 디자인 베네룩스 법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44)</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9,150	288	47,626	-	3,067	-
2015	9,299	287	51,336	-	3,257	-
2016	9,128	314	48,999	-	4,465	-
2017	9,274	365	49,797	-	4,121	-
2018	9,253	394	48,154	-	4,019	-

44)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NL](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NL)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네덜란드 특허법은 '창의성이 있고 산업에 응용하기 쉬운 신규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sup>45)</sup>

#### 1) 신규성

네덜란드 역시 다른 국가와 유사하게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특허법 Art.4.에서는 '발명이 선행 기술의 일부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한 발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행기술은 특허 출원된 공개 문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출원일 이전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 2) 진보성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3) 산업상 이용가능성

네덜란드 특허법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발명의 대상은 농업을 비롯한 어느 산업 분야에서든 만들어질 수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로서, 산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네덜란드 특허법에서 규정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 및 컴퓨터 프로그램

45)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103-105쪽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인간 배아의 사용
- 인간이나 동물을 이용하여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
- 식물, 동물 품종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출원

특허 출원서는 서면으로 관할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①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②발명자의 성명과 거주장소를 기재, ③특허를 허여받고자 한다는 요청을 기재, ④발명의 요지에 대해 간결하게 적시, ⑤말미에서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독점권을 구하는 요지의 설명을 포함한 발명의 설명서를 첨부하고, ⑥설명서의 요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다(특허법 제24조 1항). 출원서 및 기타문서는 청구항을 제외하고는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로 되어있어야 하되, 청구항은 네덜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한다(특허법 제24조 3항).

출원서, 발명의 설명서, 도면 및 요약서는 장관령에서 정한 기타형식 규정도 따라야 한다(특허법 제24조 4항). 본 왕국 각료회의에서 일반 명령으로 정한 요율에 따른 금원을 관할특허청에게 납부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4조5항). 특허 출원일은 출원서를 제출한 날이 특허 출원일로 인정된다. 출원일 인정 요건은 ① 특허를 허여해 달라는 요청서, ② 출원인을 특정하는 내역서, ③ 발명의 설명서 및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제출이다. 위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은 위 서류에 관한 출원일의 등록을 거절하여야 하며, 즉시 이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특허법 제29조 3항).

우리나라에서 PCT를 통해 특허 출원이 가능하나, 네덜란드 특허법에 의해 유럽루트를 거쳐야만 한다. 먼저 유럽특허청으로 특허출원이 들어가야만 하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번역문 제출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2) 특허 심사 및 등록<sup>46)</sup>

### 가) 방식심사

특허 출원서의 형식에 맞게 기재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출원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네덜란드 특허청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분할 출원의 경우 분할 출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그에 관하여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함께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특허법 제30조). 통지서가 발송 된 후 3개월 내에 결함이 시정되어야 한다.

### 나) 선행 기술 조사

방식 심사를 거쳐 출원인이 인정된 경우라면 출원일로부터 13개월 내에 출원인은 관할 특허청에 특허 출원의 발명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의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2조1항). 다만, 분할출원이 관련된 경우, 위에 명시된 기간은 최초출원의 우선일로부터 1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그 날짜가 늦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서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2조2항).

선행 기술의 조사는 관할 특허청이 시행하며, 필요시 유럽 특허 협약에 명시된 유럽 특허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특허법 제34조 1항). 또한 관할 특허청은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결과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4조 4항).

발명에 대한 선행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발명을 특정할 수 있고 발명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바 관할 특허청이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행 기술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지서를 통해서 발명의 특징이 어려워서 선행기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는 그로부터 2개월 내에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그 기간 전에 출원인이 그 결함을 시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지하는 경우 관할 특허청은 해당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출원인에게 조속히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특허법 제35조 2항).

46)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112-116쪽

다) 출원 공개

출원인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나기 전 선행기술 조사가 이루어지며, 다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특허 등록부에 특허 출원을 등재하여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공개로서 특허 등록부에 먼저 등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경고나 보상금 청구권 등의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라) 특허 등록

출원 공개가 된 후 관할 특허청은 특허를 허가하여야 한다. 특허 등록과 관련해서는 특허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개가 된 경우에는 두 달이 지난 후 즉시 특허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할 출원의 경우에 있어 분할 출원은 특허 등록부에 기재되기 전 까지 하여야 하는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에 대한 통지가 있을 후 2개월 내에 할 수 있고 또한 이 기간에 대해서는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가 통지되고 나서는 4월까지의 불안정한 권리로서 분할 출원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특허를 허가하지 않고 기다리기 위해 인정된 것이며 4월이 지난 후 즉시 특허를 허가하여야 한다.

특허를 허가하게 되면 관할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를 통해 해당 출원에 속하는 설명서와 도면을 공고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 특허 명세서의 인증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를 허가함에 있어서는 후에 침해 또는 무효 심판과 같은 분쟁 시 빠른 해결을 위해서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는 특허 명세서에 첨부되어야 한다.



[그림] 네덜란드 심사 진행도

3) 소요시간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는 약 3년정도가 소요된다.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특허법 제36조, 제49조), 특허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특허권은 소멸한다(특허법 제61조).

### 2)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제조, 사용, 실시, 배포, 수출 등),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특허법 제53조).

특허 발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청구한 권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술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3) 선사용권

선사용권이란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네덜란드도 특허법 제55조 등에서 선사용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 4)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특허청에 특허권 권리 이전을 설정 등록을 하여야 한다(64조). 특허권 이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65조).

5) 실시권

실시권 (라이센싱)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권 설정은 (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한다.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와 강제라이선스(compulsory license)으로 나눌 수 있다. 허락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반면, 강제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된 특허권이 네덜란드에서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보다 출원일이 같거나 늦은 특허권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경우 등에 강제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다(특허법 제57조).

6) 특허권 포기(특허법 제63조)

특허권자는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효가 있다. 그러나 유효한 특허에 대해서는 장래를 향해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심판제도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바. 비용<sup>47)</sup>**

(단위: EUR)

수수료 유형		금액
출원	전자출원비용	80
	종이출원비용	120
국제 출원에 대한 송신료		50
라이선스 계약 등록 수수료		27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이름 변경 등록 수수료		11
연회비	4년차	40
	5년차	100
	6년차	160
	7년차	220
	8년차	280
	9년차	340
	10년차	400
	11년차~26년차	500~2400
특허 수정 수수료		120

47) <https://english.rvo.nl/onderwerpen/innovative-enterprise/patents-other-ip-rights/patents/fees-patents>

## 2.2.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이란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이뤄진 외관을 말한다.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 외관을 디자인으로 간주하며,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신규성이 있고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다(상표 및 디자인법 Article 3.1).

다만,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인식되는 제품 외관,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적용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연결되거나 다른 제품의 내부 또는 주위에 놓여 제품 각각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과 접하여 놓이기 위한 경우, 또는 그 형상 또는 치수가 반드시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하는 제품외관의 특징 이 있는 경우 등에는 보호대상이 아니다(Article 3.2).

### 나. 등록요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Article 3.1).

신규성이란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여타 다른 방식으로 공중에 공개된 적이 있는 경우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나 디자인은 명시적 묵시적 비밀 유지 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그 디자인이 제3자에게 공개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중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Article 3.3).

디자인이 당업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자 전에 공중에 공개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과 다른 경우,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창작성을 평가할 때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해야 한다(Article 3.3).

산업 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 방법에 의해 산업 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 생산 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산업 디자인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면 가장 먼저 출원한자에게 디자인 등록을 허가한다(Article 3.5).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다. 취득절차

### 1) 산업 디자인 출원<sup>48)</sup>

산업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산업 디자인을 기재한 서류는 1)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국적, 2) 제품의 외관, 3) 디자인이 있거나 통합여부와 물품의 표시, 4) 디자인의 색상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색상 코드와 함께 표시, 5)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6) 150자 이하의 디자인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 7) 창작자의 이름, 주소, 국적, 8)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9)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우선권 주장시), 10) 사진 또는 도면 등이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그 출원은 단일출원 혹은 복수출원으로 출원가능하다.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권은 출원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

### 2) 출원심사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 3) 등록

베네룩스 상표청은 국제 디자인공보인 “Bulletin International des dessins ou modèles”에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출원인이 베네룩스영역에서 효력을 갖도록 신청한 출원을 등록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권 발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등록 공고에 대하여 연기 신청할 수 있다(Article 3.11, 3.12).

48)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149쪽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4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복수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들은 일부에만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Article 3.14).

### 2) 효력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디자인권 소유자는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디자인의 적용,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제품의 사용,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창작자의 창작성을 고려할 때, 당업자에게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이란 제조, 제공, 마케팅, 판매, 납품, 임대, 수입, 수출, 전시,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 또한 그러한 목적 을 위해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Article 3.16).

### 3) 실시권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는 양도될 수 있다. 그러나 1) 서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사람간의 양도, 2) 베네루스 전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양도 또는 기타 이전의 경우는 무효이다(Article 3.25).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 실시권 설정(라이센싱)을 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배타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독립적으로 Article 3.17에 의한 손해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Article 3.26).

### 4) 선사용권

디자인 출원일 또는 우선권 전에, 선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상품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인식을 주지 않는 상품을 베네루스 영역 내에서 제조한 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소유 권리를 인정한다. 동일한 조건 하에서 제조 의향을 가지고 시작해온 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한다.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되더라도, 위와 같은 자는 수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을 계속해서 사용, 생산 등을 할 수 있다(Article 3.20).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마.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바. 비용<sup>49)</sup>

(단위: EUR)

수수료 유형		비용
출원	첫 한 개 디자인	150
	추가 2~10번째 각 디자인	75
	추가 11~20번째 각 디자인	38
	추가 21~50번째 각 디자인	32
갱신	1번째 디자인	102
	추가 2~10번째 각 디자인	51
	추가 11~20번째 각 디자인	25
	추가 21~50번째 각 디자인	21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청시 추가	12

49) <https://www.boip.int/en/entrepreneurs/registration-maintenance/fees/design#other>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제품이나 포장의 명칭, 디자인, 스탬프, 도장, 글씨, 모양, 형체, 그리고 어느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식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여타의 모든 기호는 개별상표로 보아 보호한다. 단, 제품 고유의 성질에 의해 부과되는 형체를 구성하는 유일한 기호로서, 그 제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기술적 결과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호는 상표로 볼 수 없다. 가문의 명칭은 상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법령의 규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 및 디자인법 Article 2.1).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등에 대하여 보호의 대상이 되며, 법조문에 명시된 표장 이외의 3D, 음향 등에 대한 표장들도 등록받을 수 있다.

베네룩스 국가들 중의 한 곳의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상표의 등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대해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상표의 등록, 출원 전 3년의 기간 중에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단체표장과 비슷한 상표의 등록 등의 경우에는 보호하지 아니한다(Article 2.4).

### 나. 등록요건<sup>50)</sup>

상표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자타상품 식별력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자타상품 식별능력에 독점적응성의 유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표법상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상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식별력이 요구되며, 상품의 식별력과 그 유무는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권의 효력제한 등 상표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개념이다.

상표의 식별력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암시적(시사적)표장, 임의선택표장, 조어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Article 2.11). 부등록 사유는 Article 2.4에서 나열하고 있다.

50)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81~82쪽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sup>51)</sup>

### 1) 상표 출원

상표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1)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국적, 2) 상표가 도안기호일 경우엔, 상표 및 적어도 한 장 이상의 프린트물, 3) 위임장, 4) 국제류별의 표기와 함께, 상품 및 서비스 리스트, 5) 단체표장의 경우 사용 및 조절규칙, 6) 우선권에 대한 정보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베네룩스 내의 국가 관청 또는 베네룩스 상표청에 출원하여야 한다.

파리협약 또는 Trips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우선권은 출원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은 소멸한다(Article 2.6).

### 2) 출원심사

베네룩스 상표청이 아닌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관청은 출원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출원이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베네룩스 상표청에 베네룩스 출원서를 송부하여야 한다(Article 2.5).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Article 2.4 부등록 사유 및 Article 2.11 절대적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베네룩스 상표청은 등록 유사상표(상대적 거절이유)를 이유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 3) 등록

절대적 사유를 만족하고,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지정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며, 공식 방식심사 조사 결과 접수 후, 출원인은 6개월 내에 출원을 확인, 보정, 또는 취하할 수 있다. 국제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자신의 출원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선언서는 불필요하다.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지체 없이 출원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베네룩스 상표청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베네룩스 상표청은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권자는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51)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133쪽

파리협약 제6bis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지의 상표의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제기된 소송의 특성에 관계없이, 누구도 어떤 기호를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하는 기호나 상표로 간주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4) 소요시간

네덜란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라. 상표권의 효력**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베네룩스 지역에서 출원되는 상표의 등록은 출원일(베네룩스 출원)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등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로 10년간 갱신하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갱신을 위해서는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신청할 수 있되, 추가 수수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은 등록만료 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에, 지재청은 상표권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만료일에 대하여 해당 상기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는 지재청이 알고 있는 해당 상표권자의 최종 주소지로 송부되어야 한다(Article 2.9).

2) 상표권의 효력

등록상표는 그 소유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한다.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경우 그 소유자는 제3자로(그의 동의 없이도) 하여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Article 2.20, 2.21).

- (a) 해당 상표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해당 상표와 동일한 기호를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
- (b) 어떤 기호가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그리고 해당 상표 및 기호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그 기호와 상표 간의 연관성에 관한 우려를 포함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기호를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c) 해당 상표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 단, 그 상표가 베네룩스 지역에서 명성을 향유하는 경우로서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해당 상표의 식별성이나 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d)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해 어떤 기호를 사용하는 행위. 단, 그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인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해당 상표의 식별성이나 명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다만, 제3자가 자신의 명칭과 주소, 제품제작이나 서비스 제공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및 시기 또는 그 제품 등의 여타 성격과 관련한 표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용도, 특히 액세서리나 예비부품으로서의 용도를 표시하는 데에 상표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독점권으로 다투지 못한다(Article 2.23.).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베네룩스 지역에서 출원하여 상표로 등록됨으로써 취득하거나(베네룩스 출원) 또는 국제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국제출원), 이로 인해 TRIPS 협정에 근거한 우선권 또는 파리협약에서 규정한 우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Article 2.2).

### 3) 상표권 실시계약 및 허가

상표는 그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1) 서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살아있는 사람간의 양도, 2) 베네룩스 전역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양도 또는 기타 이전의 경우는 무효이다(Article 2.31).

상표에 대하여는, 그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된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실시권 설정(라이선싱) 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배타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독립적으로 Article 2.21에 의한 손해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Article 3.32).

## 마.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베네룩스 특허청에 이의제기도 가능하다(Article 2.14).

바. 비용<sup>52)</sup>

(단위: EUR)

수수료 유형		비용
출원 (10년)	1개류	244
	2개류	27
	3개류부터, 각 류당	81
상표에 대한 보충설명		41
이의신청, 건당		1,045
갱신	1개류, 온라인 갱신 기준	263
	2개류	29
	3개류부터, 각 류당	87
	만료일 6개월 이내에 추가 수수료	135

2.4. 저작권

가. 개요

2015년 개정 저작권법이 저작자가 용역권을 부여하면서 계약한 반대급부가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비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수익에 대하여 분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베스트셀러 규정(Bestseller clause)을 도입하였으며, 다국적 법무법인 테일러 웨싱이 2016년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작성한 The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5th Report에 따르면 43개국 중 네덜란드가 1위를 차지했을 만큼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나. 보호대상

1) 책, 브로셔, 신문, 저널 및 기타 저술, 2) 뮤지컬 및 음악 작품, 3) 구두 발표, 4) 안무 작품 및 무언극, 5) 단어가 있거나 없는 음악작품, 6) 그래프, 페인팅, 건축 및 조각, 석판화, 판화 및 기타 판금, 7) 지리지도, 8) 건축, 지리, 지형, 기타 과학과 관련된 초안, 스케치, 3차원 작품 등, 9) 사진 작품, 10) 영화작품, 11) 응용 예술과 도면 및 산업 모델 작품, 12) 컴퓨터 프로그램

52) <https://www.boip.int/en/entrepreneurs/registration-maintenance/fees#registration>

및 준비자료 등 일반적으로 문학, 과학, 또는 예술분야의 모든 제품, 방법 또는 표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 다.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내용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명칭을 부여할 권리, 자신이 저작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으로 저작물 작성권, 전시권,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을 가진다. 그 밖에 저작자는 합의된 보상이 상호 성과의 관점에서 저작물의 착취 수익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인 경우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d조).

#### 라.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은 저자가 죽으면 죽은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후에 만료된다. 공동 저작인 경우 마지막으로 죽은 저자를 기준으로 하며(제37조), 익명 및 가명 저작물의 경우 창작 후 70년,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 37조를 준용한다(제38조).

#### 마. 등록요건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협약의 일개 회원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 바.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sup>53)</sup>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을 경우, YouTube와 같은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의 서비스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2021년 6월 7일까지 유럽연합 내 각 국가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며, 현재 독일 및 유럽연합 각 국에서 저작권법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53)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46378&pageIndex=1&portalcode04=&noticeYn=&nationcode=&brdno=35&etc1=&searchkeyword=&portalcode=04&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code=06&brdctsstatedcode=>

## 2.6 기타

### 가.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고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적 또는/및 지적 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하고, 영업 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영업 비밀 보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 비밀을 접근, 취득, 공개하기 위하여 비밀 유지 책임자를 기만, 유도, 매수, 강요, 유혹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당국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거래 또는 유통에 관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을 알거나 알 의무가 있으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네덜란드는 민사법 및 그 판례에 따라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2018년 10월 23일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쉽게 접근 할수 없어야 하고, 2) 권리자가 비밀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왔어야 하며, 3) 비밀 유지에 있어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제2조에서는 영업비밀의 취득, 이용 및 공개가 불법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지침에 명시된 조치, 절차 및 구제 수단을 적용하기 위한 명시적 예외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 나. 지리적 표시

네덜란드는 유럽연합 제도에 따라 지리적 표시 등을 행하고 있다.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3.1. 사법구제

#### 1) 법원조직<sup>54)</sup>

네덜란드 법 체계는 사법 재판기관과 행정 재판기관의 두 계통으로 나뉜다. 먼저, 사법 재판 기관은 우리나라처럼 3심 제도를 가지고 있다. 1심 재판기관, 항소재판 기관 및 상고 재판 기관으로서 소송 절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심급제도를 두고 있다. 1심 재판기관으로는 시군법원 및 지방법원이 존재하며, 시군 법원은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 대부분을 관할하고,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법률이 다른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지 않은 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항소 재판기관은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있다. 상고 재판기관은 대법원이다.

행정 재판 기관으로서 공공기능 및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 사무와 관련된 법원이 존재한다. 지방법원의 행정부 및 중앙항소위원회, 대법원이 있다.

마지막으로 헤이그 지방법원이 있으며, 형사, 행정, 시민섹터 등 다양한 소송을 담당하고, 특히 특허법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1심, 항소에 대하여 전속관할로 규정하여 이를 담당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사법기관은 지식 재산권이라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 법원을 두고, 지식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 한다.

#### 2) 대응절차

권리자는 사용하고 있는 대상품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시키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고의를 입증함에 유효할 수 있다.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긴급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명확한 침해행위가 있음을 요건으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여 본소 종결시까지 반복, 지속적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4)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네덜란드(2011년 발행), 17쪽

###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네덜란드는 행정적 보호로서 세관에 의한 수출입 통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네덜란드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3. 형사구제

네덜란드는 1)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제품을 제조 또는 제공, 판매, 사용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2) 특허의 대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위, 3)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을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번째 등급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행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번째 등급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특허법 79조).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IV. 덴마크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6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66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75



## 1.1. 개요

덴마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식물 품종 보호, 영업 비밀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 규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발명의 유형으로 물건, 장치, 기기 및 방법발명이 있다.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권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특허에 비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진보성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년간 보호되며, 위 보호기간은 각각 3년 및 4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최장 2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덴마크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덴마크는 상거래에서 타인의 상품 및 상표와의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 문자, 숫자,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소리로 이루어진 표시를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상대적, 절대적 거절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유효하며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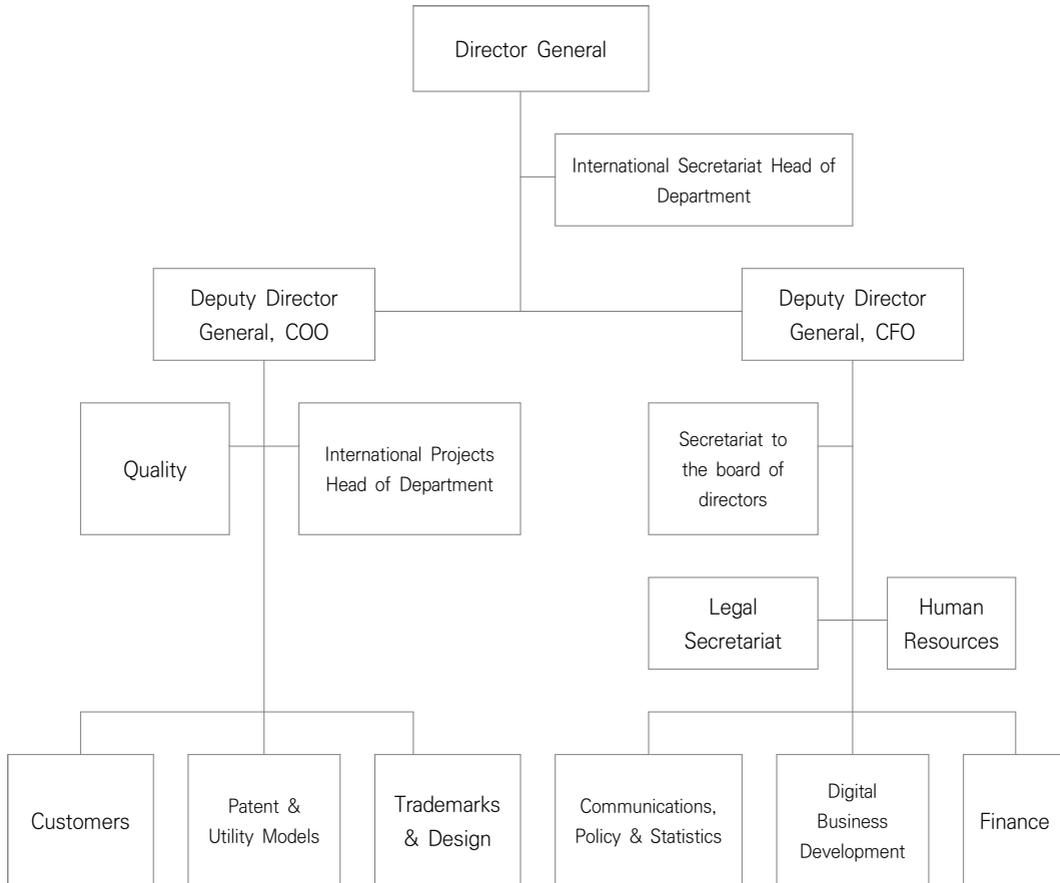
덴마크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8. 12. 1.)	가입	가입	가입 (1996. 2. 13.)	가입	가입

한편, 덴마크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 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55)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덴마크 법 규정을 참조하였음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그림] DKPTO 조직도<sup>56)</sup>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해서는 덴마크 특허상표청(DKPTO)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덴마크 특허청이나 기타 정부기관은 관할권이 없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의 특허 침해소송은 특별법원인 코펜하겐의 해양-상사 법원, 고등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56) <https://www.dkpto.org/about-us>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57)</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3,359	206	11,964	3,873	1,697	259
2015	3,388	270	9,467	3,536	2,004	219
2016	3,422	298	13,096	3,517	2,095	448
2017	3,609	282	12,882	4,123	2,006	387
2018	3,648	239	12,357	4,613	1,964	275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57)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DK](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DK)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발명의 유형으로 물건, 장치, 기기 및 방법발명이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조물
- 디자인,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게임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법칙 내지 방법
- 인체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수술 방법 및 과정
- 식물 또는 동물 품종(단, 발명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식물 또는 동물 품종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공중도덕에 반하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출원 공개, ③ 이의 신청, ④ 심사 및 등록 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과정에 발명의 신규성 조사 및 특허가능성에 관한 심사가 모두 진행되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6-10개월 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만일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될 경우, 특허 등록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범위 및 존속기간

특허권자는 등록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명세서를 참작할 수 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2)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권 이전 및 실시권 설정은 요청에 따라 특허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등록된 실시권이 종료된 것이 증명된 경우, 해당 실시권은 특허등록부에서 삭제된다.

등록특허에 대한 실시권은 계약에 의한 경우 외에도 중요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강제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또한, 특허가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본국에서 해당 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강제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특허권의 효력 제한

특허권은 비상업적으로 행해진 행위, 특허권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본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 내의 다른 국가의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관한 행위,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마. 심판·소송 제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상표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누구나 등록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침해 소송에서 등록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도 있다. 특허등록 무효사유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명의 불충분한 공개, 특허가 원래 출원의 내용을 넘어 확장된 경우 등이 있다.

바. 비용<sup>58)</sup>

(단위 : DKK)

항목	비용
출원료	3,000
11번째 이후 각 청구항에 대한 수수료	청구항 당 300
특허 등록료	2,000

58) 상세 비용은 덴마크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iprights.dkpto.org/patent--utility-model/prices-and-payment.aspx>)에서 검색 가능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덴마크는 물건, 장치 및 기기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와 달리 방법발명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등록요건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허에 비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출원인은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에 대한 실체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등록된다. 실체심사는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등록 후 실체심사 과정에서 등록요건의 흠결이 인정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기 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실용신안은 2-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치게 되고, 심사 단계를 거칠 경우, 출원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효력 제한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실용신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있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 2) 보호범위 및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 및 도면에 의해 참작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3년간 보호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위 보호기간은 각각 3년 및 4년의 추가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 3) 실용신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실용신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 IV. 덴마크(Denmark)

하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 이전 및 실시권 설정은 요청에 따라 실용신안 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등록된 실시권이 종료된 것이 증명된 경우, 해당 실시권은 실용신안 등록부에서 삭제된다.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실시권 또한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익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실용신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4)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

실용신안권은 비상업적으로 행해진 행위, 실용신안권자 또는 그의 동의하에 본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EEA) 내의 다른 국가의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관한 행위,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마. 비용<sup>59)</sup>

(단위 : DKK)

항목	비용
출원료	2,000
등록 전/후 심사료	4,000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덴마크 디자인 법은 '디자인'을 '선, 모양, 색상 등과 같은 특징에서 비롯되는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으로, 상기 '물건'을 산업 또는 수공예 물품으로 정의(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성은 실질적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디자인과 다르다는 인상을 줄 때 독창성이 인정된다.

59) 상세 비용은 덴마크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iprights.dkpto.org/patent--utility-model/prices-and-payment.aspx>)에서 검색 가능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반면,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경우, 디자인이 통합된 제품의 기능이 전적으로 기술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sup>60)</sup>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출원 시 특허상표청에서 방식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출원인이 소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출원이 디자인권 보호대상인지, 공중 도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심사가 진행된다. 상기 심사 결과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3주 후에 받아볼 수 있다.

출원인은 부가 디자인 조사(supplementary design search)를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및 독창성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조사 보고서(search report)로 출원인에게 제공한다. 부가 디자인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서 제공되는 것일 뿐 당해 출원을 거절시키는 절차가 아닌바, 출원인은 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출원 철회 또는 등록 절차 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략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원인이 위 조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해당 디자인 출원은 등록된다.

## 다. 디자인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디자인권은 사용자로 하여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사디자인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보호된다.

### 2)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최장 2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 3) 효력 제한

디자인권은 등록 디자인을 제3자가 업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실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60) <http://iprights.dkpto.org/design/our-examination-of-your-design-application.aspx> (출처: DKPTO)

경우 및 일시적으로 덴마크 영토에 진입한 타국에서 등록된 선박 및 항공예의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4) 실시권 설정 및 디자인권의 양도<sup>61)</sup>

덴마크 디자인법은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에 관하여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할 것이나, 명확성과 증명 목적을 위해서는 서면에 의한 것이 권장된다.

라. 심판·소송제도

디자인 출원에 대한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특허 심판원(Patent Board of Appeal)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디자인 등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디자인권자는 특허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비용<sup>62)</sup>

(단위 : DKK)

항목	비용	
출원료	1개 디자인 출원료	1,200
	추가 디자인 출원료	700
부가 조사 비용	1개 디자인 조사 비용	1,500
	추가 디자인 조사 비용	900

2.4. 상표

가. 보호대상

덴마크는 상거래에서 타인의 상품 및 상표와의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 문자, 숫자,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소리로 이루어진 표시를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61) <https://www.worldtrademarkreview.com/portfolio-management/protecting-and-enforcing-design-rights-denmark-0>

62) 상세 비용은 덴마크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iprights.dkpto.org/trademark/prices-and-payment.aspx>)에서 검색 가능

## 나. 등록요건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상대적 거절이유).

출원상표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된다(절대적 거절이유, 상표법 제13조 및 제14조).

-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형태 또는 다른 특성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태 또는 다른 특성
- 법률, 공공질서 및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상표
- 제품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등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심사, ③ 의견서 제출, ④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또는 거절이유를 극복한 경우) 등록증 발급, ⑤ 이의신청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직접 출원도 가능하다. 출원서가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 반드시 덴마크어 버전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상표청에 의한 심사 결과 등록 장애 사유가 없다면 상표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상표를 공보에 게재한다. 이후 2달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여 받게 되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총 약 5개월이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 2) 보호범위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처분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상표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등록 상품(서비스) 및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 및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상표권 이전 및 사용권 설정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양도할 수 있고,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사업의 양도와는 별도로 양도 가능하다. 또한 상표권의 양도는 요청에 의해 상표 등록부에 등록 가능하다.

또한 상표권자는 등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표 등록부에 사용권 설정에 관하여 등록된다.

마. 심판·소송제도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 및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등록 취소 사유에는 ① 등록상표를 5년간 계속하여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상표 등록 이후, 등록상표가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의 보통 명칭이 된 경우 등이 있다(상표법 제25조, 제26조)

등록 거절사유가 있음에도 상표 등록이 된 경우,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상표법 제28조).

바. 비용<sup>63)</sup>

(단위 : DKK)

항목	비용	
출원료	1개 류(class) 상표 출원료	2,200
	2번째 류에 대한 추가 출원료	200
	각 추가 류에 대한 추가 출원료	600
등록료	2,000	
심판 비용	4,000	

2.5. 저작권

가. 보호대상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는 독창적인 지적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창작물, 특히 글이나 구술 텍스트,

63) 상세 비용은 덴마크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iprights.dkpto.org/trademark/prices-and-payment.aspx>)에서 검색 가능

음악적 구성, 음악, 안무 및 연극 작품,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공연 예술가 또는 제작자들에게 저작권 유사 권리로서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을 부여한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코드로 표시되거나, 디스크에 저장되거나, 서면에 기록되거나 형식에 관계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 나. 저작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존속기간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그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 존속되며, 공동저작물에 관해서는,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의 생애 및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그의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

### 2)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sup>64)</sup>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양도 및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설정 모두 가능하고, 이는 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이 불가하다.

## 다. 등록요건<sup>65)</sup>

덴마크는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덴마크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한 요구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침해 등이 문제될 경우 법원에 의해서 저작권의 확인 또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덴마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무효 사유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법원은 저작물을 평가할 때 해당 저작물이 독창성이 결여된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4) <https://www.rpc.co.uk/-/media/rpc/files/perspectives/ip/denmark.pdf>

65)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I07c84f9ed51011e79bef99c0ee06c731/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I07c84f9ed51011e79bef99c0ee06c731/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

### 3.1. 관할

덴마크 사법제도는 기본적으로 3심 제도로 이루어진다. 특히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덴마크 특허청이나 기타 정부기관은 관할권이 없고,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의 특허소송은 특별법원인 코펜하겐의 해양-상사 법원이 1심 재판부로 관할하며, 해양-상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또는 상황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에 상소할 수 있다.

### 3.2. 민사적 대응

각 권리 소유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②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③ 부가적으로 침해 행위자에 대해 시장에서의 침해 제품 철수, 제품의 폐기 또는 변경 등 불법행위를 종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3.3. 형사적 대응

침해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루어진 경우, 침해 행위자에 대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중과실에 의한 침해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되나, 고의 또는 가중 사유(aggravating circumstances)가 있는 경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 3.4. 행정적 대응

침해 제품이 덴마크에서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권리자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border measures) 등을 통해 침해 제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66) 덴마크 각 법 규정: <https://thelawreviews.co.uk/edition/the-patent-litigation-law-review-edition-3/1210558/denmark>;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Ide0606afb53811e598dc8b09b4f043e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Ide0606afb53811e598dc8b09b4f043e0/View/FullText.html?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Search))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V. 독일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7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82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00



## 1.1. 개요

독일은 미국 세계혁신정책센터에서 발표한 2020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0년 12월 16일에 특허법을 공포하였고, 1876년부터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며 1988년 7월 1일부터는 독일 국내 및 국외 거주자가 독일 특허청(DPMA)에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1896년에는 기만적 광고 등을 비롯한 특별한 유형의 불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하고,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견 내지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정신적 활동, 유희,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특허법 제1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인 외관에 대해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 후에 만료되며, 독일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 영업상의 표지,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며(상표법 제1조),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제한 없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를 기만적 광고행위 등 부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독일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종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8. 1. 24.)	가입	가입	가입 (1996. 3. 20.)	가입	가입

한편,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sup>67)</sup>

독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독일특허 및 상표청(DPMA), 음악 저작권협회(GEMA), 미술 및 사진 저작권 협회(VG Bild-Kunst), 문학 저작권 협회(VG Wort), 예술 저작권 협회(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GVL), 음악사용 저작권협회(Verwertungsgesellschaft Musikedition: VG Musikedition), 지도 및 전자문서 저작권 협회(GEKA) 등이 있다.

독일 특허상표청은 독일연방 법무 소비자 보호부(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산하 정부 기구로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허청과 유사한 곳이다. 주 사무소는 뮌헨에 위치하고, 예나와 베를린에도 분 사무소가 있다. 총 4개 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업무 분장은 다음 표와 같다. 이외에 직무발명 및 저작권에 관한 중재 위원회를 각각 두고 있다.

〈표〉 독일 특허상표청 부(Department)

구분	명칭	업무 분장
Department 1/ I	Mechanical Engineering and Mechanical Technology	특허심사
Department 1/ II	Electrical Engineering, Chemistry and Physics	
Department 2	Information	지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Department 3	Trade Marks, Utility Models, Designs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심사
Department 4	Administration and Law	행정 업무

67)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254~255쪽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68)</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73,826	17,811	245,013	20,530	69,251	13,965
2015	72,217	19,509	258,296	19,619	65,293	11,173
2016	73,574	19,419	257,439	19,680	68,613	9,917
2017	73,345	19,927	273,710	22,559	63,016	6,694
2018	73,333	21,281	263,372	24,232	59,699	5,645

EU 01

그리스(Greece)  
02네덜란드(Netherlands)  
03덴마크(Denmark)  
04독일(Germany)  
0568)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de](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de)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독일 특허법은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이고,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생물학적 재료에서 생성되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생물학적 재료를 제조, 가공하거나 활용되는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발견 내지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정신적 활동, 유희,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특허법 제1조).

생식세포를 포함하는 형성 및 발달의 각 단계에 있는 인체 및 유전자 배열 또는 부분배열을 포함하여 인체구성요소, 하나의 단순한 발견은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특허법 제1a조). 또한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인간의 생식세포계열의 유전자적 동일성을 변경하는 방법, 인간의 배아를 공업 또는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이외에도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2조).

### 나. 등록요건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특허법 제1조 제1항).

출원서류는 독일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후 3개월 이내에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5a조).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갖는다.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귀속한다.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독립하여 발명한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는 당해 발명을 최초로 특허상표청에 출원한 자에게 귀속한다(특허법 제6조).

외국인은 독일이 체결하고 있는 국제 협약 또는 조약(파리협약 등) 또는 상호주의를 기초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sup>69)</sup> 독일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자는 독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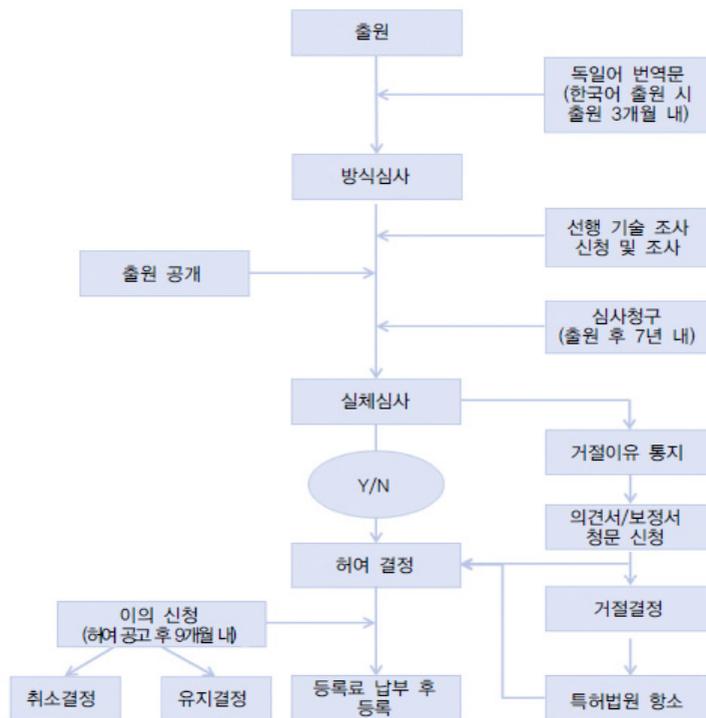
69)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39쪽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그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법원에 특허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특허에 의해 발생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특허법 제25조).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출원

특허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① 출원인 이름 또는 명칭 ② 발명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특허교부 신청서 ③ 무엇이 특허능력이 있어서 보호 받아야 하는지가 명시된 단일 또는 복수의 특허권리 ④ 발명의 설명, ⑤ 특허 청구항 또는 설명과 관련된 도면들(특허법 제34조), ⑥ 발명의 명칭 및 출원인의 견해에 따라 발명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도면을 포함하고 출원에 포함된 공개내용의 개요로 발명의 기술적 분야를 표시하고 기술적 문제와 그 해결, 발명의 핵심 용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서(특허법 제36조) 등이다. 이외에도 발명이 식물성 또는 동물성의 생물학적 재료를 기초로 하거나 발명에 그러한 재료가 이용되는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알려져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에 그 정보를 포함해야한다(특허법 제34a조).



[그림] 독일 특허 출원 및 등록 절차도<sup>70)</sup>

70)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79쪽

## 2) 출원공개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또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이후 또는 출원인이 특허청에 대하여 파일의 열람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고 발명자를 명시한 경우 공개된다. 다만, 특허법 제50조에 의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특허법 제31조).

## 3) 방식(형식)심사<sup>71)</sup>

방식심사는 출원서나 명세서 등의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일 인정의 기준이 된다.

특허청 또는 연방법무부가 연방 법률공보가 특허정보센터를 수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출원서류가 당해 특허정보센터에 접수되었는지를 심사한다. 또한 출원서류에 언급된 도면이 출원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 대해 통지하여, 통지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거나 당해 도면에의 언급은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서류가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된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정보센터에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출원인이 특허청의 통지를 받은 후 누락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도면이 특허청에 수리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누락 도면이 제출되지 않으면 당해 도면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35조).

방식심사결과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국은 출원인에게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로 보정할 것을 요구한다(특허법 제45조 제1항). 흠결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한다(특허법 제48조).

거절결정의 송달 후 1월 이내에 특허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특허법 제73조).

## 4) 실제심사

특허상표청은 출원 심사청구가 된 출원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한다(특허법 제44조). 별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특허 허여 결정을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유를 붙여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특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특허법 제45조).

실제심사 청구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출원 후 7년 이내에 특허심사청에 대하여 심사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44조).

71)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45쪽

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도 심사절차는 속행된다(특허법 제44조 제5항). 기한 내에 실제심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허발명 등록출원은 기한 만료 시에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5) 특허 등록 및 거절

특허상표청은 등록 결정 또는 거절까지의 전체 심사 절차를 2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허상표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 불비 또는 특허 요건 결여에 해당할 경우, 심사관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사통지서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알린다. 이후 심사국이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결정의 이유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심사통지서에서 공식적으로 통지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어떤 진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다(특허법 제47조 제1항).

심사 결과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항소가 허가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제47조 제2항). 거절이유가 일부에 있는 경우 출원을 분할할 수도 있다(특허법 제39조). 또한 출원이 진보성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 동일한 고안에 대한 특허출원의 출원일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특허성이 있고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흠결 등이 모두 치유된 경우에는 심사국은 특허 등록 결정을 한다(특허법 제49조). 등록은 특허 공보에 간행되며 등록의 간행과 함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 6) 소요시간

독일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년이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제조, 사용, 실시, 배포, 수출 등),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허 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술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3) 선사용권

선사용권이란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도 선사용권에 대하여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 4) 특허권의 양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독일 특허청에 특허권 권리 이전을 설정 등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 이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특허 양도는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등록권 이전 미등록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5) 실시권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와 강제라이선스(compulsory license)으로 나눌 수 있다. 허락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반면, 강제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된 특허권이 독일에서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가 실시권 계약을 요청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기간 내에 요청한 자에게 실시권 허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해당 특허의 실시가 국가 방위, 공중위생 및 절대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강제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다.

## 마. 심판제도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에 대해 누구든지 등록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특허가

## V. 독일(Germany)

특허로 보호될 수 없는 특허에 해당되는 경우, 진보성 또는 신규성에 위반된 경우, 등록권자가 특허의 정당한 출원인이나 적법한 양도인이 아닌 경우, 다수의 등록권자 중 한명이라도 해당 특허출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의 발명자가 출원인에 의해 고의로 잘못 기재된 경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독일 특허청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바. 비용<sup>72)</sup>

(단위: EUR)

수수료 유형		비용
출원	전자출원	40
	전자출원 시 각 추가 청구에 대한 수수료	20
	비전자출원	60
	비전자출원 시 각 추가 청구에 대한 수수료	30
검색 요청 수수료		300
검색 완료 후 심사신청 수수료		150
검색 요청이 없는 경우 심사신청 수수료		350
연차료	각 3년째 및 4년째	70
	5년째	90
	6년째	130
	7년째	180
	8년째	240
	9년째	290
	10년째	350
	11년째~20년째	470~1940
이의신청		200
* 특허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누구에게나 라이선스를 부여하겠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경우, 연회비는 절반으로 줄어듦		

72) <https://www.dpma.de/english/services/fees/patents/index.html>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sup>73)</sup>

독일 실용신안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치, 시스템, 물질 등은 실용신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거나 기술 방법 발명 및 화학식, 동식물 품종에 대한 발명 및 방법(processes)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연방대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시그널시퀀스(연방대법원 2004 GRUR 495 Signalfolge), 새로운 의약용도로 한정된 물질(연방대법원 2005 GRUR 135 Arzneimittelgebrauchsmuster) 및 소위 ‘기능식 표현(means plus function)’ 형식으로 기재된 발명(연방대법원 X ZB 23/07 Telekommunikationsanordnung) 등을 모두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하여 보호 제외 대상인 ‘방법’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하며(독일 실용신안법 제1조), 방법, 생명공학, 동식물 관련 발명은 제외되나 물질특허는 인정된다(동법 제1조 제2항).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 ‘공연 실시’는 독일 내 실시만 고려하므로, 공중에 단순히 공지되거나 구두로 설명되는 경우, 독일 이외의 지역에서 공공연히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진보성 판단 시 이전에는 특허법상의 기준보다 낮은 정도를 요구한다고 해석되었으나, 최근 독일 법원은 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의 기준과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는 특허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와 대체로 동일하며, 등록까지는 약 24~30개월이 소요된다.

73) <https://m.blog.naver.com/kpaablog/221496701173>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존속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실용신안권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특허권 행사와 동일하며, 기술평가 등의 실제심사 없이도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마. 심판제도**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 결과 해당 실용신안이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바. 비용<sup>74)</sup>**

(단위: EUR)

수수료 유형		비용
출원	전자출원	30
	비전자출원	60
검색 수수료		250
유지수수료	3년 후	210
	6년 후	350
	8년 후	530
취소청구		300

74) <https://www.dpma.de/english/services/fees/utilitymodels/index.html>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인 외관으로, 특히 선, 윤곽, 색채, 형상 등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을 말한다. 물품은 각각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대상으로 포장, 장식, 그래픽 상징 및 하나의 혼합제품으로 조립되는 부품들을 포함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등록원부에 권리자로 기재된 자는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로 간주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다만, 전체적으로 기술적 기능에 따라 외관상 특징이 불가피한 물품, 다른 제품과 조립 혹은 연결하여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관이 모방될 수 밖에 없는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제6조의3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공익의 포장, 기장 및 기장에 대한 부정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 등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디자인보호법 제3조)

### 나. 등록요건(디자인보호법 제2조)

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은 그 등록출원의 출원일 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신규하다고 간주한다. 다만 그 특징이 비본질적인 세부에서만 다를 경우 동일하다고 본다.

디자인은 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반적인 인상이 그 등록출원 출원일 전에 개시된 디자인이 불러일으키는 전반적인 인상과 다른 경우에는 독자성을 가진다. 독자성을 평가할 때에는 그 디자인을 개발할 때의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디자인 출원

디자인을 등록원부에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하여야 한다. 출원은 특허정보센터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그 센터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가 연방법률공보의 고시에 의해 디자인출원을 수령하는 관청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

## V. 독일(Germany)

적법한 출원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고에 적합한 디자인 재현물, 디자인을 채택하거나 활용할 제품들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현물은 평면 디자인 단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위 서류에 더하여 표현에 대한 설명문,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공고유예 신청서, 물품류 또는 디자인이 분류될 수 있는 물품 일람표, 창작자에 대한 정보, 대리인에 대한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복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 100개 이상을 포함할 수는 없다. 출원인은 독일특허상표청에 통지함으로써 복수디자인출원을 분할할 수 있으며, 출원의 분할은 출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각의 분할출원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합계금액이 이미 납부되어 있는 출원 수수료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2조).

국제조약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선(先)국제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일 후 16개월의 말일까지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국 및 출원번호를 통지하고, 선출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위 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4조 제1항).

우선권의 인정에 관한 어떤 국제조약도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연방소비자보호부에 의한 연방법률공보에 따라 해당 나라의 독일특허상표청에 대한 최초의 출원을 기초로 조건 및 내용이 파리조약에 의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4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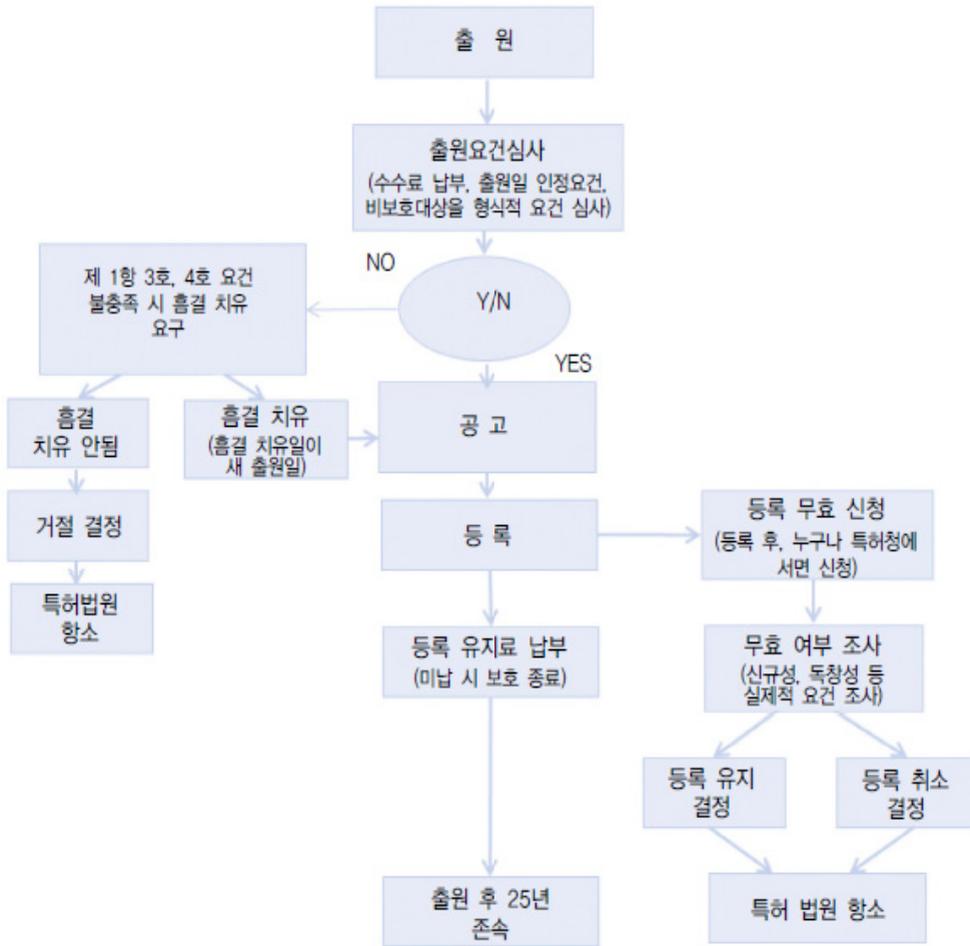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그림] 독일 디자인 심사 흐름도<sup>75)</sup>

## 2) 출원심사

독일특허상표청은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1) 특허비용법에 규정된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여부, 2) 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출원서류의 존재 여부, 3) 출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1항).

출원수수료가 미납된 경우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며 독일특허상표청이 이를 확정한다. 독일특허상표청이 설정한 기간 내에 충분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복수의 디자인 출원을 위한 출원수수료가 충분히 납부되지 않고 어떤 디자인에 관한 수수료인지에 대하여 지정하지

75)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15쪽

않으면, 어떤 디자인을 심사할지는 특허상표청이 결정한다. 그 밖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2항).

특허상표청은 출원서류와 그 밖의 출원 요건에 관한 흠결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흠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출원인이 흠결을 시정한 경우 흠결이 해소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며, 흠결이 정해진 기한에 해소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된다(디자인보호법 제16조 제3항).

### 3) 소요 시간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 약 2~4주가 소요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 후에 만료되며(디자인보호법 제27조), 6년~10년도, 11년~15년도, 16년~20년도, 21년~25년도까지 유지 수수료의 납부를 통해 효력을 지닌다(디자인보호법 제 28조).

### 2) 효력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 보호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통하여 성립하며,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자에 대해 그것을 사용하는 배타권을 부여하고, 타인이 해당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용이란 특히 등록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용되고 있는 물품을 생산, 제공, 시장투입, 수입, 수출 또는 이용하는 것 또는 상기 목적으로 해당 물품을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1항).

등록디자인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는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 한 모든 디자인에 미친다. 보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 개발 당시의 창작자의 조형의 자유도를 고려한다(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의해 선사용권 또한 인정된다.

### 3) 실시권

등록디자인의 권리는 특허상표청에 등록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 권리자는 독일 연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실시권은 비배타적 또는 배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1조).

### 마.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바. 비용<sup>76)</sup>

(단위: EUR)

구분		비용
출원 (첫 5년기준)	전자 출원	60
	비전자 출원	70
	복수출원(전자)-디자인당(최소수수료)	6(60)
	복수출원(종이)-디자인당(최소수수료)	7(70)
6년차 이후 갱신 수수료(6~25년)		90~180
무효 절차 - 각 디자인 당		300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법에 따라 상표, 영업상의 표지,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된다(상표법 제1조). 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식별하기에 적합한 모든 표지, 특히 인명을 포함한 단어, 도형, 문자, 숫자, 음성기호,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태를 포함한 입체적 형상 내지 색과 색의 조합을 포함한 기타 외장은 상표로서 보호될 수 있다. 다만, 상품 자체의 종류에 따른 형상이나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만으로 구성된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될 수 없다(상표법 제3조).

상품상표, 서비스표, 개인표장, 단체표장 등의 다양한 종류의 상표가 존재한다. 상품상표와 서비스표는 완전히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개인표장과 단체표장은 그 취급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상표법 제3조는 상표적격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 제4조는 상표권 발생태양에 따라 등록상표, 사용상표, 주지상표로 구분하고 있다.<sup>77)</sup>

76) <https://www.dpma.de/english/services/fees/designs/index.html>

77)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108쪽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하지 못한 것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생산 또는 제공의 시기 또는 기타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거래상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 국장, 국기, 그 밖의 국가적 표장 또는 국내의 지방이나 지역단체 또는 그 외 공동체적 단체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등의 경우에는 절대적 거절사유로 보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8조 제1항).

## 나. 등록요건

자연인,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에 한하여 출원인 자격이 인정된다(상표법 제7조). 출원은 독일특허상표청에 제출한다. 특허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지만, 연방법 공보에서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의 고시에 의해 동 센터가 상표출원을 수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상표법 제32조 제1항).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출원하기 위해서는 1)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상표의 표지, 3) 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4) 우선권 증명서, 5) 위임장 등이 필요하다(상표법 제32조 제2항)

독일 상표의 심사에 있어서는 선행상표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1) 해당 등록상표가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며, 해당 상표의 등록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선행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한 경우이거나, 2) 해당 등록상표가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동시에 양 상표에 의해 지정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상표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우려를 포함해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등록상표가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그러한 선행 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행 상표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명성을 얻고 있는 상표의 식별성 또는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것인 경우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에 의해 상표 등록은 취소될 수 있다(상표법 제9조).

상표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흠결 치유 또는 불복의 기한 및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상기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에는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은 출원의 접수 통지서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47조).

### 2) 상표권의 상실

상표 또는 거래상 표지의 소유주는, 후행 상표가 사용되거나 권리가 사용되고 있는 줄 알면서 그 사용을 5년간 계속해서 묵인한 경우에는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으며 권리의 행사 또한 금지할 수 없다. 다만, 후 상표가 부정하게 출원된 것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표법 제21조).

### 3) 상표권 양도 및 실시권(라이선스)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에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상표의 권리는 상표원부에 등록된 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독일특허상표청에 상표원부 등록을 해야 한다(상표법 제27조 내지 28조).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는 상표가 보호 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전역 또는 그 일부지역에 대하여 배타적 라이선스 또는 비배타적 라이선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상표법 제30조).

## 마.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선등록 또는 선출원의 소유권자 등은 등록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출원인에게 그 사실이 통지되고 출원인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선임심사관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특허법원에 다시 항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방특허법원의 승인을 얻으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바. 비용<sup>78)</sup>

(단위: EUR)

구분		비용
출원	출원료(최대 3개류 포함)	300
	전자출원(최대 3개류 포함)	290
	류 추가(4개류부터)	100
	단체 및 인증 마크에 대한 출원료	900
갱신료(최대 3개류 비용 포함)		750
단체 및 인증 마크에 대한 갱신료		1800
갱신 시 추가 관납료(4개류부터)		120
등록취소신청		100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

1) 글, 연설, 컴퓨터 프로그램 등 문학작품, 2) 뮤지컬 작품, 3) 무언극 작품, 4) 조형, 예술 작품, 5) 사진과 유사한 프로세스에 의해 생산된 사진 작품, 6) 시네마토 그래픽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시네마토 그래픽 저작물 등 영화 저작물, 7) 도면, 계획, 지도, 스케치, 테이블 및 3차원 표현과 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그림 등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저작권법 제2조).

78) <https://www.dpma.de/english/services/fees/trademarks/index.html>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sup>79)</sup>

저작권의 내용은 크게 저작인격권, (재산적인)활용권, 그 밖의 권리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권법 제12조), 자신이 저작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13조), 저작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14조) 등을 의미한다. 독일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적, 정신적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두터운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제39조, 제62조 등)

활용권은 유형적 형태의 활용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을, 무형적 형태의 저작물 이용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개 재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재현권의 내용으로 공연권, 공연권, 상연권, 공중 접근권, 방송권, 영상매체·음반의 재현권, 방송물·공중 접근의 재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권리로는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이 타인의 수중에 있을 뿐 자신의 수중에 없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 및 개작을 위해 저작물의 원본 및 복제물에 대해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조). 또한 저작자가 예술작품을 판매 후 매수인이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 수익이 이전 판매 수익보다 높은 경우 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6조). 영상매체 또는 음반의 유상대여, 저작물 원본 및 복제물의 무상대여의 경우 저작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한다(27조).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은 저자가 죽은 후 70년 후에 만료된다(64조). 공동 저작인 경우 마지막으로 죽은 저자를 기준으로 하며(65조), 익명 및 가명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70년, 출판되지 않은 경우 창작 후 70년이 지나면 만료된다(66조). 날짜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유 발생연도가 종료되는 날부터 시작한다(69조).

## 라. 등록요건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협약의 일개 회원국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면 다른 회원국에서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다만, 무명 혹은 가명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기 위하여 독일특허상표청에 등록할 수 있다.

79) 독일 저작권법 전문 번역 및 개관(서울중앙지방법원 하상의 판사), 6쪽

## 마.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 (Richtlinie EU 2019/790)<sup>80)</sup>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콘텐츠를 업로드하였을 경우, YouTube와 같은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의 서비스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2021년 6월 7일까지 유럽연합 내 각 국가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며, 현재 독일 및 유럽연합 각 국에서 저작권법 등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디지털싱글마켓지침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 2.6 기타

### 가.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고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적 또는/및 지적 투자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말하고, 영업 비밀의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영업 비밀 보유자의 허가 없이 영업 비밀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영업 비밀을 접근, 취득, 공개하기 위하여 비밀 유지 책임자를 기만, 유도, 매수, 강요, 유혹하거나 남용하는 행위, 당국에 의해 주어진 비밀 유지 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품의 거래 또는 유통에 관한 라이선스 신청자의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위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의하여 취득된 사실을 알거나 알 의무가 있으면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한다.

독일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그 판례에 따라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보호하여 왔으나, 2019년 4월 26일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쉽게 접근 가능하지 아니해야 하고, 2) 권리자가 비밀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왔어야 하며, 3) 비밀 유지에 있어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 나. 지리적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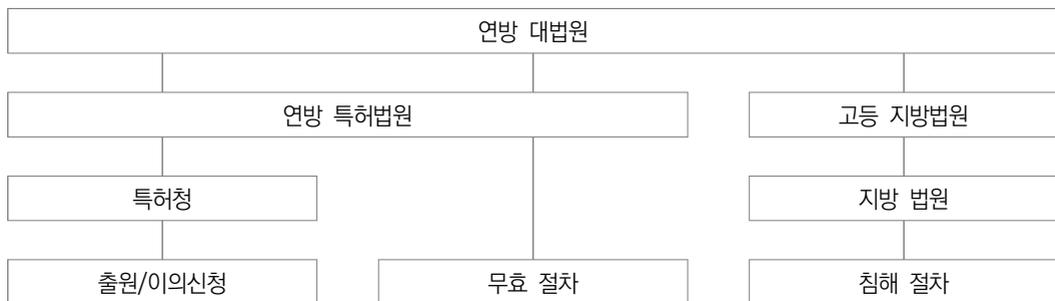
독일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로 지리적표시를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126조 내지 제139조).

80)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46378&pageIndex=1&portalcode04=&noticeYn=&nationcode=&brdno=35&etc1=&searchkeyword=&portalcode=04&brdclasscode=&searchText=&searchTarget=ALL&servicecode=06&brdctsstatedcode=>

### 3.1. 사법구제

#### 가. 법원조직<sup>81)</sup>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 헌법재판소, 연방 최고재판소, 연방 상급재판소 및 각 주 재판소에 의해 행사되는데, 현재 연방 최고 재판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연방 헌법재판소(카를스루에 소재)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권한쟁의 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재판소에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2개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 간 분쟁을 관할한다. 연방 상급재판소에는 연방 통상 재판소, 연방 행정재판소, 연방 노동재판소, 연방 사회재판소, 연방 재정재판소가 있다.



[그림] 독일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법구조

#### 나. 대응절차<sup>82)</sup>

권리자는 사용하고 있는 대상품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시키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긴급성,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명확한 침해행위가 있음을 요건으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여 본소 종결시까지 반복, 지속적인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척기간은 청구인이 침해 사실 또는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81) KOTRA Global Window

82)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독일(2014년 발행) 150쪽

###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독일은 행정적 보호로서 세관에 의한 수출입 통제, 통관 서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독일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3. 형사구제

독일은 1)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제품을 제조 또는 제공, 판매, 사용 및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2) 특허의 대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위해서 제공하는 행위, 3) 특허의 대상인 방법에 따라 직접 생산된 제품을 제공, 판매, 사용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3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행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벌금형으로 가중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물품은 몰수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죄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에 의한 기소가 상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에 의하여 재판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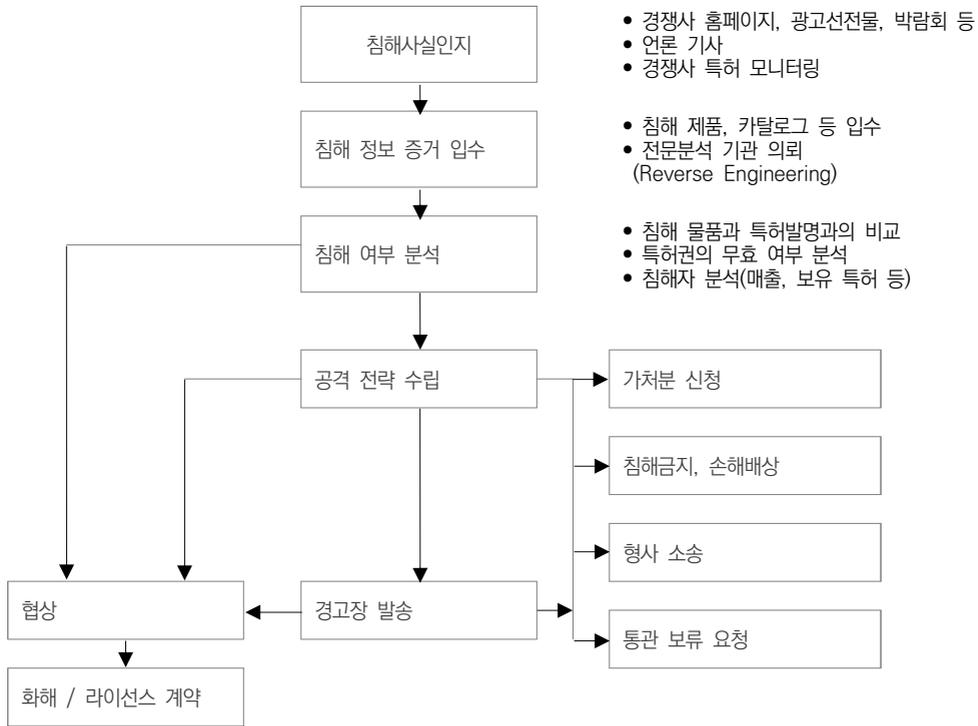
EU 01

그리스(Greece) 02

네덜란드(Netherlands) 03

덴마크(Denmark) 04

독일(Germany) 05



- 경쟁사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박람회 등
- 언론 기사
- 경쟁사 특허 모니터링
- 침해 제품, 카탈로그 등 입수
- 전문분석 기관 의뢰 (Reverse Engineering)
- 침해 물품과 특허발명과의 비교
- 특허권의 무효 여부 분석
- 침해자 분석(매출, 보유 특허 등)

[그림] 특허 침해 대응(공격) 절차도

### 3.4. 기타

독일은 법원 내 조정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지만 법원 내 ADR(Alternative Dispute Reslution)제도를 통하여 소송 외적으로도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직무발명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VI. 루마니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0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07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18



## 1.1. 개요

루마니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 비밀,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 규정이 있으며, 법 제도로써, 영업비밀은 주로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고,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능하다.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완화된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6년간 보호되고 총 2회에 걸쳐 2년씩 연장 가능하다(최장 10년의 보호기간).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씩 총 3회에 걸쳐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루마니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되며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루마니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9. 7. 23.)	가입	가입	가입 (1998. 7. 28.)	가입	가입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 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83)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및 각 법 규정을 참조하였음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해서는 루마니아 특허상표청(OSIM)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법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침해 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sup>84)</sup>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85)</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980	84	22,835	5,019	1,189	209
2015	1,008	78	21,871	4,549	1,045	282
2016	1,035	58	22,574	4,381	948	731
2017	1,150	80	20,841	4,416	1,247	465
2018	1,150	47	21,592	5,456	857	309

84) <https://iclg.com/practice-areas/patents-laws-and-regulations/romania>

85)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RO](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RO)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발명의 유형으로 물건, 장치, 기기 및 방법발명이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조물
- 디자인,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게임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법칙 내지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 1) 개요

① 출원, ② 예비심사, ③ 출원공개, ④ 실체심사, ⑤ 특허허여 결정 공고, ⑥ 이의신청, ⑦ 특허증 발행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2) 구체적 특징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인의 자격 여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의 유무 등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실체심사는 특허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출원인이 심사 수수료를 지급하고 심사 청구한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통상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제3자는 특허허여 결정이 공표된 후 6개월 이내에 특허허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위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범위 및 존속기간

특허권자는 등록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명세서를 참작할 수 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고,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하고, 다만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특허의 경우에 한해 판매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sup>86)</sup>

### 2)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후 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시점에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강제 실시권이 부여되는 사유에는 ① 발명이 루마니아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②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③ 기타 극심한 비상 상황, ④ 비상업적 목적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sup>87)</sup>

### 3) 특허권의 효력 제한

특허권은 비상업적으로 행해진 행위,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마. 심판·소송 제도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상표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부쿠레슈티(Bucharest)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up>88)</sup>

등록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특허는

86) <https://iclg.com/practice-areas/patents-laws-and-regulations/romania>

87) <https://iclg.com/practice-areas/patents-laws-and-regulations/romania>

88) <https://iclg.com/practice-areas/patents-laws-and-regulations/romania>

## VI. 루마니아(Romania)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등록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 특허등록 무효사유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 자격의 흠결, 발명의 불충분한 공개, 특허가 원래 출원의 내용을 넘어 확장된 경우 등이 있다.

### 바. 비용<sup>89)</sup>

(단위 : lei)

항목	비용	
출원료	서면 출원	143
	전자 출원	95
출원 공개료		238
심사료	청구항 수가 5개, 페이지 수가 20장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425
	추가 페이지 당	24
	추가 청구항 당	48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루마니아는 물건, 장치 및 기기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고 있고, 다만 특허와 달리 방법발명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등록요건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허에 비해 보다 완화된 기준(Surpasses the level of simple professional skill)에 따른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예는 아래와 같다.

89) 기타 비용은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osim.ro/wp-content/uploads/Legislatie/Taxe-propietate-industriala-valabile-incepand-cu-01-ianuarie-2020-Anexele-1-2-4-5-6-OG41.pdf>)에서 검색 가능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조물
- 디자인,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게임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법칙 내지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루마니아의 실용신안 등록은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조사 보고서 작성, ④ 등록 결정 공고, ⑤ 이의신청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허상표청은 출원에 대하여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뿐, 출원한 실용신안의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진보성에 관한 실제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 가능하다.

출원에 대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해당 실용신안의 소유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상표청의 항소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재심사한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실용신안을 보호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 실용신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2)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6년간 보호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위 보호기간은 총 2회에 걸쳐 2년씩 연장 가능하다(최장 10년의 보호기간).

##### 3) 실용신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실용신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에 관해서는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실용신안에 대하여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실용신안권 이전 및 실시권 설정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실시권 또한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공익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또한, 실용신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4)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

실용신안권은 비상업적으로 행해진 행위,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마. 비용<sup>90)</sup>

(단위 : lei)

항목	비용	
출원료	서면	143
	전자	95

2.3. 디자인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루마니아 디자인 법은 ‘디자인’을 ‘선, 윤곽, 모양, 색상, 질감 등과 같은 특징에서 비롯되는 물건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으로, 상기 ‘물건’을 산업 또는 수공예 물품으로 정의(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성은 실질적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디자인과 다르다는 인상을 줄 때 독창성이 인정된다.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90) <https://innovaccess.eu/romania/utility-model/> 참고. 기타 비용은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osim.ro/wp-content/uploads/Legislatie/Taxe-proprietate-industriala-valabile-incepandu-cu-01-ianuarie-2020-Anexele-1-2-4-5-6-OG41.pdf>)에서 검색 가능

## 나. 취득절차

루마니아의 디자인 등록은 ① 출원, ② 예비심사, ③ 출원공개, ④ 이의신청, ⑤ 실체심사, ⑥ 등록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고, 출원 시 특허상표청에서 방식 심사를 진행하고 출원을 공개한다. 출원공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해관계인은 디자인 등록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출원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 심사부에서 디자인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1개의 출원을 통해 국제 분류에 따른 동일 카테고리의 제품 범위 내에서 다수의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다.

## 다. 디자인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을 제조, 복제,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출 등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디자인권은 사용자로 하여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사디자인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보호된다.

### 2)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따라 5년씩 총 3회에 걸쳐 최장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3) 효력 제한

디자인권은 업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실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시적으로 루마니아 영토에 진입한 타국에서 등록된 선박 및 항공 등에 존재하는 장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된다.

## 4)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등록 디자인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계약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라. 심판·소송제도

출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상표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부쿠레슈티(Bucharest)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등록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 등록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마. 비용<sup>91)</sup>

(단위 : lei)

항목	비용	
출원료	1개 디자인	143
	각 추가 디자인	48
심사 비용	1개 디자인	238
	각 추가 디자인	48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루마니아는 상거래에서 타인의 상품 및 상표와의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 문자, 숫자,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소리로 이루어진 표시를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91) 기타 비용은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osim.ro/wp-content/uploads/Legislatie/Taxe-propietate-industriala-valabile-incepand-cu-01-ianuarie-2020-Anexele-1-2-4-5-6-OG41.pdf>)에서 검색 가능

## 나. 등록요건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상대적 거절이유).

그 외 등록이 거절되는 예로서 아래의 경우가 있다(절대적 거절이유).

- 식별력 없는 표시
-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형태 또는 다른 특성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태 또는 다른 특성
- 법률, 공공질서 및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상표
- 제품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 종교적 표시와 같이 상징적 가치가 중요한 표시 등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고,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직접 출원도 가능하다. 루마니아의 상표 등록출원은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출원공개, ④ 이의신청, ⑤ 실체심사, ⑥ 등록 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표출원이 공개된 후 2개월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평균 심사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 2) 보호범위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처분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상표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등록 상품(서비스) 및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 및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효력 제한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 연합(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 내 시장에서 유통된 등록 상표 및 등록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제한되고, 기타 효력 제한 사유에 관해서 상표법에서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39조).

4) 사용권 설정 및 상표권 이전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양도할 수 있고,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사업의 양도와는 별도로 양도 가능하다. 제3자에 대하여 상표권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상표권자는 등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용 사용권 또는 통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하여 사용권 설정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심판·소송제도

출원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상표청 항소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부쿠레슈티(Bucharest)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취소 및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 등록 취소 사유에는 ① 등록상표를 5년간 계속하여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상표 등록 이후, 등록상표가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의 보통 명칭이 된 경우 등이 있다(상표법 제46조)
- 등록 거절사유가 있음에도 상표 등록이 된 경우,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상표법 제47조).

바. 비용<sup>92)</sup>

(단위 : lei)

항목	비용	
출원료	48	
기본 심사 비용	흑백	523
	색상	903

92) 기타 비용은 루마니아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osim.ro/wp-content/uploads/Legislatie/Taxe-propietate-industriala-valabile-incepand-cu-01-ianuarie-2020-Anexele-1-2-4-5-6-OG41.pdf>)에서 검색 가능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

창작의 방식, 표현의 형태 및 그 가치와 목적에 관계없이 표현되는 독창적인 지적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창작물, 특히 글이나 구술 텍스트, 음악적 구성, 음악, 안무 및 연극 작품,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① 아이디어, 이론, 과학적 발견, 수학적 개념, ② 국가, 공공기관 및 조직의 공식 기호(국기, 훈장, 도장 등), ③ 뉴스 및 언론 정보, ④ 단순한 사실 및 데이터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저작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존속기간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그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공동저작물에 관해서는,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의 생애 및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그의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

#### 2)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양도 및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 설정 모두 가능하고, 다만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사용권 설정이 불가하다.

독점적 이전의 경우, 저작권자는 양수인과 계약한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비독점적 이전의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사용하고, 타인에게 다시 비독점적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 다. 등록요건

루마니아는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침해 등이 문제될 경우 법원에 의해서 저작권의 확인 또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 2.6 영업비밀

루마니아는 비공지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서, 비밀로서 가치가 인정되며, 정보 소유자가 이를 비밀로서 합리적 조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불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호하고 있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3.1. 관할<sup>93)</sup>

루마니아에는 전문적인 지식재산 법원이 없다. 따라서 침해 사건은 일반 관할권 규칙에 따라 민사 법원 체계 내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며, 청구인은 피고의 주소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 또는 손해가 발생한 곳 중 한 곳의 관할 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 3.2. 민사적 대응

각 권리 소유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①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②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③ 부가적으로 침해 행위자에 대해 시장에서의 침해 제품 및 침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재료 및 수단의 폐기, 유통 경로에서 침해 제품의 회수 및 제거 등 불법행위를 종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3.3. 형사적 대응

각 권리의 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3.4. 행정적 대응

침해 제품이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권리자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border measures) 등을 통해 침해 제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93) <https://iclg.com/practice-areas/patents-laws-and-regulations/romania>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VII. 벨기에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2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2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31



## 1.1. 개요

벨기에는 기본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을 반영하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벨기에의 특허권은 연방정부 경제부 내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베네룩스 상표청에서 관리한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베네룩스 협정에 의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

특허는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국가에 의해 부여받는 배타적 권리로 신규성, 합법성 등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특허는 제품, 결과, 또는 과정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기술 혁신과 지식의 확장을 장려하는 한편 제작자에게 가치 창출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상표권은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이용되는 기호에 부여된다. 상표권에 따라 일반 대중들은 시장에서 기업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상표는 단어, 약어, 숫자, 슬로건, 이미지, 모양과 색상의 조합 등 여러 형태에 부여될 수 있다.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계속해서 갱신등록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의 물품 선택에 제품의 외관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디자인은 판매자의 전략적인 판매방법으로 활용되며, 창작자는 디자인권을 통해 상품의 디자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디자인제도에 따라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베네룩스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국의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3국의 총칭이다. 위 3국은 1960년 경제적 전면협력 체제로 전환하여 베네룩스 경제동맹을 결성하였고, 유사시 군사동맹 체결까지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상표, 디자인 등 출원에 대하여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BOIP'에 하나의 출원을 통해 3개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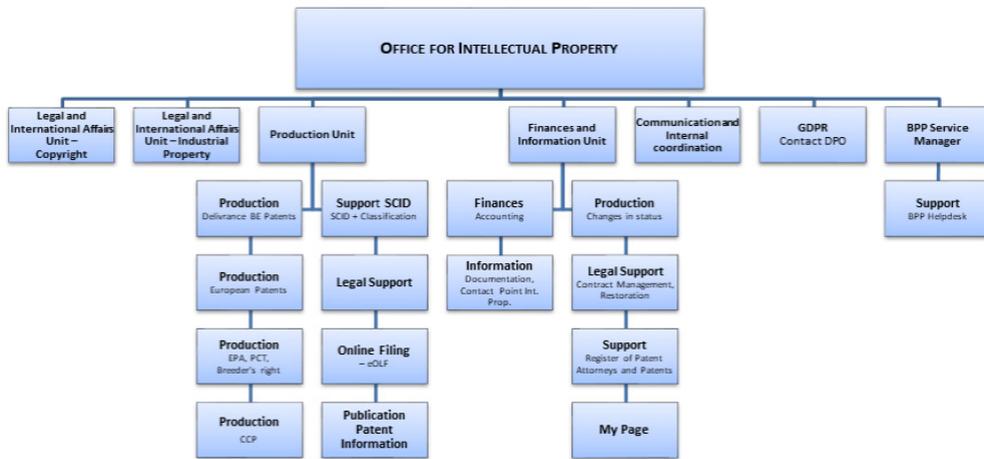
벨기에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1. 12. 14.)	가입	가입	가입 (1998. 4. 1.)	가입	가입

한편,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 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벨기에의 경우, 연방정부 경제부내 지적재산권 관리부(OPRI: Office belg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에서 벨기에 개인 및 기업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관할하고 있다. 또한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enelux Off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BOIP)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그외에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에서 국가 산업 재산권을 인증하며 신탁관리단체로 SABAM, SEMU가 있다.



[그림] 벨기에 지적재산권 관리부 조직도<sup>94)</sup>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95)</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811	137	21,415	-	1,439	-
2015	2,988	148	24,414	-	1,566	-
2016	3,240	119	24,238	-	1,499	-
2017	3,158	216	24,246	-	1,646	-
2018	3,251	218	23,470	-	1,509	-

94) <https://economie.fgov.be/fr/publications/office-de-la-propriete-3>

95)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BE](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BE)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벨기에의 특허는 벨기에 경제법 (CEL)이 규율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으로 벨기에 경제법 강령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는 신규성, 진보성(해당 기술이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특허 분야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을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 범위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요구한다. 또한 발명은 특허에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고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야 한다. 한편, 벨기에에 특허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나. 등록요건

벨기에 법률에 의해 다음은 특허 보호 측면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술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 수행, 게임 플레이 또는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 식물 혹은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혹은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서 제출

벨기에 특허청에 3부로 작성된 특허 출원 양식, 발명에 대한 설명(필수), 청구항(필수), 도면(선택) 및 초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 2) 출원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즉시 출원공개된다.

### 3) 실체심사

벨기에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명세서·청구항에 있어서의 발명의 충분한 개시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 없이 특허를 부여하며, 수수료 정도만을 확인한다. 즉 벨기에에서 특허출원의 경우 다소 자동적인 절차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심사가 부재하여 벨기에 특허는 다소 '약한 특허'로 간주될 수 있다.

### 4) 공고

특허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 후, 일정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가 부여된다.

### 5) 기타 절차 이용

벨기에 국내 출원 외에 PCT루트, EPC 루트 등이 존재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이 부여되면 벨기에 내에서 특허에 관련된 독점권을 누릴 수 있으며 타인이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은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존속기간

실체적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벨기에에서 특허는 특허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록되는 만큼 벨기에 특허청에는 공식적인(사전 또는 사후)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 2) 무효 청구

일단 발효된 벨기에 특허는 특허청이 아닌 벨기에 사법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간 특허보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수 있다. 특허의 무효 사유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특허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바. 비용**

2019년 기준 벨기에 특허 출원 관납료는 50유로이다<sup>96)</sup>.

**2.2. 디자인**

**가. 보호대상**

상표 및 디자인에 관한 한 벨기에 법은 베네룩스 연합 (네덜란드 및 룩셈부르크)의 인접 국가의 법과 통합되었으며, 따라서 상표, 디자인 권리는 베네룩스 지적 재산권 협약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제품의 외관으로서, 그 제품 자체 또는 그 장식품의 선, 윤곽, 색상, 형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을 통해 분류될 수 있다.

**나. 등록요건**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 또는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 그외 용이하게 창작이 가능한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필요하다.

**다. 취득절차**

1) 출원

원서, 도면 또는 사진, 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등이 필요하다.

2) 심사

디자인권에 대한 실제심사는 없으며 방식요건·공서양속 위반만이 심사된다. 출원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된 문서들이 출원일을 확정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에 그 출원일을 명시하여 출원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출원일을 통보하며,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한다.

96) 더 상세한 비용은 벨기에 OPRI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economie.fgov.be/sites/default/files/Files/Intellectual-property/Fees-patents.pdf>).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베네룩스협약서 3조 16항 1호에 의하면, 디자인권 소유자는 디자인이 통합되거나, 디자인의 적용,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제품의 사용, 그 디자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창작자의 창작성을 고려할 때, 당업자에게 전반적으로 다르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제품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양도, 실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갱신을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5년간 4번 연속하여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갱신시에 복수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들의 일부에만 한정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거절결정에 대하여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은 최대 6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의 이의결정에 대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2) 무효 청구

디자인 등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무효 절차를 다룰 수 있다.

## 바. 비용

2020년 기준 출원료와 등록비를 포함한 베네룩스 디자인 출원의 공식 수수료는 150유로다.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1971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각국의 상표법은 하나의 형태인 Benelus Trademark Act로 제정되었고, 그 이후 Benelux Convention on IP이 제정되어 규율하고 있다.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BOIP에서 관장한다. 상표란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및 상품 또는 포장의 3차원 형태, 소리 등 다른 사업체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이다.

### 나. 등록요건

#### [베네룩스 상표 등록의 절대적 거절 사유]

- 기호가 베네룩스 상표에 해당할 수 있는 상표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표가 식별성이 없는 경우
- 상표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제품의 제조시점, 서비스의 제공시점,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징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 또는 표시로만 구성된 경우
- 상표가 일상 언어로 또는 선의로 관습이 되었고, 확립된 거래 관행이 된 기호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된 경우
- 상표가 공공질서에 반하거나 공중을 오인시킬 수 있는 경우
- 원산지가 없는 와인 또는 증류주에 대하여,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이루어진 포도주 상표의 등록, 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 표시로 이루어진 증류주 상표의 등록인 경우

### 다. 취득절차

#### 1) 출원

NICE 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다류출원, 단독 또는 공동출원 모두 가능하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하려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이 된 상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베네룩스 공식 상표 사무소의 웹사이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등록하려는 상표가 글자로만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2) 심사 및 출원공고

출원서가 BOIP에 제출되면 방식심사(상표출원서 기재요건 확인)를 거치게 된다. 부적격사유가 없다면 심사청은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사유(상표 자체의 식별력 유무,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상표 여부 등)만을 심사한다. 상대적 거절이유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거절이유가 발생 시,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하게 되며 출원인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 라. 상표권의 효력 및 출원/등록 기간

####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베네룩스 3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독점권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제3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 유사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상표 사용권설정계약에 의해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 모두 설정 가능하며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응 가능하다.

#### 2)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 3) 소요시간

베네룩스 상표 등록출원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제3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당초 동일한 상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또는 잘 알려진 상표에 대해서만 가능하였는데, 2018년 6월 1일부터 저명한 상표의 소유자가 새로운 상표가 기존 상표의 고유한 특성이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리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상표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한편, 당사자는 BOIP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베네룩스 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2) 무효, 취소 신청

상표가 등록되면 제3자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거절사유에 따라 사법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상표가 등록 후 5년 동안 보호 대상 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 갱신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대중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도 등록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바. 비용

2020년 기준 상표 등록출원 관납료는 244유로(부가세 면제)이고, 10년 간 등록비를 포함한다.

2.4. 저작권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벨기에에서 저작권은 벨기에 경제법 강령 등에 의해 보호되며, 그림, 사진, 디자인, 문학,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걸쳐서 다방면으로 보호된다. 벨기에 저작권 법률은 저작권 보호에 적합한 저작물의 유형을 정의하거나 열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유형은 베른협약 제2(1)조를 참조할 수 있다.

[베른협약 저작물의 종류 예시]

- 단어, 수학적 기호, 그래픽 기호로 표현된 저작물 (문학, 저널리즘, 과학 및지도 제작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시각 미술 작품
- 사진 작품
- 산업 디자인 작업
- 건축, 건축 및 도시 계획 및 도시 계획 작업
- 음악 및 음악 및 텍스트 작품
- 극적, 극적 음악적, 안무 및 무언극 작품
- 시청각 작품 (영화 포함) 등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본질적으로 경제적 권리, 인격적 권리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는 작품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가 가능하다.

### **다. 저작권의 효력**

벨기에에서 저작권 보호는 특별한 절차 없이도 이루어지는데, 벨기에 경제법에 명시된 일반규칙에 의하면 보호기간은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간이며, 음반은 50년간이다.

### **라. 등록요건, 취득절차, 등록기간**

벨기에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의거하여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출시와 동시에 권리가 인정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3.1. 사법구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민사소송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침해의 경우, 벨기에 경제법에서 특허의 대상인 제품의 제조, 제공, 시장 출시 또는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제품의 수입 또는 보관, 벨기에 영토에서의 출원을 위한 특허 프로세스의 적용 또는 특허 프로세스의 제공, 특허 프로세스에서 직접 얻은 제품의 제공, 시장 출시 또는 사용 또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제품의 수입 또는 저장(Article XI.29) 등의 행위가 직접적 특허 침해로 정의된다.

권리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이 침해됐을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절차와는 별도로 권리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침해상품의 회수 및 폐기를 포함하여 침해 금지 및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침해행위로 인한 이익의 양도나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 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압류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다. 소송에 의한 침해 또는 무효절차는 일반적으로 약 12~15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허침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침해소송과 동일한 절차에서 이를 처리한다.

브뤼셀 상법법원이 2015년 1월 1일부터 벨기에 내의 모든 특허 침해 및 무효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브뤼셀 항소법원,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벨기에 세관은 EU 관세규정(608/2013)을 기반으로 관세 보호를 요청하여 특허, 상표 등 침해 제품의 압수 조치를 활발히 취하고 있다.

### 3.3. 형사구제

벨기에 내에서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형사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조건에서 특허 침해는 실제로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즉, 침해가 악의적이거나 사기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의 맥락에서도 특허권자는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06  
루마니아(Romania)

07  
벨기에(Belgium)

08  
불가리아(Bulgaria)

09  
세르비아(Serbia)

10  
스웨덴(Sweden)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VIII. 불가리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3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3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50



## 1.1. 개요

불가리아는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물, 반도체배치설계, 식물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불가리아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BPO'라 약칭하는 불가리아 특허청(Patent office of the Republic of Bulgaria, 이하 'BPO'라 함)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출원일로부터 4년간 보호되고, 각 3년씩 2회 갱신 가능하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제품이나 제품의 일부가 보이는 모양, 선, 그림 장식, 색상 조합 또는 이들 조합에 대해 인정된다. 보호기간은 10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불가리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절대적, 상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10년씩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BPO 내 심사부의 거절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BPO의 심판부에 항소할 수 있다. 누구든지 등록 권리의 무효를 BPO에 구할 수 있고 일부 무효를 구할 수도 있다. BPO 심판부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 수령일자로 3개월 이내에 소피아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소송 요건을 갖춘) 독점실시권자는 소피아 시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BPO에 등록 지식재산권의 등록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요청에 따라 BPO 및 BPO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최고행정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를 중단한다.

불가리아 특허청장은 상표권, 지리적 표시, 특허 실용신안법 및 산업 디자인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자에게 벌금 또는 금전적 제재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불가리아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불가리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4. 5. 21.)	가입	가입	가입 (2001. 10. 2.)	가입	가입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불가리아 내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심사 및 등록 관리는 불가리아 경제부 산하인 특허청(BPO)가 관장하고 있다. BPO는 불가리아의 산업재산권국을 1948년 승계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BPO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전문심사를 통해 보호 결정을 내리고 공보 및 등록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산업재산권 관련 조례 수립, 산업재산권 분야 훈련, 교육 등 불가리아 내 산업재산권 보호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Chairman				
Directorate "Administrative -Legal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Directorate "Financial and Economic Activities"	Directorate "Expertise and Protection of Inventions and Designs"	Directorate "Expertise and Opposition of Trade 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Directorate "Disputes and Administrative Criminal Activity"

[그림] 불가리아 특허청 조직도<sup>97)</sup>

97) <https://www.bpo.bg/bg/about/struktura-i-upravlenie>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98)</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50	16	15,497	4,282	1,894	60
2015	313	11	15,572	3,993	1,492	219
2016	249	11	16,105	3,893	1,230	274
2017	233	23	15,129	4,128	1,250	267
2018	212	18	14,910	4,822	933	112

06  
루마니아(Romania)

07  
벨기에(Belgium)

08  
불가리아(Bulgaria)

09  
세르비아(Serbia)

10  
스웨덴(Sweden)

98)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BG](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BG)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음)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제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이라면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문학 연극 등 예술작품, 미적창조, 정신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게임, 규칙,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 게시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수술, 치료, 진단 등의 의학발명과 공공정책, 도덕성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가 부여될 수 없다. 이들은 다른 나라 특허제도와 유사하다.

### 나. 특허 등록 보호의 지역적 범위

불가리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는 불가리아 내에서만 보호가능하다. EPO를 통한 특허 등록의 경우 불가리아 내에서 출원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등록 이후 특허권의 효력에 관련해서는 불가리아 특허법을 적용하고, 법원의 판결을 통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인용 역시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다. 취득절차

#### 1)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자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특허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발명은 발명가로부터 발명을 통지 받은 후 3개월 내에 신청을 하는 경우 특허권은 고용주에게 귀속된다. 3개월이 지나면 특허받을 권리는 다시 발명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발명의 경우 특허받을 권리는 계약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특허출원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가 국내에 없는 경우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2) 특허출원

특허 출원서 제출은 BPO에 직접,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전자행정 포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가능하다. 다만 이메일, 팩스 등 전자사본을 전송하는 통신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1개월 내에 BPO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임장
- 청구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 문서
- 출원인이 발명자와 다른 경우 실제 발명가
- 신청수수료

3) 출원서 제출 이후 절차

가) 기밀 정보 유무확인

출원인이 불가리아인이거나 불가리아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출원으로부터 1개월 내에 출원서에 불가리아의 기밀정보보호법에 따른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통보되고, 3개월 내 특허출원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한다. 동의를 얻지 못하면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나) 형식적 심사

기밀 정보 유무 확인 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흠결이 없는지 심사한다. 흠결 발생 시 출원인에 통보되며 3개월의 시정할 시간이 주어진다. 흠결이 제거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예비심사

형식심사 완료 후 3개월 내에 특허 청구항 및 설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에 대한 예비심사 및 전문심사가 수행된다. 역시 흠결발생 시 출원인에게 3개월의 시정할 시간을 주어지고 흠결이 제거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동시에 특허의 단일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단일성 요건 위배 시 출원인에게 분할 출원을 제안한다.

#### 라) 출원의 공고 및 이의신청

출원된 내용은 18개월 후 BPO 공식공보에 공고된다. 공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고로부터 3개월 안에 특허가능성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이의신청자가 특허출원 절차에 참여하지는 못한다.

#### 마) 전문심사

BPO는 선행기술을 검토하고 특허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다. 제3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특허성에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성에 대한 의견을 출원인에게 발송하고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흠결을 제거하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답변하는 경우 심사관은 특허 거부 결정을 한다.

#### 바) 특허 등록 결정 및 특허권 부여

발명이 특허가능하고 기타 규제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다시 1개월 내에 수수료를 두배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간주된다.

#### 사) 특허 부여 및 등록

특허 등록 공시는 공보에 공고되고 공개 후 1개월 내 특허가 부여된다.

### 4) 공지에외주장 제도

발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시회의 전시 또는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이러한 공개 후 6개월 이내에서 발명의 공개를 인정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신규성 배제의 예외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외 인정을 위한 관련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갱신수수료를 내야하며, 갱신수수료 납입 만기일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가산수수료를 내고 특허를 연장할 수 있다.

### 2) 특허의 보호범위

불가리아 국내법에 따른 특허, EPO에 등록된 특허 모두 특허권의 보호범위(침해 판단 등)는 불가리아 특허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는 물건의 생산, 사용, 판매, 판매의 제안(청약), 사용목적의 저장을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특허의 권리보호범위는 법적 보호의 범위는 청구항에 의해 결정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참조된다.

## 마. 심판제도 및 등록 이후 유효성에 대한 다툼

BPO 내 심사부(Examination Department)의 거절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BPO의 심판부(Disputes Department)의 특별 위원회(3인)에 거절 결정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심판부는 항소장 수령일로부터 1월 내에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재심사한 결정은 심판부에 대한 새로운 항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판부의 최종결정은 BPO의 청장이 확인한다.

누구든지 특허의 무효를 구할 수 있고 일부 무효를 구할 수 있다. 무효청구에 대한 심판부는 BPO의 청장이 수시로 임명하는 특별 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특허권의 무효청구를 심의한다. 심판부는 특허권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무효청구서를 송부하고, 3개월의 답변기한을 둔다.

BPO 심판부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 수령일자로 3개월 이내에 소피아 행정법원(Sofia Administrative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는 기각 결정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한다.

## 바. 비용

BPO를 통한 특허 출원 관련 관납료는 불가리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po.bg/en/tarifi>).

06  
루마니아(Romania)

07  
벨기에(Belgium)

08  
불가리아(Bulgaria)

09  
세르비아(Serbia)

10  
스웨덴(Sweden)

## 2.2. 실용신안제도

불가리아는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한다.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방법, 화합물 및 제품 사용 방법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실용신안 취득까지는 약 1년~1년 6개월이 소요되며, 최초 등록 후 4년간 보호되고, 각 3년씩 2회 갱신 가능하다.

## 2.3. 디자인

### 가. 개괄

불가리아는 산업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경우 특허와 유사하게 BPO를 통한 출원등록과 유럽공동체디자인 제도를 통한 등록 공동체디자인(RCD) 출원등록이 가능하다.

미등록 산업디자인의 경우 불가리아 법률이 아닌 EU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UCD)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나. 보호대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란, 제품이나 제품의 일부가 보이는 모양, 선, 그림 장식, 색상 조합 또는 이들 조합이다.

디자인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 다. 등록요건

상기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있어야 산업디자인은 등록 가능하다.

새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은 등록 가능한데, 디자인의 특징이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만 다를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informed user)가 디자인을 보고 획득하는 전체적 인상이 선행디자인과 다른 경우 디자인이 개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디자인의 개성에 대한 평가에는 창작자의 자유도가 고려된다.

제품이 발표된지 12개월 내에 출원한 경우 신규성 요건을 상실했다고 보지 않는다.

## 라. 취득절차

### 1) 출원

산업디자인 출원서 제출은 BPO에 직접제출,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전자행정 포털을 통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가능하다. 다만 이메일, 팩스 등 흑백 전자사본을 전송하는 통신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1개월 내에 BPO에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 출원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등록 신청서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보호가 필요한 산업디자인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 또는 여러개의 그래픽 또는 사진

신청서는 불가리아어로 제공되어야 하고, 만약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2개월 내 불가리아어로 번역하여 제출하면 최초 제출일자로 출원일이 소급된다.

### 2) 형식적 심사

먼저 출원서가 형식적 요건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흠결 발견 시 1개월 내에 흠결을 제거할 기회를 부여하며, 기간 만료 후 2개월간 수수료의 두배를 내면 흠결을 제거할 추가 기회가 부여된다. 3개월이 경과하면 출원은 취하간주된다.

이후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원된 디자인이 산업디자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기술적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심사가 이루어진다. 등록거부 사유 발견시 의견을 제출하고 출원인에게 2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준다.

신규성 및 독창성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3) 공고

산업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등록가능하다는 확인이 이루어지면 등록비 납부, 등록증발급 절차에 대하여 1개월의 기한을 부여하는 통지가 발송된다. 수수료를 내면 산업디자인 등록이 결정되고 최대 1개월 내 등록증이 발급된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4) 등록 공표 연기

출원인의 재량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의 공표를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로부터 최대 30 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등록 공표 연기 요청은 등록신청서로만 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복수 디자인 출원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공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은 디자인 자체의 이미지 없이 권리자, 출원일, 우선일, 등록번호만 먼저 공고된다. 권리자의 서면 동의에 따라 공표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 마.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등록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3번 매번 5년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5 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 2) 효력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된 디자인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 모든 디자인으로 확장된다. 보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디자인을 만들 당시의 저자의 의사를 고려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

- 해당 디자인이 개인적 필요를 위해 실험적 목적으로 구현되어 사용됨
- 객관적 인용 또는 교육을 위한 디자인의 사용. 다만 선의의 상업적 관행과 양립할 수 있고, 권리자의 정상적 사용 근거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
- 외국 또는 외국 선박, 비행기 등에서 사용된 경우, 그것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들 차량의 수리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 부품 및 보조장치의 수입

### 바. 심판 및 유효성에 대한 다툼

BPO 내 심사부(Examination Department)의 거절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BPO의 심판부(Disputes Department)의 특별 위원회(3인)에 거절 결정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심판부는 항소장 수령일로부터 1월 내에 절차를 개시하여야한다. 재심사한 결정은 심판부에 대한 새로운 항소 대상이 될 수있다. 심판부의 최종결정은 BPO의 청장이 확인한다.

심판부는 BPO의 청장이 수시로 임명하는 특별 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산업디자인권의 무효청구를 심의한다. 누구든지 산업디자인권의 무효를 구할 수 있고 일부 무효를 구할 수 있다. 심판부는 산업디자인권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무효청구서를 송부하고, 3개월의 답변기한을 둔다.

상기 BPO 심판부의 모든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 수령일자로 3개월 이내에 소피아 행정법원(Sofia Administrative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는 기각 결정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한다.

### 사. 비용

BPO를 통한 특허 출원 관련 관납료는 불가리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po.bg/en/tarifi>).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란 특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표시로, 이러한 표시에는 예를 들어 사람의 이름, 문자, 숫자, 그림, 그림, 상품의 모양 또는 포장, 색상, 소리 또는 이러한 표시의 조합을 포함한 단어가 포함될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와 유사하게 BPO를 통한 출원등록과 유럽공동체상표(EUTM) 제도를 통한 출원등록이 모두 가능하다.

불가리아 상표법에는 상표 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제11조)와 상대적 거절이유(제12조)를 나열하고 있다. 절대적 거절이유는 지정상품이나 다른 기타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절 이유(주로 식별력)를 말하고, 상대적 거절 이유란 지정상품이나 다른 제3자의 선행 상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절 이유(선행상표 존재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는 유럽공동체상표(EUTM) 요건, 우리 상표법 제33조 및 34조에 규정된 등록요건과 다르지 않다.

## 다. 취득절차

### 1) 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BPO는 형식적 심사와 절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특허청 공보에 게시한다.

### 2) 이의신청 및 이의심사 절차

제3자는 특허청 공보에 대하여 유효한 사전 권리에 근거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BPO에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자는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의 신청은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 패널에 의해 심사된다. 그중 한 명은 국가 전문가이고 패널의 의장을 맡는다.

### 3) 상표 등록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표 등록이 결정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보호범위

상표권은 등록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10년씩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 2) 등록상표의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에 갱신 출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등록으로 인한 효력

상표의 소유자는 불가리아 내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등록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의 보상,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침해 제품의 폐기 등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 마. 심판 및 유효성에 대한 다툼

BPO 내 심사부(Examination Department)의 거절 결정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은 BPO의 심판부(Disputes Department)의 특별 위원회(3인)에 거절 결정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심판부는 항소장 수령일로부터 1월 내에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재심사한결정은 심판부에 대한 새로운 항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판부의 최종결정은 BPO의 청장이 확인한다.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불가리아 내에서 상표권자 혹은 실시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등 상표권 취소 사유 또는 무효 사유를 충족하면 제3자는 BPO에 상표권의 등록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기 BPO 심판부의 모든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 수령일자로 3개월 이내에 소피아 행정법원(Sofia Administrative Court)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상고는 기각 결정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한다.

### 바. 비용

BPO를 통한 특허 출원 관련 관납료는 불가리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bpo.bg/en/tarifi>).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는 권리다. 불가리아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는 어문, 음악, 연극, 영화 등 시청각 작품, 예술적 작품, 건축 설계, 사진, 지형/지리 등 과학과 관련된 그래픽, 출판물의 그래픽 디자인 등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U내에서는 지침을 제정하여 EU 회원국들이 국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회원국 내 저작권 관련법의 통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은 EU와 국제 수준에서 완전히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가법이 적용된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나. 저작권자

저작권(Types of Economic Copyright)과 저작인격권(Types of Non-Economic Copyright)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다. 등록요건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가리아에서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 라.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2) 효력

저작권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배포, 발표, 유무선 전송, 전시, 번역, 개작, 건축디자인의 구현 등을 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Types of Economic Copyright)가 주어진다.

### 3) 사용권, 양도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특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 라. 저작인격권(Types of Non-Economic Copyright)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할 때 적절한 사용에 필요한 범위와 방식으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저작물을 저자의 문학적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개성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개작하거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 2.6.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

불가리아 법률은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된 때로부터 10년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보호 대상은 집적회로 그 자체가 아니라 집적회로의 물리적 배열이다. 반도체 배치설계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치설계가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여야 하며 반도체 산업에서 일반적이지 않아야 한다.

## 2.7. 식물 품종 보호(Plant Varieties Protection)

불가리아에서 새로운 식물 품종을 생산한 사람 또는 그의 권리자는 BPO에 인증을 받아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획득하고 식물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호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나무와 포도나무의 경우 30년, 다른 품종의 경우 25 년간 보호된다.

보호 대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반복된 번식 과정 후에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는 특정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그룹과 구별할 수 있는 식물 그룹이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3.1. 지식재산 사건 관련 법원 체계

불가리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은 소피아 시 법원에 제기한다. 항소의 경우 소피아 항소법원에 하며 대법원에 상고도 가능하다.

### 3.2. 민사적 구제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소피아시 법원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독점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가 독점실시권자로부터 소제기에 대한 서면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침해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든 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제기한 특허권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실시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특허권자도 침해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권을 기준으로 원고는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청구, 위반 사실에 대한 선언을 구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BPO에 특허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요청에 따라 BPO 및 BPO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경우 최고행정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를 중단한다. 이 경우 BPO는 법원절차의 중단통지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3.3. 형사적 구제

불가리아 특허청장은 상표권 또는 지리적 표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에게 벌금 또는 금전적 제재와 같은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또한 특허청장은 특허 실용신안법 및 산업디자인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침해 자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불가리아 문화부 장관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IX. 세르비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5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57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72



### 1.1. 개요

세르비아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특허법을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은 2009년에 제정하는 등 비교적 최신에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전세계 및 유럽의 지식재산권 보호 흐름에 맞춰 발명품에 대한 특허부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은 선행조사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으며, 출원도 공개되지 않고,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는다는 점과,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입체 또는 2차원 모양의 제품으로, 선, 표면, 윤곽, 색채 및 재료의 배열에 의해 특징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이 신규성, 창작성 및 차별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을 단위로 4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세르비아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으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창조행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된다.

이외에도 지리적 원산지 표시, 반도체 제품의 토포그래피, 영업비밀 등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규율을 통하여 보다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지식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권력에 관한 법률(THE LAW ON SPECIAL POWERS FOR THE PURPOSE OF EFFICIEN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두고 있다.

세르비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7. 2. 1.)	가입	가입	가입 (1998. 2. 17.)	가입	가입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sup>99)</sup>

산업 재산 보호를 위한 기관의 설립은 파리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협약 의무로, 세르비아는 1920년 11월 15일 산업재산 보호를 위한 행정부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연방행정(1948), 연방 특허국(1953), 연방 특허 관리 (1956), 특허청(1958), 연방 특허청(1967) 등으로 명칭을 변경해오다가 1994년부터 연방 지적재산권사무소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사무소는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지리적 원산지 표시, 반도체 제품의 지형, 지형, 반도체 제품 토포그래피, 저작권 및 관련 권리)과 관련하여 이를 보호하고, 출원, 무효화 등에 관한 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세르비아는 지식재산권 위조 및 불법 복제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지식재산권 보유자를 보호하고자 IPR 집행기관을 두고 있다. IPR 집행기관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나뉘며, 행정기관으로는 관세청, 관리청, IPR 범죄 진압 부서, 시장 감찰관, 교육부, 경제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에이전시(ALIMS) 등이 있으며, 사법기관으로는 법원, 검찰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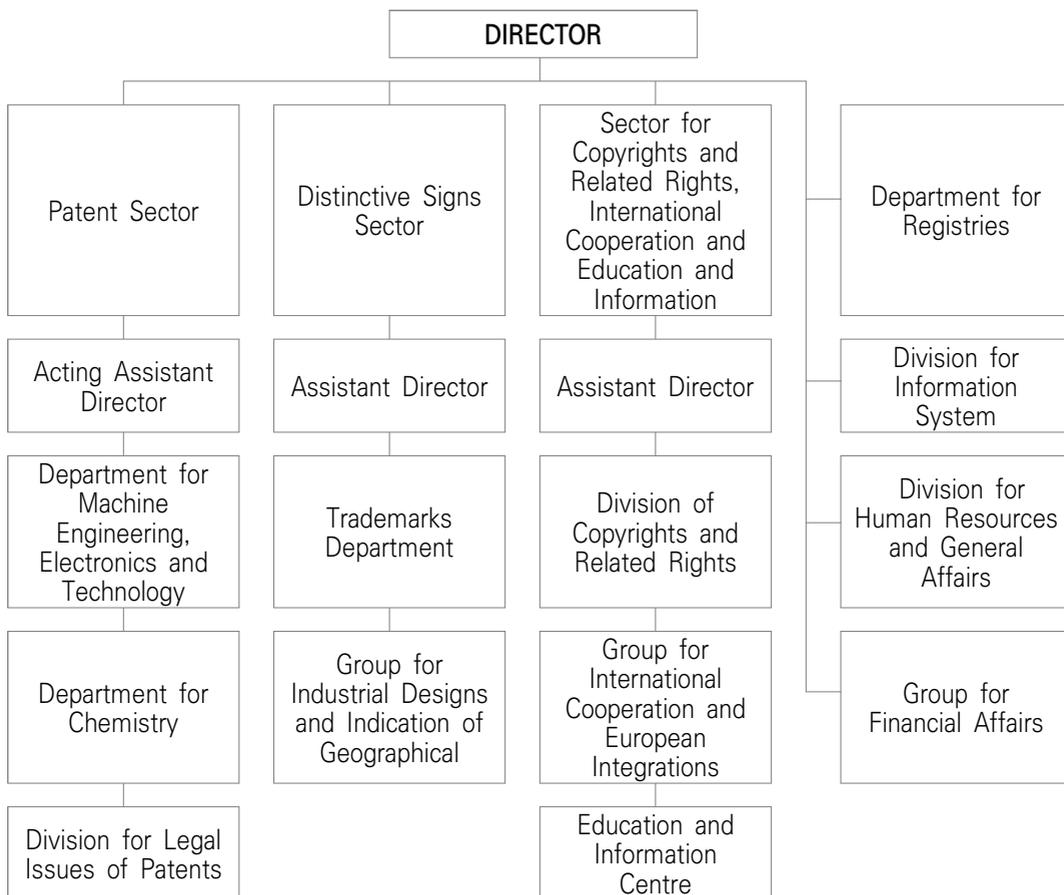
관세청은 재무부 소속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을 규제한다. 다만, 승객의 개인 수하물에 의해 운송되거나 작은 포장으로 보내지는 소형 비상업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세관 당국에 요청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이 있는 경우 이를 규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감찰관은 농림수산부의 틀에 따라 지적재산권(상표권, 설계, 특허,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지형,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을 침해하는 상품의 생산 및 양도에 대한 검사 감독을 수행하고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의 생산 및 마케팅에 대한 감독을 수행한다.

99) <http://www.zis.gov.rs/about-us/about-us.103.html>  
<http://www.zis.gov.rs/about-us/ipr-enforcement.436.html>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적 재산권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법(OJ RS 104/09)에 의해 규제되어 있으며, 그 이행은 지적 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 당국의 법률(OJ RS 46/06, 104/09)에 근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관을 통해 재정업무를 할 수 있는 교육부가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약물 및 의료 기기의 법칙에 따라 세르비아의 약물 및 의료 기기에 대한 기관(OG RS 30/210)(ALIMS)은 약학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 개정, 갱신 및 전송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약학에 대한 라이선스의 종료, 의료기기 등록부에 의료기기의 진입을 수행하고, 의료기기 등록부로부터 의료기기의 수정, 입국 갱신 및 삭제를 결정하는 등 세르비아의 제약 활동 개발, 부칙의 정교화, 약품 및 의료 기기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림] 세르비아 지적재산권사무소 조직도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00)</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11	10	2,670	12,786	150	977
2015	182	13	3,127	12,507	122	1,176
2016	194	21	3,431	12,952	190	1,338
2017	181	13	3,079	13,000	197	1,329
2018	172	11	3,530	12,991	196	904

100)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H](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H)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세르비아 특허법은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하고,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7조). 발명이 생물학적 재료에서 생성되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생산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생물학적 재료를 제조, 가공하거나 활용되는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발견 내지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시스템, 규칙 및 정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는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나. 등록요건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특허법 제7조).

신규성은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서면이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출원 전에 다른 방법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신규성이 있다고 본다(특허법 제10조).

진보성은 출원된 특허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허여하지 않기 위한 요건이다.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sup>101)</sup>

#### 1) 특허출원

특허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①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② 발명자 이름 주소 및 국적, ③ 특허신청서,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④ 기술관련 문서, ⑤ 특허 설명 또는 주장에 참조되는 도면 등이다.

특허 출원은 세르비아어로 출원되며 신청자가 외국어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01) <http://www.zis.gov.rs/intellectual-property-rights/patents/most-frequently-asked.60.html>

## 2) 출원공개

지적재산권사무소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출원을 게시한다.

출원일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에 신청한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과 날짜를 포함해야 한다. 1) 권리 부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표시, 2) 신청자의 이름, 사업체의 이름 및 주소, 3) 발명에 대한 설명 또는 출원된 출원에 대한 참조(86조).

출원일이 부여된 신청서는 주제를 변경하거나 확장하지 않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선행기술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특허를 수정할 수 없다(101조).

## 3) 형식(방식)심사

특허 등록출원은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식심사의 대상이 된다. 지적재산권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원인에게 이를 알리고 그럼에도 기간 내에 결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출원을 거부한다. 보통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내로 주어진다.

- (a) 출원이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b) 출원서에 명시된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c) 출원인이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실질심사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지적재산권사무소는 출원인에게 선행기술 조사에 관하여 수수료 등을 청구하여 납부 받아 선행기술을 조사하여야 한다(제100조). 위 조사 보고서 발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신청내용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 이용 가능성 등의 요건을 파악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한다(제103조 및 104조).

## 5) 특허 등록 및 거절

지적재산권사무소는 실제 심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출원인에게 채택을 위한 최종 문구 초안을 전달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신청인이 해당 문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초안 그대로 특허권을 부여한다. 만일 신청인이 문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무소는 이를 다시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한다(107조). 실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소는 특허 부여를 거부한다(108조).

특허가 부여된 경우 신청인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면 이를 공식 관보 등에 게시하여 공식적으로 등록된다(제111조).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추가 특허는 기본 특허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39조).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특허권의 효력(특허법 제8조 내지 제9조)

특허는 공표됨으로써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7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조, 사용, 실시, 배포, 수출 등),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허 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청구한 권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술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민간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행위, 본 발명의 피험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 또는 실험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처방 등에 따른 약물 및 그러한 약물에 대한 배치 등의 경우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21조).

특허권자는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선의로 발명품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제23조).

### 3) 특허권의 양도(제44, 45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이는 서면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특허권 이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4) 실시권

실시권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권 설정(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한다.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와 강제라이선스(compulsory license)로 나눌 수 있다. 허락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반면, 강제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된 특허권이 국내에서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반도체 기술, 생명공학 연구 수단, 인간에 대한 진단, 의약품 등 및 해당 특허의 실시가 국가 방위, 공중위생 및 절대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강제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다(제28조에서 37조).

#### 마. 심판제도

특허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적재산권사무소 결정에 대하여 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에 상고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바. 비용<sup>102)</sup>

(단위: RSD)

구분(전자출원시 50% 감면)		금액(전자출원)
출원 수수료(최대 10개)		7990(3995)
청구항 11항 초과 시 각 청구항에 대한 추가 수수료		780(390)
선행기술 조사		16020(8010)
갱신수수료	3년	11,200(5,600)
	4년	13,600(6,800)
	5년	16,020(8,010)

102) [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pdf\\_patenti/Takse%207.9.20.pdf](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pdf_patenti/Takse%207.9.20.pdf)

구분(전자출원시 50% 감면)		금액(전자출원)
	6년	19,190(9,595)
	7년	22,380(11,190)
	8년	25,600(12,800)
	9년	28,810(14,405)
	10년	32,020(16,010)
	11년~20년	38,450~96,070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sup>103)</sup>

세르비아는 특허 외에 소특허라고 하여 일종의 실용신안 제도를 갖추고 있다. 소특허는 특허가 보호하고 있는 대상 중 제품의 구조 및 그 구성요소의 레이아웃과 관련한 것으로 제한된다.

### 나. 등록요건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실용신안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는 특허의 출원절차 및 등록절차와 대체로 동일하나, 선행조사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으며, 출원도 공개되지 않고,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존속기간 동안 실용신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03) <https://m.blog.naver.com/kpaablog/221496701173>

### 마. 심판제도

특허의 심판제도와 동일하다.

### 바. 비용<sup>104)</sup>

(단위: RSD)

구분(전자출원시 50% 감면)		금액(전자출원)
출원 수수료(최대 10개)		7990(3995)
청구항 11항 초과 시 각 청구항에 대한 추가 수수료		780(390)
갱신수수료	3년	11,200(5,600)
	4년	13,600(6,800)
	5년	16,020(6,800)
	6년	19,190(9,595)
	7년	22,380(11,190)
	8년	22,380(11,190)
	9년	22,380(11,190)
	10년	22,380(11,190)

## 2.3. 디자인<sup>105)</sup>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이란 입체 또는 2차원 모양의 제품으로, 선, 표면, 윤곽, 색채 및 재료의 배열에 의해 특징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말한다(디자인법 제2조).

시계, 보석, 패션, 또는 기타 사치품, 산업 기계 및 의료기기, 가구, 가전제품, 차량, 건축구조, 제품 포장, 섬유 및 벽지 패턴, 장난감 또는 애완동물을 위한 품목 등이 디자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104) [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pdf\\_patenti/Takse\\_7.9.20.pdf](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pdf_patenti/Takse_7.9.20.pdf)

105) <http://www.zis.gov.rs/intellectual-property-rights/designs/most-frequently-asked.76.html>

다만,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인식되는 제품 외관, 새롭지 않은 디자인, 공공도덕에 어긋나는 디자인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디자인법 제8조).

산업설계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사무소를 통하여 국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되면 헤이그 협정에 근거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및 차별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디자인법 제3조).

신규성이란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디자인이 해당 분야에서 알려진 디자인과 전반적인 인상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3조).

디자인이 당업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이 출원일 또는 우선권 날짜 전에 공중에게 공개된 디자인이 그러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반적 인상과 다른 경우,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창작성을 평가할 때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해야 한다(제5조).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기재한 서류는 디자인의 신청서 및 디자인의 사진이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신청서에는 출원인의 이름, 국적, 출원하려는 디자인 개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우선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신청서는 신청자가 지적재산권 사무소의 신고실에서 직접 취득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신청자의 사업명 및 등록 주소, 법인 또는 본인의 성, 이름 및 주소에 대한 정보, 신청서가 대리인을 통해 제출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정보, 보호 객체의 실제적이고 간단한 제목,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또는 디자이너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지정하고 싶지 않으면 그에 대한 표시, 디자이너가 신청자가 아닌 경우 신청서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 청구된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 신청자의 서명 및 인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된 디자인에 취득되는 디자인 권리의 범위는 제출된 그래픽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설명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디자인 설명은 A4 용지에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용지는 단면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내용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완전히 기재하여야 하고, 신규성 및 차이가 가장 적은 공지된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도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디자인에 관한 사진이나 도면 사본 두 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한 사진은 배경이 없고 반듯해야 하며 그늘이 없어야 한다. 제출된 도면은 기술 도면 도구로 제작된 원본이어야 하며 보호 객체는 축압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출원 서류는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출원심사

산업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출원 관련 심사를 받게 된다. 지식재산권사무소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평가하고, 각각의 보호 범위 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며, 산업 디자인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한다.

출원인은 주어진 기한 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록 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원은 거부된다.

## 3) 등록

지식재산권사무소는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부에 그 신청인의 이름 및 디자인 등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존속기간(제11조)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부여일로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4회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 2) 효력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권을 갖는다.

디자인권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특히 제조, 저장, 제공, 시장, 운송 등과 관련되어 상업적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수출 및 운송 또한 금지시킬 수 있다.

### 3) 실시권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등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실시권 설정(라이센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마. 심판제도

디자인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지적재산권사무소 결정에 대하여 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부에 상고 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바. 비용<sup>106)</sup>

(단위: RSD)

구분(전자출원시 50% 감면)		금액(전자출원)
출원 수수료		6,400(3,200)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인 경우 두 번째 및 그 이후		4,810(2,405)
국제 등록 신청		7,900(3,995)
연회비	첫 번째 디자인(5년)	16,020(8,010)
	두 번째 디자인 및 그 이후(5년)	11,200(5,600)
	첫 번째 디자인(6년차부터 25년차까지 연회비)	9,600(4,800)
	두 번째 디자인 및 그 이후(6년차부터 25년차까지)	6,400(3,200)

106) [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Takse\\_DIZAJN\\_tabela\\_engl\\_2020.pdf](http://www.zis.gov.rs/upload/documents/pdf_sr/Takse_DIZAJN_tabela_engl_2020.pdf)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란 다른 사업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기호를 의미하며, 단어, 문자, 숫자, 비유적 표현, 3차원 모양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상표법 제4조).

상표는 개인 상표, 단체 상표, 보증 상표로 나뉜다. 개인 상표는 상표 소유자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상표로, 상표 소유자는 상표 등록부에 등록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단체 상표는 특정 조건하에서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제조 및/또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표하는 상표이다.

인증 상표는 상표 소유자의 감독하에 여러 회사가 사용하는 상표로, 품질, 지리적 원산지, 제조 방식 또는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기타 일반적인 특성을 보증한다.

다만, 공개 도메인에 있는 표지판(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로 확립되어 있는 상표는 제외), 상품 자체 또는 제품의 모양 그 자체이거나 기술적으로 그런 모양일 수 밖에 없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표, 공공 정책, 도덕성 또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상표 등은 제외한다(제5조 및 제6조).

### 나. 등록요건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으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제5조 및 제6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의 식별력이란 협의의 의미로는 자타상품식별력을 의미하며, 광의의 의미로는 자타상품 식별능력에 독점적응성의 유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상표법상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라는 상표의 본질상 상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식별력이 요구되며, 상품의 식별력과 그 유무는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유사판단, 상표권의 효력제한 등 상표법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적 개념이다.

상표의 식별력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암시적(시사적)표장, 임의선택표장, 조어표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표 식별력이 없는 경우 절대적 거절 사유이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상표 출원

상표 출원은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전자출원은 불가능하다.

신청시 상표등록 출원서,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 해당 상표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수수료 지급성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상표는 다른 회사 이름 등과 충돌할 수도 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출원심사 및 등록

상표 출원이 제출되면 접수 데스크의 지적재산권 사무소(IPO) 담당자가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누락된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 신청서를 완료하면 출원날짜가 있는 식별 번호(Ž 번호)로 표시되며 상표 출원 등록부에 입력된다. 출원 날짜는 우선순위 날짜이다.

그 후, 신청서는 상표부서에서 전달되고 상표부서는 정식 및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IPO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할 당국이 결정한 시간제한(15~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신청서에 흠결이 없으면 IPO는 출원이 상표 요건에 맞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IPO가 출원인이 신청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상표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PO는 신청자에게 첫 10년간의 보호 및 상표 공개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지불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IPO는 신청자가 지정된 시간 제한 내에서 지불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머무르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자가 수수료 납부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IPO는 상표등록부에 규정된 데이터와 함께 인정된 권리를 입력하고 권리소유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서는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해야하며, 만료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2)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3) 상표권 실시계약 및 허가

상표권자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권이 IPO에 설정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등록해야만 한다.

## 마. 심판제도

2020년 2월 1일부터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었다. 절대적 및 상대적 거절이유 심사를 통과하여 해당 출원상표가 공고될 경우,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상대적 거절이유를 근거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IPO가 출원을 거부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정부에 결정 접수 후 15일 이내에 절차가 확정된 모든 IPO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세르비아 공화국 정부의 행정위원회에 의해 처리된다.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반하여 행정위원회의 결정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절차가 제정될 수 있다.

바. 비용<sup>107)</sup>

(단위: RSD)

구분		금액
출원	신고료(10년 보호, 연장가능)(클래스 3개포함)	16,020
	네 번째 클래스부터	3,210
	단체상표	32,020
	신속출원 수수료	7,990
상표 분할		2,400
갱신	갱신수수료(10년, 무기한 연장 가능)	32,020
	추가 처리 수수료	100

2.5. 저작권<sup>108)</sup>

## 가. 보호대상

1) 문학, 과학, 브로셔 및 기타 언어 작품, 2) 강연, 연설 등 구두 발표 3) 뮤지컬, 무언극 등 음악 작품, 4) 단어가 있거나 없는 음악작품, 5) 영화, 6) 예술 작품, 특히 회화, 조각 및 그래픽 작품 등, 7) 건축 구조, 인테리어 등 관련 작품, 8) 도면, 계획, 지도 또는 입체 표현과 같은 과학 또는 기술 콘텐츠, 9) 응용 예술작품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다만, ① 법, 조례, 국제조약 및 그 밖의 공문서, ② 지불 방법(수단), ③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의 결정, 조서 및 보고서, ④ 특허 출원의 공시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의 내용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명칭을 부여할 권리, 자신이 저작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107) <http://www.zis.gov.rs/intellectual-property-rights/trademarks/fees.71.html>

108) <http://www.zis.gov.rs/intellectual-property-rights/copyright-and-related-rights/most-frequently-asked.95.html>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의 원래 저자와 그 상속인은 모든 제3자에게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저작권에 관하여 저작권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있다.

위 저작권 혹은 그 상속인 등 저작권을 보유한 자는 다른 형태로 자신의 작품을 재현, 그의 작품의 공공 성과, 지속적인 유형 캐리어에 대한 그의 작품의 기록, 라디오, 케이블 또는 위성에 저작물에 관한 방송,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등의 행위를 허여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즉, 저작권자는 작품의 사본 만들기 등 작품을 재현할 수 있는 권리, 작품을 판매, 제공,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대여권, 사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다. 저작권의 효력

WIPO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저자의 재산권은 저자의 생애동안 지속되며, 사망 후 70년 후 만료된다. 둘 이상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 저작권자가 죽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작자 미상의 경우 그 작품은 출판 또는 게시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자가 드러난 경우 저작권자의 죽음 후 기간을 계산한다. 위 모든 계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한다(제102조~ 제107조).

저작권법은 또한 저자의 도덕적 권리를 포함, 저자의 권리(그의 작품의 저자로 인식 될 수 있는 권리), 저자의 지위와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신의 작품의 변경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보호한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저자 또는 소유자/소유자는 행정 절차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호된 저작물의 제조 또는 소지 증거를 찾기 위해 건물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저작물의 불법 복제 사본을 겨냥한 조치).

저작권 소유자는 특정 활동의 수행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는 또한 물질적 피해 및 도덕적 권리의 위반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등록요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만든 순간부터 저절로 보호된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IPO에 이어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2.5 기타

### 가. Topographies<sup>109)</sup>

세르비아는 2013년 7월 3일 반도체 제품의 지형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에 집적 회로의 토포그래피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 이 분야의 법적 틀을 개선할 필요성과 유럽연합의 국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하여 반도체 제품의 지형 보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법률 제정으로 집적 회로뿐만 아니라 반도체 제품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으며, 개별 부품으로 만든 회로를 포함한 모든 회로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 나. 지리적 표시<sup>110)</sup>

세르비아는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의 명칭 또한 보호하고 있다. 원산지 명칭은 본국의 원산지 명칭으로, 그 품질과 특수특성이 자연적 요인과 인적 요인을 포함하여 지리적 환경에 의해 독립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조절되고 있으며, 특정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생산, 처리 및 준비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제품의 품질과 특수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평판 또는 상품의 다른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 할 수 있는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지역의 영역에서 유래 상품을 식별하는 표시이다.

예로는 천연물(돌, 대리석, 양모, 유리 등), 농산물(토마토, 파프리카, 완두콩 등), 식품(치즈, 크림 치즈, 햄 등), 제조 제품(카펫, 특수 가죽 신발 -오파낙 및 제조품에서 생산되는 기타 유사한 제품), 공산품, 수제 제조 제품(손으로 만든 제품) 등이 있다.

해당 지역의 이름으로 표시된 특정 지리적 영역 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자연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그 원산지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수수료 납입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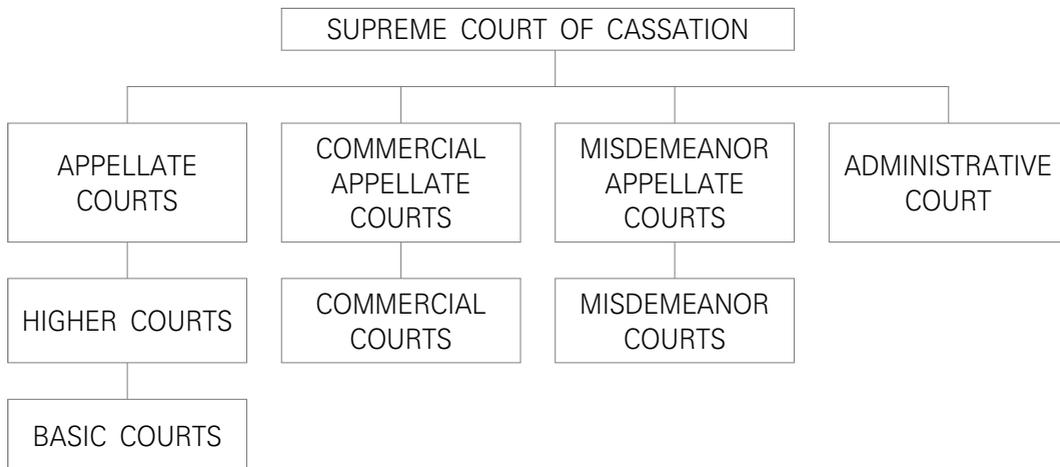
109) <http://www.zis.gov.rs/intellectual-property-rights/topographies-of-semiconducting-products/most-frequently-asked.92.html>

110) <http://www.zis.gov.rs/intellectual-property-rights/indications-of-geographical-origin/most-frequently-asked.84.html>

### 3.1. 사법구제

#### 1) 법원조직<sup>112)</sup>

대법원은 세르비아 공화국의 최고 법원이고, 그 아래로 상업 항소 법원, 경범죄 항소 법원, 행정 법원 및 항소 법원이 있다. 항소 법원 아래로는 고등 법원 및 기본 법원이 있다. 상업 항소 법원 아래로는 상업 법원이 있으며, 경범죄 항소 법원 아래로는 경범죄 법원이 있다. 고등 법원은 기본 법원보다 상위 법원이다.



[그림] 세르비아 법원 조직도

2014년 1월 1일 현재, 세르비아 공화국에는 총 159개의 법원이 있으며, 그 중 1심으로는 66개의 기본 법원, 25 개의 고등 법원, 16 개의 상업 법원, 44 경범죄 법원 및 행정 법원이 있다. 2심 법원으로는 4 항소 법원, 상업 항소 법원 및 경범죄 항소 법원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한 경우 고등 법원이 있다.

#### 2) 대응절차

권리자는 사용하고 있는 대상품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시키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고의를 입증함에 유효할 수 있다.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111)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유럽연합-2012년판 311pg~312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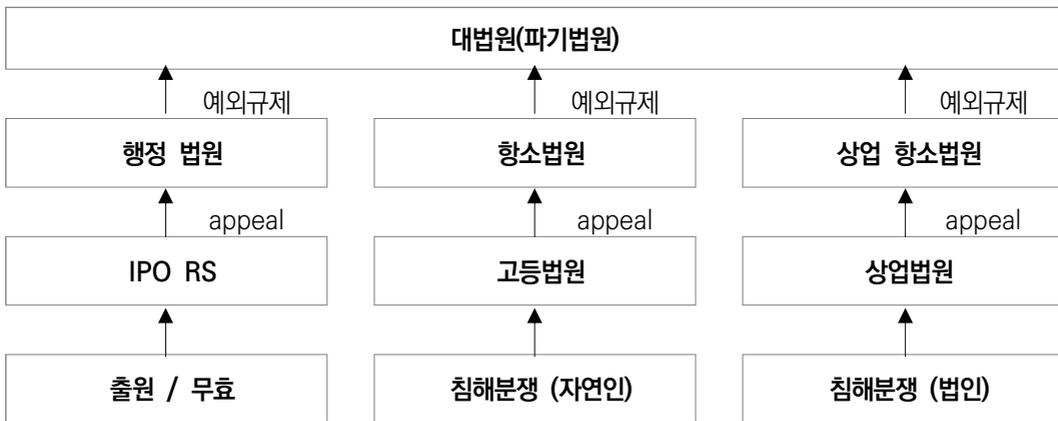
112) <https://www.vk.sud.rs/en/organizational-structure-courts>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H](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H)

시정되지 않는 경우 특히 침해 확인, 침해 행위금지, 손해배상, 법원 결정의 공고, 가치분, 폐기, 형사 제재 등이 가능하다.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자연인 사이의 민사소송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관할하며, 법인 간의 분쟁인 경우에는 상업재판소에서 관할한다. 1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 및 상업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대법원에 대한 상소는 예외적 구제 조치로서만 가능하다



[그림] 세르비아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 관련 절차

###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세르비아는 행정적 보호로서 세관에 의한 수출입 통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세르비아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3. 형사구제

특허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 법원에서 추가적인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고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무효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 스웨덴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7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18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195



## 1.1. 개요

스웨덴은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 식물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실용신안 제도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제품이나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에 대해 인정되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스웨덴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스웨덴 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스웨덴 특허 및 등록 사무소(Patent och Registrerings Verket, 이하 'PRV'라고 함)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한편, 스웨덴 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2016년 9월 1일 설립된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인 특허 및 시장 법원(The Patent and Market Court)에 관할이 있고 항소는 특허 및 시장 항소법원(The Patent and Market Court of Appeal)에서 이루어진다.

스웨덴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8. 5. 17.)	가입	가입	가입 (1995. 12. 1.)	가입	가입

한편,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스웨덴 내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출원 및 심사는 스웨덴 정부기관인 특허 및 등록 사무소(PRV)가 관장하고 있다. PRV는 1885년 설립된 왕립특허사무소에서 1895년 명칭을 바꾸어 지금에 이르렀다. PRV는 스웨덴 내 등록을 요하는 지식재산권만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간행물 발간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스웨덴 내 지식재산권 보호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림] 스웨덴 특허 및 등록사무소 조직도<sup>113)</sup>

113) <https://www.prv.se/sv/om-oss/organisation/>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14)</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5,852	441	23,578	3,918	2,362	21
2015	5,874	390	26,469	3,793	2,582	27
2016	5,587	352	26,255	4,136	2,795	61
2017	5,776	305	28,781	4,375	2,344	64
2018	5,889	442	25,199	5,273	2,150	122

06  
루마니아(Romania)07  
벨기에(Belgium)08  
불가리아(Bulgaria)09  
세르비아(Serbia)10  
스웨덴(Sweden)114)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E](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E)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음)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제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이라면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미적 창조, 정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게임,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의학발명, 식물종 동물종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정으로 인한 미생물 프로세스 및 제품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될 수 있다. 스웨덴에는 실용신안을 보호하는 제도는 없다.

### 나. 특허 등록 보호의 지역적 범위

스웨덴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는 스웨덴 내에서만 보호가능하다.

EPO를 통한 특허 등록의 경우 스웨덴 내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특허권 침해의 경우 스웨덴 법을 적용하고, 스웨덴 법원의 판결을 통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인용은 스웨덴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자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특허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발명의 양수인은 발명의 양수 사실을 입증하여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출원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 2) 특허출원

스웨덴의 특허 출원에는 특허출원 신청서, 초록, 도면을 포함한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청구항, 신청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다.

## 3) 영문 특허 출원 제도

스웨덴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는 스웨덴어이지만, 2014. 7. 1.부터 영어로도 스웨덴 특허 출원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서, 청구항, 요약서 등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특허 등록시, 특허 청구항(claims)을 반드시 스웨덴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스웨덴어 번역본은 참고자료이고 특허의 권리범위는 영문 특허 청구항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영어로 된 특허가 등록 허용되어 제3자가 특허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자는 번역된 특허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PRV는 특허권자에게 번역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특허권자의 비용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 절차는 스웨덴어로만 진행된다.

## 4) 출원서 제출 이후 절차

## 가) 기술적 의견 통지

출원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가 끝나면 실질심사를 거쳐 PRV의 선행기술 검색 결과 및 기술적 의견이 출원인에게 통지된다. 2020년 기준 PRV가 출원에 대해 첫 번째 기술적 의견을 밝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계 7 개월, 전기전자 7 개월, 화학 및 생명 6 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나) PRV 의견에 대한 입장

PRV의 의견에 대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 다) 최종통지 및 이에 대한 회신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경우 PRV는 출원인에게 최종 통지를 보내고, 출원인이 회신하면 특허부여 의사가 고지된다. 출원인은 PRV의 최종통지에 대한 회신시 오타 등 사소한 결함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라) 특허부여

PRV가 특허부여 의사를 고지하면, 출원인은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허가 영문으로 출원된 경우 스웨덴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 마) 이의신청

특허는 승인 결정이 스웨덴 특허공보에 게시될 때 부여된다. 특허권자를 제외한 누구나 특허가 부여된 때로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RV는 이러한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즉시 통지하고 9개월 기간이 지난 후, 이의 제기를 처리하여 특허가 승인된 대로 또는 수정된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PRV는 이의 제기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 바) 모든 절차 내에서 PRV가 정한 회신 기한을 놓친 경우

출원인이 출원절차 내에서 PRV가 정한 회신 기한을 놓치면 특허출원이 기각된다. 다만 4개월 내에 추가비용을 지불하면 복원될 수 있다.

### 5) 공지에외주장 제도

1928. 11. 28.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전시회 협약 조건에 속하는 공식적인 국제 전시회에서 출원인이 발명을 공개한 경우 또는 발명이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공개 후 6개월 이내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신규성 배제의 예외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 6) 특허심사 하이웨이

스웨덴과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특허청은 2014년부터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을 통해,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다.

- ①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
- ②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할 것
- ③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할 것

### 7) 소요시간

스웨덴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약 1년정도가 소요된다.<sup>115)</sup>

115) <https://www.ip-coster.com/IPGuides/patent-sweden>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특허가 3년이 될 때부터는 연차료(수수료)를 내야 한다. 만기일까지 연차료를 내지 않을 경우 6개월 내 20% 가산수수료를 내고 특허를 연장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특허등록이 말소된다. 특허가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과 관련된 경우, 추가 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특허 기간을 5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 2) 특허의 보호범위

스웨덴 국내법에 따른 특허, EPO에 등록된 특허 모두 특허권의 보호범위(침해 판단 등)는 스웨덴 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특허의 권리보호범위는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고, 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참작될 수 있다.

스웨덴은 판례법에 따라 침해 제품 또는 방법이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문자 그대로 구현하지 않더라도, 누락된 구성이 동등한 수단을 통해 실현되는 경우 특허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본다(균등론).

### 3) 특허 침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독점적 실시권자 역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가) 직접침해

- 특허로 보호되는 제품을 제조, 제공, 출시 또는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품을 수입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스웨덴 내에서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소유자의 동의없이 방법 사용이 금지됨을 알거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그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
- 특허로 보호되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제공, 시장 출시 또는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 또는 가공하는 행위.

06  
루마니아(Romania)

07  
벨기에(Belgium)

08  
불가리아(Bulgaria)

09  
세르비아(Serbia)

10  
스웨덴(Sweden)

### 나) 기여침해

- 특허 발명이 스웨덴에서 활용되는 경우
- 제공한 특정 수단이 발명의 필수 요소와 관련되는 경우
- 특정 수단을 제공한 사람이 이 수단이 발명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의도된 것임을 알고 있거나 명백히 알 수 있었던 경우

### 마. 심판제도 및 등록 이후 유효성에 대한 다툼

특허출원 및 특허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PRV의 최종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PRV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PRV의 결정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PRV에 제기하고 독립된 특허전담법원인 특허 및 시장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 특허 및 시장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 및 시장 항소법원에 할 수 있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상소는 상소 허가가 필요하므로, 실제 대부분의 특허사건에서 특허 및 시장 항소법원이 최고 법원이다.

EPO를 통한 출원등록의 경우,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부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결정 또는 이의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익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간에 의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인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의해서만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 바. 비용<sup>116)</sup>

(단위: SEK)

구분	금액
출원비용 (등록비용: 500, 검색비용: 2500, 모두 의무사항)	3,000
10개를 초과하는 청구항 당	150
공고 기본료	2,500

116) 기타 상세 비용은 스웨덴 PFV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prv.se/en/patents/fees-and-payment/>).

## 2.3. 디자인

### 가. 개괄

스웨덴은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와 유사하게 PRV를 통한 출원등록과 유럽공동체디자인 제도를 통한 등록 공동체디자인(RCD) 출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RCD의 경우 이의신청제도가 별도로 없다.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스웨덴 법률이 아닌 EU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UCD)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나. 보호대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란, 제품이나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을 말한다.

복잡한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에 적용되거나 통합된 디자인은 해당 부품이 복잡한 제품에 통합된 후 정상적인 사용 중에 계속 보이는 경우에만 보호된다. 여기에서 '정상 사용'이란 유지 보수, 서비스 또는 수리 작업을 제외한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의미한다. 다만, 디자인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결정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보호되지 않는다.

### 다. 등록요건

상기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새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은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의 특징이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만 다를 경우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에 능통한 이용자(informed user)가 디자인을 보고 획득하는 전체적 인상이 선행디자인과 다른 경우 디자인이 개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디자인의 개성에 대한 평가에는 창작자의 자유도가 고려된다.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인

디자인의 저자에게 디자인 출원권이 있다. 저자의 고용인, 또는 서비스 관계에서 창작을 위임한 경우 출원권이 이들에 속한다.

## 2) 출원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을 포함한 이미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은, 보호가 필요한 설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품질과 해상도가 있어야 하며, 이미지에서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이 선명해야하므로 다양한 각도를 보여주는 여러 이미지를 제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디자인이 3차원인 경우 디자인의 깊이를 보여주는 투시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품 사진을 촬영할 경우 배경이 중립적이어야 하며 다른 물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이미지에는 실제 물체를 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림자 또는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3) 심사

등록절차 중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원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에 반하는지, 공서 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 4) 공고 및 이의신청

디자인 출원에 대한 형식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게시된다. 게시 후 2개월 동안 누구든지 서면으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PRV는 이의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인에게 이의 제기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관련 이의가 없으면 디자인이 등록된다.

## 5) 비밀유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는 공개문서가 되나, 디자인을 보여주는 이미지나 모델은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려면 신청서에 명시해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절대 비밀유지를 요청할 수 없다. 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할 수 있고 신청서에 얼마나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하고 싶은지 명시해야 한다.

## 6) 소요시간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마. 디자인권의 효력****1) 보호기간**

등록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매번 5년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5 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2) 효력**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된 디자인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 모든 디자인으로 확장된다. 보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디자인을 만들 당시의 저자의 의사를 고려한다.

디자인 등록은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의 동의 없는 실시를 금지한다. 실시란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공급, 마케팅, 수입 및 수출 또는 사용과 상기 목적을 위한 해당 제품의 보관을 말한다.

**바. 심판 및 유효성에 대한 다툼**

디자인권 등록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출원절차와 관련된 PRV의 최종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PRV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PRV의 결정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PRV에 제기하고 특허 및 시장 법원이 이를 심리한다.

유럽공동체디자인 출원에 대한 방식 심사에 대해서는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EUIPO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심판에 패소한 자는 항고심판을 제기하여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등록 디자인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공익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간에 의해서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인출원의 경우에는 특허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의해서만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사. 비용<sup>117)</sup>

(단위: SEK)

구분	금액
전자 출원(5년 간 등록비용 포함)	2,000
비전자 출원(5년 간 등록비용 포함)	2,500
5년마다의 갱신비용(상기 등록비용과 함께 적용)	2,200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를 의미한다. 모든 기호, 특히 사람의 이름, 그림, 문자, 그림, 색상, 제품 또는 포장의 모양 또는 소리를 포함한 단어로 해당 기호가 적절하다면 상표로 구성될 수 있고,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등록요건

특허와 유사하게 PRV를 통한 출원등록과 유럽공동체상표(EUTM) 제도를 통한 출원등록이 모두 가능하다.

PRV의 상표 등록요건에 따르면 상표는 고유하고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외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및 등록 절차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와 지정상품/서비스 분류를 정하여 상표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PRV는 형식적 심사를 거치고,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실질적 심사를 한다. 실질심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17) 기타 상세 비용은 스웨덴 PFV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prv.se/en/designs/fees-and-payment/>).

- 대중을 오도할 위험
-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
- 모범 관행이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 허가없이 국가 휘장, 국가 깃발, 국가의 통제 또는 보증을 포함
- 특별히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되는 내용
- 잘 알려진 아티스트 이름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구성되거나 포함된 경우, 그 이름의 사용이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진을 포함

## 2) 이의신청

심사를 거친 신청서는 등록 전 상표공보에 게시한다. 제3자는 유효한 사전 권리에 근거하여 3개월의 기간 내에 PRV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출원인은 PRV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 3) 출원과정에 대한 불복, 취소 또는 무효 심판

PRV가 최종적으로 내린 각하, 거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은 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등록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3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스웨덴 내에서 상표권자 혹은 실시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혹은 상표권 취소 사유 또는 무효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제3자는 상표권의 등록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4) 소요시간

스웨덴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4~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10년인데,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개정상표법에 따라 기산일이 기존 '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변경되었다.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원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원된 등록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루마니아(Romania) 06

벨기에(Belgium) 07

불가리아(Bulgaria) 08

세르비아(Serbia) 09

스웨덴(Sweden) 10

## 2) 등록상표의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출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등록으로 인한 효력

상표의 소유자는 스웨덴 내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등록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의 보상,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침해 제품의 폐기 등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 4) 양도 및 사용권

### 가) 양도 등록

유럽공동체상표권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회원국 단위로는 양도할 수 없다. 양도는 공동체 상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양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나) 사용권 등록

사용권은 양도와 달리 특정 회원국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고, 상품 또는 용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사용권 역시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마. 비용<sup>118)</sup>

(단위: SEK)

구분	금액
전자출원료(1개류, 1건)	2,000
비전자출원료(1개류, 1건)	2,700
류 추가	1,000

118) 기타 상세 비용은 스웨덴 PFV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prv.se/en/trademarks/fees-and-payment---trademarks/fees-and-payment/>).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는 권리다. 스웨덴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을 어문 또는 예술 작품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작문 또는 연설을 통한 허구적인 또는 설명적인 표현, 컴퓨터프로그램, 음악 또는 연극, 영화, 사진 또는 미술작품, 건축 또는 응용예술작품 그 외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저작권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다. 등록요건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 라.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2) 효력

저작권에는 저작물을 복제하고 대중에게 원본 형식 또는 번역 또는 개작을 통한 다른 문학적 또는 예술적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주어진다.

#### 3)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

저작권은 i) 법률 및 기타 규정, ii) 공공 기관의 결정, iii) 스웨덴 공공 기관의 보고서 및 iv) i) -iii)에 언급 된 텍스트의 공식 번역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사항에서 법률에 정한 요건(저작권법 제2장)을 충족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작권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사용에 필요한 범위와 방식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필수적 부분에 있어서 임시 사본의 제작
- 사적 목적 등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내의 사본제작 및 배포
-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 교육활동을 위한 작품 제작
- EU 내에서 배포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사본 배포, 출판된 사본의 전시
-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포함된 미술작품
- 상업 목적이 아닌 공개 공연
- 공개된 미술작품을 비평 등에 활용
- 공공에 전시된 미술작품 또는 건물의 그림 형태의 재현, 복제
- 시사정보의 보도
- 공개토론, 공공기관 등에서의 서면 진술
- 건물 또는 물품의 소유자가 변경
- 방송을 위한 제한된 범위내 복제
-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의 정당한 사용을 위한 개작 등

#### 4) 사용권, 양도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특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 라. 저작인격권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할 때 적절한 사용에 필요한 범위와 방식으로 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저자의 문학적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개성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다

## 마. 저작인접권

스웨덴 저작권법 제5장에 따라 공연의 공연자, 음반 또는 그림의 제작자, 음반 실연자,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 카탈로그 제작자, 사진의 촬영가 등은 저작재산권과 유사한 특정한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한다. 저작인접권의 보호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다는 더 제한적이다. 저작인접권은 원칙적으로 50년 동안 존속한다(카탈로그 제작자의 경우 15년).

## 2.6.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sup>119)</sup>

스웨덴 법률은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된 때로부터 10년,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생성시로부터 15년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보호 대상은 집적회로 그 자체가 아니라 집적회로의 물리적 배열이다. 반도체 배치설계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치설계가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여야 하며 반도체 산업에서 일반적이지 않아야 한다.

## 2.7. 식물 품종 보호(Plant Varieties Protection)

스웨덴에서 새로운 식물 품종을 생산한 사람 또는 그의 권리자는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획득하고 식물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새로운 식물 품종을 생산한 사람이나 그의 권리 보유자는 생산자가 스웨덴 시민이거나 스웨덴에 거주하는 경우 식물 품종에 대한 식물 육종가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보호기간은 등록 결정이 확정된 다음해부터 25년동안 유지될 수 있고 감자, 나무, 포도의 경우 식물 육종가의 권리는 동시에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반복된 번식 과정 후에도 변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는 특정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그룹과 구별할 수 있는 식물 그룹이다.

119) <https://www.guidetobusinessinspain.com/en/6-propiedad-industrial-e-intelectual/6-6-topografias-de-productos-semiconductores/>

## 2.8. 영업비밀(Trade Secrets)

스웨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법에 의해 보호된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의 사업 또는 연구 기관의 활동에서 사업 또는 운영 조건에 대한 정보
2. 전체적 구성요소의 배열 및 조립된 형태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정보, 일반적으로 해당 유형의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3. 보유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정보
4. 공개가 보유자의 경쟁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과 기술 또는 정보가 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아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1)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준비, 획득 또는 기타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획득하거나, 2)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3)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구성한다.

## 2.7. 지리적 표시<sup>120)</sup>

### 가. 보호대상

EU 품질 정책에 따라 특정 제품이 특정 지리적 원산지 및 명성(특정 품질 또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나. 지리적 표시의 효력

지리적 표시는 등록된 명칭의 오용 또는 모용으로부터 권리자의 상품을 보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보증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 지역의 모든 생산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집단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120)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 (EU)

### 3.1. 민사적 구제

#### 가. 스웨덴의 지식재산 사건 관련 법원 체계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특허 및 시장법원(The Patent and Market Court)에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항소는 특허 및 시장 항소법원(The Patent and Market Court of Appeal)에 제기한다. 이들은 2016년 9월 1일 설립된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으로 다음 유형의 사건은 특허 및 시장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지식재산권 사건
- 마케팅법 사건
- 경쟁법 사건
- 상호 등록 거절 사건

특허 및 시장 항소 법원은 당사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상고 허용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 나. 민사절차를 통한 침해 구제

##### 1) 예비적 구제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은 침해 조사에 중요할 수 있는 물건이나 문서를 검색하기 위해 침해 혐의자의 구내에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청구인은 특허침해행위에 대하여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다. 스웨덴 법에 따라 청구인은 부당한 예비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진다. 예비 금지 명령을 받으려면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은행 보증의 형태로 법원에 담보를 예치해야 한다.

##### 2) 본안 소송

특허권을 기준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 추가 침해에 대한 금지 명령 구제

-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과실 또는 고의적 침해의 경우 침해로 인한 추가 손실에 대한 손해
- 침해 제품의 압수 및 파기 또는 시장에서 침해 제품 회수를 포함하여 추가 침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타 조치
- 침해 판결의 공표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하여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동일한 법원에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3.2. 형사적 구제

지식재산권 침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의 고소 또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스웨덴 법에 따라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I. 스위스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19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01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13



## 1.1. 개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80개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가 경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을 측정하는 글로벌 혁신지수(GII)를 매년 발표하는데, 스위스는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WIPO는 스위스가 특히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부문에서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높은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스위스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법(1954), 상표법(1990), 저작권법(1992), 디자인법(2001)을 제정하여 발명품에 대한 특허부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발명은 특허받을 수 있다. 발명이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등이 있어야 하는데, 신규성 등이란 획기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 특허권은 독일·불어·이탈리아어 중 한 언어로의 번역본을 (출원 시 혹은 기한 전에) 제출해야 하며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이란 선, 표면, 윤곽, 색채 및 재료의 배열에 의해 특징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말하며,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및 차별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를 모두 거쳐 등록되며, 등록된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보호되고, 5년단위로 4회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일 것으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2)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3) 상표가 법·질서·도덕성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스위스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8. 1. 24.)	가입	가입	가입 (1997. 5. 1.)	가입	가입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sup>121)</sup>

스위스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스위스 연방지식재산권 연구소(IGE),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Swiss Feder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IPI)이 있다. IPI는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을 관할하며, 각종 특허, 상표, 디자인, 반도체 지형학(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저작권과 기타 보호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는 IGE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스위스는 2012년 1월부터 연방 특허 법원(Bundespatentgericht)을 설치하여 특허 무효, 특허 침해, 실시권 허락과 관련하여서는 배타적 관할권을 갖게 하였다.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은 최고 감독기관으로 스위스 연방위원회가 선출한 연구소 위원회(The Institute Council)를 두고 있으며, 집행위원들은 스위스 연방위원회가 선출한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연구소 위원회(The Institute Council)에서 임명한다.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22)</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8,334	568	34,862	47,672	4,244	9,041
2015	8,573	446	38,564	49,454	4,800	8,295
2016	8,729	309	36,758	52,695	3,817	7,920
2017	8,622	291	42,007	52,488	4,301	8,773
2018	9,204	332	41,468	54,608	3,446	8,194

121) <https://www.ige.ch/en/about-us/what-we-do.html>

122)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H](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H)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스위스 특허법은 산업에 적용되는 새로운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1조). 다만, 제7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태아를 포함하여 인체의 형성 및 발달의 모든 단계 및 유전자, 배아 등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지 않고 있다(특허법 제1조 내지 제2조).

### 나. 등록요건<sup>123)</sup>

발명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등이 있어야 한다(특허법 제7조).

신규성 등이란 획기적이고 독창적이며,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서면이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출원 전에 다른 방법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신규성이 있다고 본다(특허법 제7조 제2항).

발명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 전에 공개된 경우 특허 출원인 또는 그의 법적 전임자가 명백한 남용 등을 한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다.

스위스 특허권은 IGE에서 아무 언어로나 등록이 가능하나, 독일·불어·이탈리아어 중 한 언어로의 번역본 또한 기한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유사 발견/발명품의 기특허신청에 대한 확인은 [www.espacenet.com](http://www.espacenet.com)에서 가능하다.

### 다. 취득절차

#### 1) 특허출원

특허 출원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①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② 발명자 이름 주소 및 국적, ③ 특허신청서,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④ 기술관련 문서, ⑤ 특허 설명 또는 주장에 참조되는 도면 등이다(특허법 제49조).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특허 출원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23)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patents/patent-basics/what-is-an-invention.html>

또한 생물학적 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에 관한 경우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면, 생물학적 물질의 샘플을 토대로 설명하는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 해야한다.

## 2) 출원공개

연구소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만료된 직후 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출원을 게시한다(제58조).

출원일은 1) 특허 부여를 위한 충분한 설명이 제출된 때, 2) 특허 출원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3) 특허 설명과 관련한 자료가 모두 제출된 때 중 마지막 항목이 제출된 때를 출원일로 본다. 신청서가 게시된 경우에는 IPI로 발송된 날을 출원일로 본다(56조).

## 3) 형식(방식)심사

특허 등록출원은 그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형식심사의 대상이 된다.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출원인에게 이를 알리고 그럼에도 기간 내에 결함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출원을 거부한다.

- (a) 출원이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b) 출원서에 명시된 대상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 (c) 출원인이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 (d) 출원인이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4) 실질심사

연구소는 특허신청내용의 기술적 내용을 파악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검토한다. 실체검사는 보통 특허신청 후 수년 뒤에 이뤄지나, 특허가 결정되면 특허보호는 특허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 5) 특허 등록 및 거절

연구소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 불비 또는 특허 요건 결여에 해당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거절이유통지서를 접수한 출원인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를 허가하게 되면 연구소는 특허 명세서를 통해 해당 출원에 속하는 설명서와 도면을 공고하여야 하며 출원인에게 그 특허 명세서의 인증 사본을 제공, 게시하여야 한다(63조). 또한 IPI는 특허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특허증명서를 발급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이다(14조). 특허권을 존속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특허권의 효력(특허법 제8조 내지 제9조)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제조, 사용, 실시, 배포, 수출 등),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특허 발명이 등록된 경우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청구한 권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술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비상업적 목적을 위해 민간 구 내에서 수행되는 행위, 본 발명의 피험자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연구 또는 실험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 스위스 또는 동등한 약용 제품 제어가 있는 국가에서 의약 제품에 대한 마케팅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행위,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목적으로 본 발명의 사용 등의 경우에는 특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제9조).

### 3) 특허권의 양도(제3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는 서면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특허권이전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4) 실시권

실시권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시권 설정(라이선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한다.

라이선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와 강제라이선스(compulsory license)으로 나눌 수 있다. 허락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반면, 강제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등록된 특허권이 스위스에서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반도체 기술, 생명공학 연구 수단, 인간에 대한 진단, 의약품 등 및 해당 특허의 실시가 국가 방위, 공중위생 및 절대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강제 라이선스 설정이 가능하다(40조).

### 마. 심판제도

방식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실질심사결과 해당 출원이 거절 결정된 경우, 무효심판 결과 해당 특허가 등록 무효 결정된 경우 연구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바. 비용<sup>124)</sup>

(단위: CHF)

구분	금액	
출원 신청 수수료	200	
심사비	500	
청구항 10개 초과 시 각 청구항에 대한 추가 수수료	50	
스위스 특허출원 검색	500	
국제검색(스위스에 처음 출원된 신청에 대한)	1371	
갱신수수료	4년	100
	5년	120
	6년	140
	7년	160
	8년	180
	9년	220
	10년	260
	11년~20년	300~960
갱신 수수료 연체시 추가 수수료	50	

124)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patents/application-in-switzerland.html>

## 2.2.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이란 선, 표면, 윤곽, 색채 및 재료의 배열에 의해 특징이 되는 제품이나 부품의 디자인을 말한다(디자인법 제1조).

다만, 쉽게 창작이 가능한 외관, 단순히 기술적인 특징에 의해 인식되는 제품 외관, 새롭지 않은 디자인, 연방법 및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디자인, 공공도덕에 어긋나는 디자인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디자인법 제4조).

### 나. 등록요건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창작성 및 차별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디자인법 제2조).

신규성이란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제2조 제2항). 디자인이 해당 분야에서 알려진 디자인과 전반적인 인상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2조 제3항).

또한 이미 박람회나 전시회에 공개한 경우, 온라인 또는 기타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이미 판매한 경우, 동일안 디자인을 이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신규성, 창작성 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취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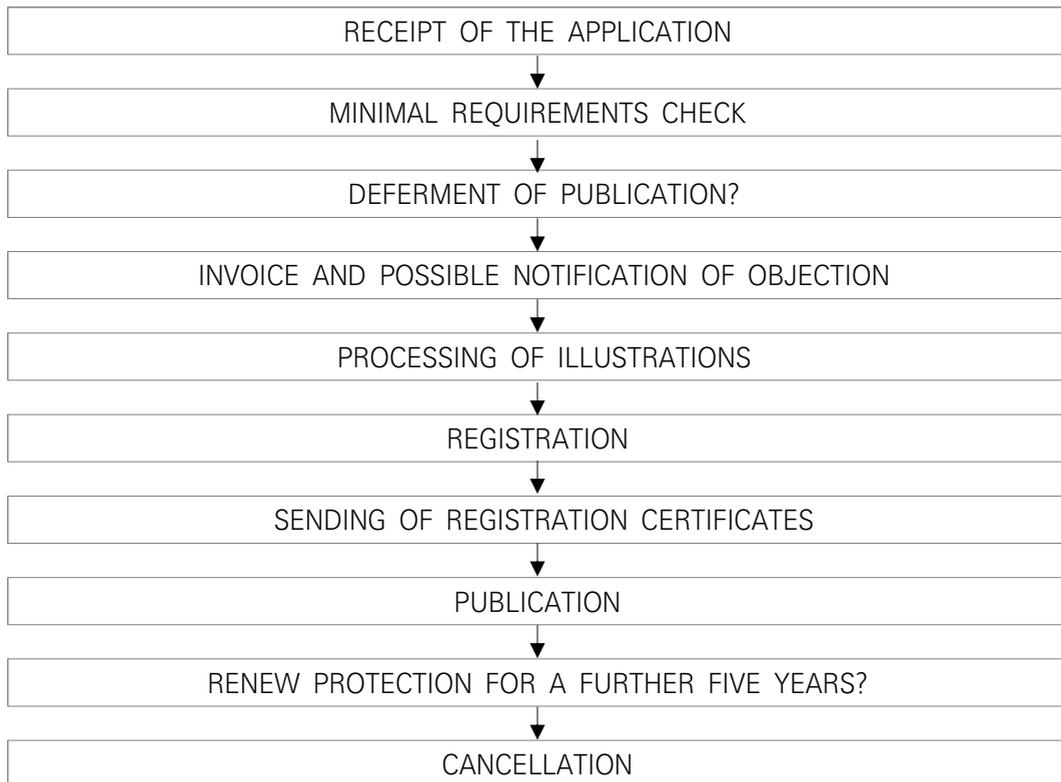
#### 1) 디자인 출원<sup>125)</sup>

디자인 등록 출원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기재한 서류는 디자인의 신청서 및 디자인의 사진이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디자인의 신청서에는 출원인의 이름, 국적, 출원하려는 디자인 개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우선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가능하다.

125) [https://www.ige.ch/fileadmin/user\\_upload/schuetzen/designs/e/Des\\_F\\_Wegleitung\\_EN\\_2020.pdf](https://www.ige.ch/fileadmin/user_upload/schuetzen/designs/e/Des_F_Wegleitung_EN_2020.pdf)

디자인의 상세한 설명은 디자인의 내용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완전히 기재하여야 하고, 신규성 및 차이가 가장 적은 공지된 디자인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도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제출은 이메일, 우편 혹은 직접 방문하여 가능하다.



[그림] 스위스 디자인 등록 절차<sup>126)</sup>

## 2) 방식심사

산업 디자인 출원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된다.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방식 심사 결과 출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원 불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126)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designs/swiss-applications/steps-for-registering-a-design.html>

불수리에 대해 출원인이 대응하지 않거나, 흠결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에 불수리 통지서를 송달하고, 출원을 접수하지 않는다. 불수리에 대해 정당하게 불복하였거나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였을 때에는 연구소는 출원 접수 통지서를 제공한다.

### 3) 실질심사

유효하게 접수된 디자인은 청구된 대상의 보호 요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 또는 각각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결함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연락을 주며, 지정된 기한 내에 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구소는 등록신청을 거부한다.

### 4) 출판연기(제26조)

신청자는 서면으로 제출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 발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기간 동안 소유자는 언제든지 즉시 게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IPI는 연기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출된 디자인 비밀을 유지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sup>127)</sup>

### 1) 존속기간(제5조)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부여일부터 시작하여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4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 2) 효력 및 보호범위(제8조, 제9조)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권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자신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권을 갖는다.

저작권 보유자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디자인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며, 특히 제조, 저장, 제공, 시장, 운송 등과 관련된다. 상업적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수출 및 운송 또한 금지시킬 수 있다.

<sup>127)</sup> <https://www.ip-coster.com/IPGuides/industrial-design-russia>

### 3) 실시권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등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4조).

라이센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실시권 설정(라이선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15조).

### 4) 선사용권

디자인 출원일 또는 우선권 전에, 선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는 상품 또는 전체적으로 다른 인식을 주지 않는 상품을 선의로 사용한 제3자에 대하여는 디자인 사용을 금할 수 없다. 출판 연기기간 동안 또한 마찬가지이다(12조).

## 마. 심판제도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청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바. 비용<sup>128)</sup>

(단위: CHF)

구분		금액
출원	하나의 디자인	200
	동일한 분야의 각 추가 디자인	100
	하나의 출원에 6개 이상의 디자인	총 700
발행 수수료(이미지 하나는 기본)		20
갱신 수수료는 기본 출원 수수료와 동일하고 보호기간 만료 후 지급할 경우 연체료		50

128)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designs/swiss-applications/schedule-of-fees.html>

## 2.3. 상표

### 가. 보호대상<sup>129)</sup>

상표란 다른 사업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기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표는 단어, 문자, 숫자, 비유적 표현, 3차원 모양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 질 수 있다(상표법 제1조).

다만, 공개 도메인에 있는 표지판(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로 확립되어 있는 상표는 제외), 상품 자체 또는 제품의 모양 그 자체이거나 기술적으로 그런 모양일 수 밖에 없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표, 공공 정책, 도덕성 또는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상표 등은 제외한다(제2조).

### 나. 등록요건<sup>130)</sup>

상표는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된 문자, 단어, 그림, 3차원적 도형을 포함하는 도형, 또는 그 조합으로, 표장 소유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다.

스위스에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첫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상표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셋째, 상표가 법·질서·도덕성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한국의 상표법과 크게 차이는 없다. 스위스 연방 상표법(Markenschutzgesetz) 제2조는 상표등록 출원이 제외되는 절대적 배제 조건 4가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제1항 오랜 기간 동안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로 사용돼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 공유재산(Gemeingut: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 또는 표식), 제2항 상품의 모양 또는 포장에 기술적으로 요구되는 형태, 제3항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식, 제4항 법·질서·도덕성에 위반되는 표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4가지에 포함이 되면 이미 출원 단계에서 담당기관인 스위스 연방 지식재산청의 심사에 의해 제외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상표 출원

상표는 보호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모두 충족하기만 하면 등록가능하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는 올바르게 분류되어야 한다.

129) 국내외지식재산법제도 연구(상표법), 2018, 38쪽

130)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trade-marks/before-you-apply/requirements-for-protection.html>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8/globalBbsDataView.do?setIdx=246&dataIdx=184048>

스위스는 공용어가 여러 개이므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3개의 언어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상표는 다른 회사 이름 등과 충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표를 등록하기 전에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2) 출원심사 및 등록

상표 출원을 신청하면 형식적인 요건 및 실질적인 요건을 검토한다. 간단한 상표의 경우 수수료 및 클래스 비용 등을 제출한 후 6 영업일 이내에 검토되고, 일반적으로 수수료 및 클래스 비용 등을 제출한 후 5개월 이내에 검토된다.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

IPI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하며, 상품 및 서비스가 올바르게 분류되지 않았거나 상표 표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상표가 고유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IGE에서는 신청하려는 상표권의 상징과 비슷한 것이 이미 다른 회사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상표권 등록 전에 IGE나 다른 전문업체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IGE에 등록하면 스위스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갱신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해야하며, 만료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 2) 상표권의 불사용 취소

등록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권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사용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실시권을 허여 받은 실시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3) 상표권 실시계약 및 허가

상표권자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권이 IPI에 설정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등록해야만 한다.

**마. 심판제도**

출원상표가 최종 거절결정 된 경우, 출원인은 지식재산청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바. 비용<sup>131)</sup>**

(단위: CHF)

구분		금액
출원	신고료(10년 보호, 연장가능)	550
	네 번째 클래스부터	100
	신속한 심사 수수료	400
	이의 제기 수수료	800
	취소 수수료	800
갱신	갱신수수료(10년, 무기한 연장 가능)	700
	추가 요금(기한 후 6개월 내 제출)	50
	추가 처리 수수료	100

**2.4. 저작권****가. 보호대상**

1) 문학, 과학 및 기타 언어 작품, 2) 뮤지컬 작품 및 기타 음향 작품, 3) 예술 작품, 특히 회화, 조각 및 그래픽 작품, 4)도면, 계획, 지도 또는 입체 표현과 같은 과학 또는 기술 콘텐츠, 5) 건축 구조 등 관련 작품, 6) 응용 예술작품, 7) 사진, 촬영 및 기타 시각 또는 시청각 작품, 8) 안무 작업 및 무언극 등을 저작권으로 보아 보호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다만, 법, 조례 국제조약 등의 공식 제정 및 지불 방법,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발행한 의사결정, 의사록 및 보고서, 특허 사양 및 공시 특허 출원 등에 대하여는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sup>132)</sup>**

저작권의 내용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명칭을 부여할 권리, 자신이 저작자임을 나타낼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131)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trade-marks/national-applications/costs-and-fees.html>

132) 한-베 통상연계형 경험사업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강화, 38쪽

저작권자는 작품의 사본 만들기 등 작품을 재현할 수 있는 권리, 작품을 판매, 제공, 복제할 수 있는 권리,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대여권, 사용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경우 저작권은 저자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구별성이 크게 없는 3차원 개체의 사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진의 경우에는 제작된 후 50년간 보호한다. 다른 모든 작품의 경우 저자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한다. 둘 이상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 저작권자가 죽은 날로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작자 미상의 경우 그 작품은 출판 또는 게시된 날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다만, 저작권자가 드러난 경우 저작권자의 사망 후 기간을 계산한다. 위 모든 계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부터 계산한다(제29조~ 제32조).

#### 라. 등록요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 없이 만든 순간부터 저절로 보호된다. 이에 저작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작권자는 증인을 부를 수 있으며,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특정 시점에 해당 업무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 또한 The Swiss Copyright Act (CopA)는 평소 저자를 추정하여 보호한다.

## 2.5 기타

#### 가. Topographies<sup>133)</sup>

1993년부터 반도체 분야의 3차원 구조를 토포그래피로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별도의 IP 권리로, 정확한 요구 사항과 보호 기간은 토포그래피법에 명시되어 있다. 반도체 토포그래피는 IPI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서류가 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 토포그래피로 등록된다.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다.

#### 나. 지리적 표시

스위스는 상표법상 보호되는 상표의 종류로 지리적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에 관한 등록 증명서의 경우에는 허여일로부터 시작하여 무한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133) <https://www.ige.ch/en/protecting-your-ip/topographies.html>

### 3.1. 사법구제

#### 가. 법원조직<sup>135)</sup>

스위스의 법원조직은 연방대법원과 하급심인 주법원(州法院)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사법사항은 주법원에서 결정된다. 연방법원은 각주 지방법원의 최종심 또는 연방하급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 및 법률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할 뿐이며, 연방법원이 사법기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원으로는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연방대법원과 연방형사법원 및 연방행정법원이 있다. 연방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위 조직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는 38명의 연방대법관과 31명의 보조법관으로 구성되었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정부 결정 및 법령에 대한 국가 제소를 판결하고, 민사 및 형사사항에 대한 항소를 하며, 직접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방 대 주정부 또는 주정부 대 주정부 간의 분쟁에 대한 유일한 판결기관이다. 연방형사법원은 2000년 3월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어 2004년 4월 개원하였으며, 연방법에 따르는 모든 형사사건의 1심법원이 된다. 연방행정법원은 형사법원과 같이 2000년 법원개혁에 관한 국민투표 통과로 설치되었고 2007년 개원하였다.

또한 스위스는 2012년 1월부터는 연방 특허 법원을 설치하였으며, 특허 무효, 특허 침해, 실시권 허락과 관련된 소송은 이 스위스 연방 특허법원에서 전속적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 스위스 연방 특허법원의 재판부는 세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1명 이상의 기술 판사와 1명 이상의 법률 판사로 이루어져 있다. 법의 해석이나 적용의 법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인 경우 특허 법원장은 특별히 5명 또는 7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 단, 특허계약 및 특허양도와 관련된 소송은 과거와 같이 스위스 각 주에 하나씩 위치하는 연방법원에서도 다룰 수 있게 되어 있다.

#### 나. 대응절차

권리자는 사용하고 있는 대상품이 지식재산권의 침해임을 인식시키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다.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 상대방은 고의를 입증함에 유효할 수 있다.

경고장 발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불법적으로 제조된 상품에 대한 금지, 중지, 가처분, 판매, 압수 처분 등이 있으며, 더불어 판결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4)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유럽연합-2012년판 238pg~241pg

135)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H](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CH)

이해관계자는 하나 이상의 소송에 있어서 침해 물품과 관련하여 비침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특허 무효 소송도 신청할 수 있다. 무효 청구와 관련하여 부분 무효도 청구 가능하다. 특허권자의 실시권 허여가 스위스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자는 불실시로 인한 1심의 강제 실시 허가일자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특허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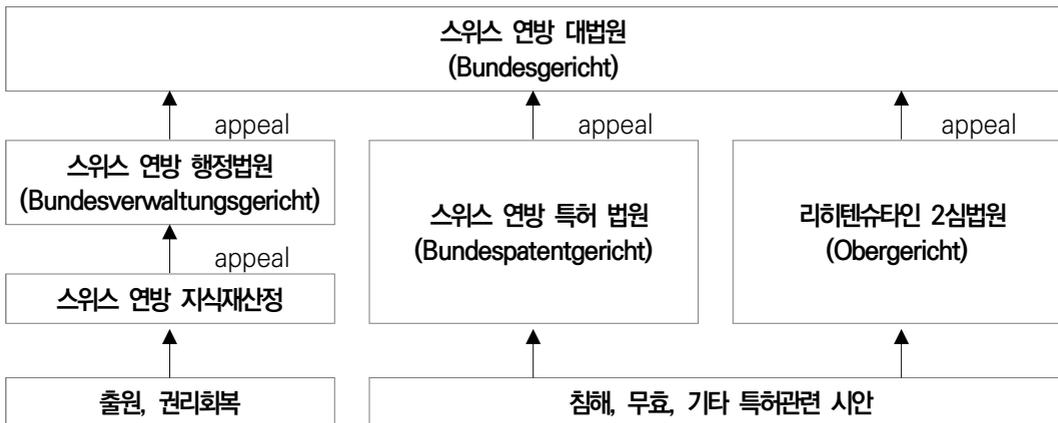
### 1) 예비심리

취리히 상업재판소(Zurich Commercial Court)는 예비 심리로 특별 재판을 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반소장 또는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에 법적 대표자들(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한 명 이상의 대표들)을 심리 초청한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을 위해 예비적인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한다.

재판장의 제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송 제기를 명령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예비 심리를 원하지 않음을 법원에 고지할 수 있다.

### 2) 항소

항소는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연방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기술쟁점에 대하여 재심사하거나 검토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또는 사실관계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사건을 하급 법원에 환송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도록하여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림] 스위스 법원 구조

### 3.2. 행정구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스위스는 행정적 보호로서 세관에 의한 수출입 통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스위스 세관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의심이 있는 상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관을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의심이 가는 상품에 대한 조사 및 관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3.3. 형사구제(특허법 제81조 ~ 제86조 등)

특허권자가 손해를 본 경우, 고의로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 법원에서 추가적인 형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피고가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원은 무효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66조에 명시된 행위를 고의로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II. 스페인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1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2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36



## 1.1. 개요

스페인인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반도체배치설계, 식품품종, 영업비밀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스페인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스페인 특허 및 상표 사무소(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SPTO'라고 함)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매번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스페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문성이 있는 상업법원(the Commercial Court)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마드리드, 발렌시아 또는 바르셀로나 등에 설치되어 있다.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소송의 피고는 당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침해소송의 반소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페인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식품품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디자인권 침해 제외).

스페인이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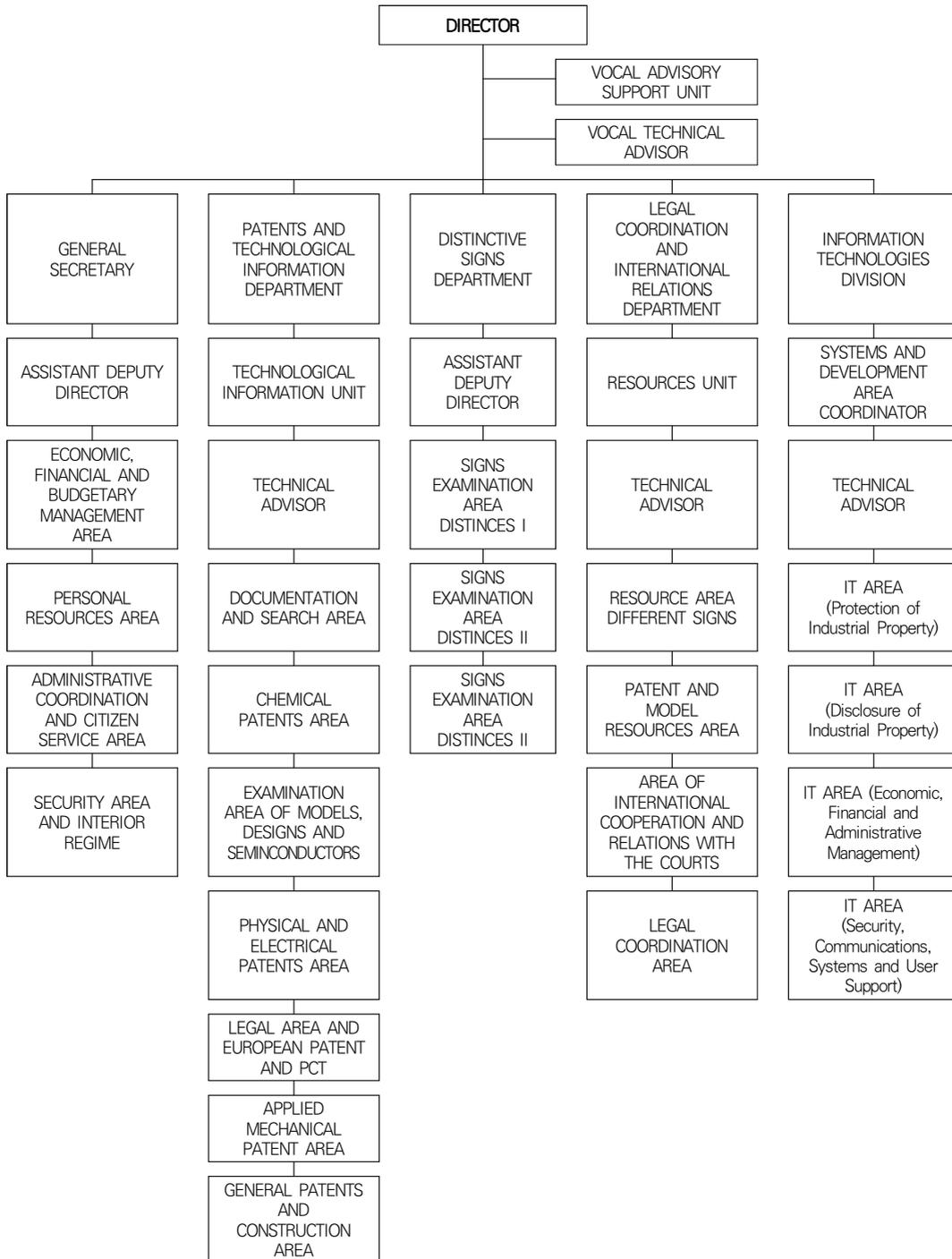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9. 11. 16.)	가입	가입	가입 (1995. 12. 1.)	가입	가입

한편,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스페인 내 특허 및 상표 출원 및 심사는 스페인의 산업관광통상부 산하의 스페인 특허 및 상표 사무소[SPTO, OEPM이라고 약칭하기도 함(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에서 관장한다.

XII. 스페인(Spain)



[그림] 스페인 OEPM 조직도<sup>136)</sup>

136) [http://www.oepm.es/es/sobre\\_oepm/estructura\\_organizativa/](http://www.oepm.es/es/sobre_oepm/estructura_organizativa/)

스위스(Switzerland)

11

스페인(Spain)

12

슬로바키아(Slovakia)

13

영국(England)

14

오스트리아(Austria)

15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37)</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4,416	225	92,174	8,979	21,531	532
2015	4,321	221	95,810	8,050	20,771	652
2016	4,307	177	94,591	8,416	21,782	785
2017	3,844	176	93,840	9,279	25,316	754
2018	3,307	149	95,692	10,126	21,945	634

137)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ES](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ES)

## 2.1. 특허 및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이라면 스페인에서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정보의 소개 방법,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고, 의학발명, 식물종 동물종 역시 특허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다른 나라 특허제도와 유사하다. 스페인 특허법은 명시적으로 인간복제, 인간의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적 정체성의 변경절차, 산업적 목적의 인간배아의 이용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 1)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자

특허발명의 발명자는 특허권을 등록 받을 수 있다. 타인으로부터 발명을 양도받은 사람, 타인에게 위탁 또는 고용계약을 통해서 발명을 하도록 한 사람은 특허권자가 될 수 있다.

#### 2) 대리인

대리인에 의한 출원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 출원

스페인 특허 출원의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이다. 다른 언어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출원일을 얻으려면 스페인의 특허 출원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출원인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특허 부여 요청;
- 스페인어로 된 발명의 설명, 주장, 요약 및 도면 (필요한 경우)
- 접수비, 선행 기술 조사비 및 교부금

## 2) 선행기술 검색 요청 및 심사 요청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 기술 검색을 요청해야하며 특허 출원 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심사 신청은 선행 기술 조사 보고서 발간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

## 3) 공지에외주장 제도

1928. 11. 28.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전시회 협약 조건에 속하는 공식적인 국제 전시회에서 출원인이 발명을 공개한 경우 또는 발명이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공개 후 6개월 이내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신규성 배제의 예외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 4) 소요시간

스페인에서 특허 출원부터 승인까지 평균 처리 시간은 케이스 세부 사항에 따라 다르지만, 약 21개월 정도 소요된다.

## 5) 특허심사 하이웨이

스페인과 한국을 포함한 27개국 특허청은 2014년부터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협약을 통해,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다.

- ①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출원 포함)
- ②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개 이상 존재할 것
- ③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할 것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SPTO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 EPO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 모두 최장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등록 후 3 년이 지나면 매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2) 특허의 보호범위

스페인 국내법에 따라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는 스페인 내에서만 보호가능하다. EPO를 통해 등록된 특허는 스페인 내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특허권 침해의 경우 스페인법을 적용하고, 스페인 법원의 판결을 통한 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인용은 스페인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 3) 특허 침해

특허권자 또는 배타적 실시권자는 동의 없이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가) 직접 침해

- 물건의 발명 : 특허의 대상인 제품을 제조, 판매 제안,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하거나, 제조, 판매 제안,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해 제품을 수입 또는 소유하는 경우
- 방법의 발명 : 특허의 대상인 프로세스를 사용하거나 제 3자가 특허 소유자의 동의없이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을 알고있는 동안 사용을 제공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 : 특허의 대상인 공정을 통해 직접 획득 한 제품을 판매 제안, 시장에 출시 또는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 중 하나를 위해 그러한 제품을 수입 또는 소유하는 행위

## 나) 간접 침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특허 발명의 핵심 부분에 대한 수단을, 특허침해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양도 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 마. 심판제도 및 등록 이후 유효성에 대한 다툼

SPTO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SPTO 항소부에 재심 항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항소는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심 항소의 결정(거부 간주 포함)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법원은 특허 부여 절차에서 SPTO가 고려했던 특허성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행정법원의 소제기로 인하여 SPTO 결정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스페인 특허법은 행정법원 판단에 의해 등록된 특허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판결한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동일한 무효 사유에 근거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 특허권을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는 누구나 상업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 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EPO를 통한 등록 특허권의 경우에도 1개국 1특허제도의 특성에 따라 각 나라 법에 따라 그 나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스페인 상업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 바. 비용

스페인 SPTO를 통한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관납료)은 비전자 출원은 EUR 100.38, 전자 출원은 EUR 85.32이고, 실질심사 비용은 비전자는 EUR 389.77, 전자는 EUR 331.30 이다. 기타 상세 비용은 SPT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38)</sup>

## 2.2. 디자인

### 가. 개요

스페인은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와 유사하게 SPTO를 통한 출원등록과 유럽공동체디자인 제도를 통한 등록 공동체디자인(RCD) 출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RCD의 경우 이의신청제도가 없다.

미등록 디자인의 경우 스페인 법률이 아닌 EU의 규정에 따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UCD)으로 공개된 날로부터 3년의 단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나. 보호대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이란, 특히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 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을 말한다.

복잡한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에 적용되거나 통합된 디자인은 해당 부품이 복잡한 제품에 통합된 후 정상적인 사용 중에 계속 보이는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여기에서 '정상 사용'이란 유지 보수, 서비스 또는 수리 작업을 제외한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의미한다.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거나, 공서양속 또는 도덕에 반하는 제품의 외관 특징은 보호되지 않는다.

138) [https://www.oepm.es/export/sites/oepm/comun/documentos\\_relacionados/Tasas/2020\\_PATENTES.pdf](https://www.oepm.es/export/sites/oepm/comun/documentos_relacionados/Tasas/2020_PATENTES.pdf)

## 다. 등록요건

상기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디자인으로 새롭고 개성있는 디자인은 등록 가능하다. 디자인 등록출원권은 디자인의 저자에게 있다. 저자의 고용인, 또는 서비스관계에서 창작을 위임한 경우 출원권이 이들에 속한다.

## 라.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디자인 출원을 위해서는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은, 보호가 필요한 설계를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충분한 품질과 해상도가 있어야 하며, 단일 디자인의 모든 보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각적 고지 사항은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디자인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 2) 심사

등록 절차 중에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출원과정에서 형식적 요건에 반하는지, 공서 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SPTO의 공식 결정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다.

### 3) 공고 및 이의 신청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지면 스페인 산업 재산 공식 게시관(BOPI)에 공고게시가 된다. 공고 게시된 후 2개월 간에는 등록 이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누구든지 디자인권의 등록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SPTO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SPTO가 이의제기를 인정하는 경우, 이의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는 디자인 소유자에게 전달되며, 디자인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SPTO는 소유자가 디자인의 그래픽 표현을 수정하거나 충돌하는 요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그러한 수정 또는 삭제가 처음의 디자인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SPTO는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자의 이의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발표 후 1개월 내 항소 할 수 있다.

#### 4) 소요시간

스페인에서 디자인 등록은 짧게는 며칠 내로 완료되기도 하고, 보통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마.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등록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매년 5년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25 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다. 한편 유럽공동체디자인 제도에 따른 미등록 디자인권(UCD)은 공개일로부터 3년까지 보호된다.

#### 2) 효력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등록된 디자인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 모든 디자인으로 확장된다. 보호 범위를 정하기 위해 디자인을 만들 당시의 저자의 의사를 고려한다.

디자인 등록은 소유자에게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 3 자의 동의 없는 실시를 금지한다. 실시란 디자인을 포함하는 제품의 제조, 공급, 마케팅, 수입 및 수출 또는 사용과 상기 목적을 위한 해당 제품의 보관을 말한다.

UCD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디자인 창작자가 UCD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UCD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바. 유효성에 대한 다툼

SPTO를 통한 디자인권 등록 절차의 경우 이의는 SPTO에 제기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 조치는 법적 이해 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시작될 수 있고, 마드리드, 발렌시아 또는 바르셀로나 등에 있는 관할 스페인 상업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디자인 출원에 대한 방식 심사에 대해서는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등록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EUIPO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무효심판에 패소한 자는 항고심판을 제기하여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 사. 비용

스페인 SPTO를 통한 디자인 등록 비용(관납료)은 비전자는 EUR 76.43, 전자는 EUR 64.96이다. 기타 상세 비용은 SPT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39)</sup>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를 의미한다. 상표는 모든 기호, 특히 사람의 이름, 그림, 문자, 그림, 색상, 제품 또는 포장의 모양 또는 소리를 포함한 단어로 해당 기호가 적절하다면 상표를 구성될 수 있고,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019. 1. 14. 발효된 스페인 상표법 개정안에 따라 상표 개념에서 그래픽 표현 요구사항을 제거하여 냄새 표시와 같은 “비전통적인 개념” 역시 상표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 나. 등록요건

스페인 상표법에는 상표 등록의 절대적 거절이유(제2장)와 상대적 거절이유(제3장)를 나열하고 있다. 절대적 거절이유는 지정상품이나 다른 기타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절 이유(주로 식별력)를 말하고, 상대적 거절 이유란 지정상품이나 다른 제3자의 선행 상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절 이유(선행상표 존재 여부)를 말한다.

이러한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는 유럽공동체상표(EUTM) 요건, 우리 상표법 제33조 및 34조에 규정된 등록요건과 다르지 않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및 등록 절차

상표출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SPTO는 형식적 심사를 거친 후 산업재산권 공보에 신청서를 게시한다. 제3자는 유효한 사전 권리에 근거하여 2개월의 기간 내에 SPT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1개월 내에 이의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sup>139)</sup> [https://www.oepm.es/export/sites/oepm/comun/documentos\\_relacionados/Tasas/2020\\_DISENOS.pdf](https://www.oepm.es/export/sites/oepm/comun/documentos_relacionados/Tasas/2020_DISENOS.pdf)

SPTO는 동시에 상표출원에 절대적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의신청과 절대적 거부 사유를 종합하여 등록 승인 또는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된다.

### 2) 출원과정에 대한 불복, 취소 또는 무효 심판

SPTO 심사관이 내린 결정은 공고 된지 한 달 내에 SPTO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정된 기간(2개월) 내에 행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스페인 내에서 상표권자 혹은 실시권자에 의해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등의 경우, 상표권 취소 사유 또는 무효 사유를 충족하면 제3자는 상표권의 등록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현재는 취소 신청 또는 무효 신청을 법원에 하여야 하나, 2023. 1. 14.부터는 SPTO가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다만, 이 경우에도 침해 절차에서 반소로 제기되는 취소 또는 무효 청구는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

### 3) 소요시간

스페인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8~1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보호범위

상표권은 등록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상표 출원 공표일로부터 임시보호가 부여되어 출원공개일과 등록 결정일 사이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 2) 등록상표의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에 갱신 출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등록으로 인한 효력

상표의 소유자는 스페인 내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등록 상표권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손해의 보상,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침해 제품의 폐기 등을 법원에 구할 수 있다.

#### 4) 양도 및 사용권

##### 가) 양도 등록

- 유럽공동체상표권은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회원국 단위로는 양도할 수 없다.
- 양도는 공동체 상표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양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나) 사용권 등록

- 사용권은 양도와 달리 특정 회원국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고, 상품 또는 용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사용권 역시 등록을 해야만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마. 비용

스페인 SPTO를 통한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관납료)은 1건 1개류 상표 기준 비전자 출원은 EUR 147.49, 전자 출원은 EUR 125.36 이다. 기타 상세 비용은 SPT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40)</sup>

## 2.4.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되는 권리다. 스페인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는 어문, 음악, 연극, 영화 등 시창각 작품, 예술적 작품, 건축 설계, 지형/지리 등 과학과 관련된 그래픽(과학적 창작물), 사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140) [https://www.oepm.es/export/sites/oepm/comun/documentos\\_relacionados/Tasas/2020\\_SIGNOS.pdf](https://www.oepm.es/export/sites/oepm/comun/documentos_relacionados/Tasas/2020_SIGNOS.pdf)

그 외 스페인 저작권법은 번역 및 각색, 개정, 업데이트 및 주석, 개요 요약 및 발췌, 음악 편곡,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저작물의 변형 등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도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 나. 저작권자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다. 등록요건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에서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 라.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익명 저작물은 신원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면 발표일로부터 70년 동안 지속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공동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로부터 70년간 보호된다.

### 2) 효력

저작권자는 스페인 내에서 저작물의 a) 복제, b) 배포 c) 공공 전달(공연, 전시, 방송또는 신호의 전송 등 e)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독점적으로 할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진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상기의 행위 또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상기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 3)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

다음의 행위 등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법 또는 행정 절차, 특정 조건하의 사적 사용, 시각장애인에 제공하기 위한 복제
- 비평, 리뷰를 위한 복제

- 공개적으로 발표한 연설 등을 보도를 위하여 복제
- 시사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 복제
- 공공 도로에 있는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복제, 배포, 전달
- 박물관, 도서관, 기록보관소 등에 의한 비영리 목적의 복제
- 공공행정, 종교의식에서 공연자가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음악저작물의 공연
- 패러디 등 풍자적 개작

4) 사용권, 양도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제3자에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특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은 서면을 통해 하여야 한다. 저자의 양도로 인한 대가는 양수인과 합의하에 저작권으로 인한 사용 수입에 비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 보상을 대가로 정할 수 있다. 일시적 보상으로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저자의 보수와 양수인이 얻은 혜택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권리 이전 후 10년 내에 양수인의 계약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공정한 보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 저작인격권**

스페인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저자에게 부여한다. 저작인격권은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

- 작품의 공개 여부 형식을 결정
- 저작물이 저자의 이름, 가명 혹은 익명으로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
- 작업의 무결성에 대한 존중을 요구
- 제3자가 취득한 권리가 보장되고 문화적 이익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수정
- 지적 도덕적 신념의 변화로 인한 작품의 유통을 철회
- 공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저작물의 고유하거나 희귀한 사본에 접근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 2.5. 집적회로배치설계(Layout-design of Integrated Circuits)의 보호<sup>141)</sup>

스페인 법률은 반도체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하여 1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한다. 보호 대상은 집적회로 그 자체가 아니라 집적회로의 물리적 배열이다. 반도체 배치설계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치설계가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 여야하며 반도체 산업에서 평범하지 않아야 한다(독창성과 창의성).

## 2.6. 식물 품종 보호(Plant Varieties Protection)

보호 대상이 되는 식물품종은 반복된 번식 과정 후에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는 특정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른 그룹과 구별할 수 있는 식물 그룹이다.

스페인 형법에는 식물 품종의 위조, 식물 품종의 무단 번식 등 해당 품종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벌금, 특별 실격 및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사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2.7. 영업비밀(Trade Secrets)<sup>142)</sup>

스페인 내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법에 의해 보호된다. 영업비밀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 일반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서클 내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 할 수 없어야 한다.
-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소유자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이 영업비밀이 포함된 매체 또는 영업비밀을 추론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무단 접근, 도용 또는 복사에 의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정직한

141) <https://www.guidetobusinessinspain.com/en/6-propiedad-industrial-e-intelectual/6-6-topografias-de-productos-semiconductores/>

142) <https://www.guidetobusinessinspain.com/en/6-propiedad-industrial-e-intelectual/6-9-secretos-e-mpresariales/>

상업적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행위를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영업비밀의 침해로 구성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되었거나 기밀유지 또는 이와 유사한 의무를 위반하여 취득된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역시 침해를 구성한다.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는 제품의 생산, 제공, 시장 출시를 금지를 구할 수 있다.

## 2.8. 지리적 표시<sup>143)</sup>

### 가. 보호대상

EU 품질 정책에 따라 특정제품이 특정 지리적 원산지 및 명성(특정 품질 또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나. 지리적 표시의 효력

지리적 표시는 등록된 명칭의 오용 또는 모용으로부터 권리자의 상품을 보호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보증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 지역의 모든 생산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집단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143)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running-business/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index_en.htm) (EU)

### 3.1. 민사적 구제

#### 가. 스페인의 법원 체계

2017년 4월 새로운 특허법이 발효됨에 따라 특허 침해 소송을 처리 할 수 있는 전속 관할권은 지적 재산 분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상업법원(the Commercial Court)에 있다(현재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발렌시아, 그라나다, 라스팔마스, 라코루냐, 빌바오에 있음).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도 상업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 항소는 항소법원에 하며 항소법원 내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존재한다.

#### 나. 민사절차를 통한 침해 구제

##### 1) 가처분

스페인에서의 가처분은, 특허권자 또는 독점실시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은 침해가 임박했음을 입증하면 침해 전에도 가능하다. 가처분 결정을 하기 위하여 스페인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긴급성, 승소가능성 및 특허의 권리 활용 여부이다.

스페인에서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침해의 본안 소송과 함께 청구되며, 독립적인 절차로 진행된다. 본안 소송이 먼저 청구되는 경우, 가처분은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에 근거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 2) 본안 소송

특허권을 기준으로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역시 이와 유사한 구제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및 형사 절차 모두에 있어서 법원은, SPTO의 전문가 협력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의 전문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 a)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금지 명령
- b) 손해배상
- c) 침해를 통해 생산된 물품 및 이러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방법에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생산 수단의 압수 또는 폐기
- d) 압수된 물품과 생산 수단의 양도

- e) 기타 침해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
- f) 침해 판결의 공표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가상의 로열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이익, 또는 침해자와 경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얻었을 수 있는 특허권자의 이익에 따라 산정된다.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하여 침해소송이 제기된 경우 피고는 반소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등록무효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3.2. 형사적 구제

스페인 형법에는 특허, 상표, 저작권, 식품품종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과 법인에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III. 슬로바키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4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4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51



## 1.1. 개요

슬로바키아는 산업재산권청에서 관리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문화부에서 관리하는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을 두어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4년이고 최대 10년까지 연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 승인 절차를 거친 모든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해 추가 보호 인증서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 인해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가능하다.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기호,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의 모양 또는 포장의 모양 등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러한 표장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 보호될 수 있고,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는 저작자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의 독특한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슬로바키아의 저작권의 경제적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슬로바키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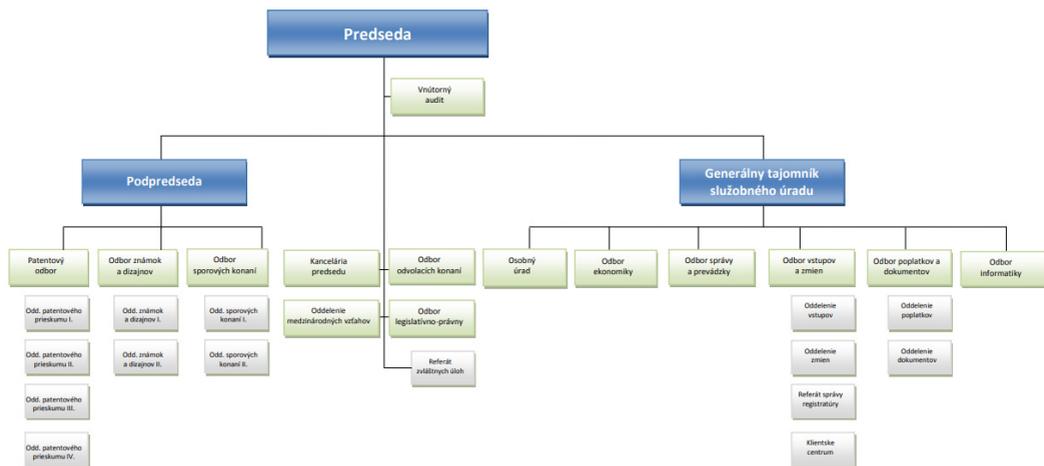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3. 1. 1.)	가입	가입	가입 (1997. 9. 13.)	가입	가입

슬로바키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슬로바키아 산업재산권청(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Slovak republic)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관이다.

슬로바키아의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Banská Bystrica의 유일한 관할 지방 법원에서 독점적 관할권이 있다.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및 분쟁의 1심 법원은 Bratislava I 지방 법원, Banská Bystrica 지방 법원 및 Košice I 지방 법원 세 개 법원이다.<sup>144)</sup>



[그림] 슬로바키아 산업재산권청 조직도<sup>145)</sup>

144) <https://www.indprop.gov.sk/?news&clanok=specialization-of-courts-in-the-intellectual-property-field>  
 145) <https://www.indprop.gov.sk/?materialy>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46)</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38	23	10,705	5,249	585	101
2015	277	28	10,640	5,117	351	57
2016	263	15	10,630	4,710	391	224
2017	224	23	10,004	5,298	609	136
2018	267	14	9,642	5,075	479	58

11  
스위스(Switzerland)12  
스페인(Spain)13  
슬로바키아(Slovakia)14  
영국(England)15  
오스트리아(Austria)146)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K](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SK)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새로운 제품, 장치 및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의약품, 미생물뿐만 아니라 생명 공학 공정 및 그로 인한 제품도 특허가 가능하다. 과학 이론, 컴퓨터 프로그램, 식물 또는 동물 품종, 새로운 방법 인간 복제 및 인간 배아를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간 및 동물 신체 프로세스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새로운 식물 또는 동물 품종, 인체 및 동물 신체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은 추가 보호 인증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슬로바키아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유럽특허도 동일하다.

### 다. 취득절차

슬로바키아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국내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유럽특허청(EPO)에 유럽 특허 출원을 하여 슬로바키아를 지정하는 방법, 또는 PCT 출원에서 슬로바키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슬로바키아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발명의 명칭, 출원일, 우선일, 명세서 등이 포함된 출원서를 제출하여, 방식심사, 실제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게 된다. 실질심사 청구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철회할 수 없다. 출원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출원인이 행정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특허가 부여된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슬로바키아 산업재산권청의 양식에 따라 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출원 전에 슬로바키아에서 동일한 주제로 실용신안 출원을 한 경우, 출원과 함께 출원일을 부여하거나 이 실용신안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요청할 수 있다.

## 라. 특허권의 효력

슬로바키아의 경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유럽 특허의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0년까지이고, 유럽특허는 회원국 국내 특허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특허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법을 적용된다.

슬로바키아 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특허와 유럽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특허의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슬로바키아 내의 법원 판결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sup>147)</sup>

## 마. 심판제도

슬로바키아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유럽특허청의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부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 특허권을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는 1개국 1특허 제도의 특성에 따라 슬로바키아 법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바. 비용<sup>148)</sup>

발명 특허의 경우, 출원비용은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3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이다. 특허출원에 대한 전체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청구항 10개까지는 €116, 추가 청구당 €20이다.

## 사. 추가 보호 인증서<sup>149)</sup>

슬로바키아에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행정 승인 절차를 거친 모든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해 추가 보호 인증서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이 유효한 기본 특허(슬로바키아 특허 또는 슬로바키아로 지정된 유럽특허)에 의해 보호됨
-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을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제로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는 유효한 승인이 부여되었고, 승인된 제품이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으로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는 첫 번째 승인인 경우

147) 최효선 변리사, “유럽지재권 제도 최신동향”, 14쪽

148) 기타 상세 비용은 슬로바키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indprop.gov.sk/swift\\_data/source/pdf/poplatky\\_fees/administrative\\_fees\\_P.pdf](https://www.indprop.gov.sk/swift_data/source/pdf/poplatky_fees/administrative_fees_P.pdf)).

149) <https://www.indprop.gov.sk/?supplementary-protection-certificates>

추가 보호 인증서의 소유자는 기본 특허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 2.2. 실용신안

새롭고, 발명활동의 결과이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있다. 한편, 식물 및 동물 품종,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과정, 진단 방법 및 질병 예방 방법, 화학 물질 생산 방법, 제약 물질의 생산 방법, 물질의 의학적 사용 및 물질의 구성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없다.

실용신안의 등록 절차 등은, 특허에 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4년이고, 3년씩 2회 연장할 수 있다(총 10년).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슬로바키아 디자인법에 의하면 디자인은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 인해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을 의미한다. 제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복잡한 제품을 조립하기 위한 포장, 디자인, 그래픽 기호, 인쇄 기능 또는 부품을 포함하여 산업적으로 또는 수공예로 생산된 모든 재료 품목을 의미하고, 복합 제품이란 교체가 가능하고 제품을 분해, 재조립할 수 있는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의미한다. 보호 범위는 등록부에 입력된 디자인의 이미지에 따라 결정된다.

### 나. 등록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하고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디자인은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인 인상이 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일반 사용자들이 다른 인상을 갖는 경우 독창성이 있다고 한다.

### 다. 취득절차

디자인의 출원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슬로바키아 공화국 산업 재산권 사무소(Švermova 43, 97404 Banská Bystrica)에 제출해야 하고, 출원서에는 출원인에 대한 정보, 본 출원 등록 의사

표시, 제품 또는 부품의 외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디자인 이미지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디자인 출원은 창작자 또는 법적 승계자가 할 수 있다. 창작자가 고용 관계 또는 유사한 관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틀 내에서 디자인을 만든 경우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때까지 디자인 권한이 고용주에게 이전된다. 직원이 디자인을 완성한 경우 고용주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동시에 디자인 이미지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디자인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슬로바키아 디자인 출원은 신청서가 적법하고, 출원이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자인은 등록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슬로바키아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최대 4회 한도로 갱신이 가능하여 최장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마. 비용<sup>150)</sup>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창작자 혹은 공동창작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20, 그 외의 경우에는 €40이다. 디자인 등록 연장을 신청비용은 첫 번째 5년은 €100, 2번째는 €200, 3번째는 €300, 4번째는 €400이다.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슬로바키아 상표권의 보호대상은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기호,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디자인, 문자, 숫자, 상품의 모양 또는 포장의 모양 등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러한 표장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는 것(식별력)이어야 한다.

150) 기타 상세 비용은 슬로바키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indprop.gov.sk/swift\\_data/source/pdf/poplatky\\_fees/administrative\\_fees\\_D.pdf](https://www.indprop.gov.sk/swift_data/source/pdf/poplatky_fees/administrative_fees_D.pdf)).

한편, 생산자,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그 소속의 회원으로부터 비롯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의 경우 단체 표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 나. 등록요건

식별력이 있는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거래 과정에서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목적, 가치, 지리적 원산지 또는 상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시간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로만 구성된 표장,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거나 제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제품의 모양 또는 기타 특성으로만 구성된 표장, 공공 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표장 등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 다. 취득절차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된 상표 출원서를 슬로바키아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에는 표장, 표장에 대한 등록이 요청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표지(국제 분류에 따라 분류된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된 상표가 등록요건을 충족하면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서를 관보에 게시해야 한다. 관보에 출원서가 공표된 후 등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등기부 등록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관청은 상표가 등록된다.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자는 상표가 등록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상표 소유자는 상표와 함께 기호 ®를 사용할 수 있다.

## 라. 상표권의 효력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에 만료된다, 존속 기간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는 상표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양도될 수 있는데 상표의 이전은 계약을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표에 대한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청은 질권 채권자 또는 질권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에 대한 유치권의 설정 또는 만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마. 심판제도**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산업재산권청에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등록상표를 법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불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역시 가능하다.

**바. 비용<sup>151)</sup>**

(단위: EUR)

구분		비용
출원	3개류까지 / 건당	166
	3개류까지 집합 상표 / 건당	332
	3개류 초과하는 상표/집단상표 / 건당	20
심판	상표 취소 또는 무효 청구	100
	이의신청	50

**2.5. 저작권****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의 독특한 결과물로서 그 형태, 내용, 품질, 목적, 표현의 형태에 관계없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학, 예술 또는 과학 분야의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단, 표현, 설명, 설명, 묘사 또는 작업에 통합된 아이디어, 방식, 시스템, 방법, 개념, 원리, 발견 또는 정보, 초안을 포함한 입법문, 공공 기관의 결정 또는 법원 결정, 국가 상징, 지방 자치 단체 상징, 자치 지역 상징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슬로바키아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모습대로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권리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권리는 양도, 포기할 수 없다.

151) 기타 상세 비용은 슬로바키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indprop.gov.sk/swift\\_data/source/pdf/poplatky\\_fees/administrative\\_fees\\_OZ.pdf](https://www.indprop.gov.sk/swift_data/source/pdf/poplatky_fees/administrative_fees_OZ.pdf)).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는 작품 창작의 순간부터 저작자의 일생 및 그의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된다.

작품이 공동 저작물로 제작되는 경우, 작품을 위해 제작된 감독, 각본 작가, 대사 작가, 음악 작가 중 마지막 생존자의 생애 및 그의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된다. 가명 저작물 및 익명 저작물의 경우 합법적으로 공개된 후 70년 간 경제적 권리가 유지된다.

### 라. 등록요건

슬로바키아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 2.6 영업비밀

슬로바키아는 영업비밀, 불공정거래에 관한 다른 법령을 두고 있지 않고, 영업비밀 및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해 상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비공지성, 상업적 가치,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 2.7.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

제품의 원산지는 특정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고유한 자연 및 인적 요인을 가진 특정 지리적 환경과 정의된 특정 장소,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 발생한다.

제품의 지리적 표시는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을 가진 특정 장소, 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래한 농산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장소, 지역 또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의 이름이다.

원산지 지정 신청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 가공 및 준비된 제품에 대해 개인 또는 법인이 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 원산지 지정 등록증 소지자와 제품 원산지 지정 등록 사용자만이 등록된 원산지 지정을 사용할 수 있고, 등록증 소지자는 지정 상품이 특정 지리적 환경에 의한 특성이나 품질이 부족하거나 농산물 또는 식품의 사양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 사용자의 원산지 지정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 3.1. 사법구제

슬로바키아의 일반 법원은 지방 법원, 지역 법원, 대법원의 3단계로 나뉜다. 행정 사건 및 특정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지방 법원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며 지역 법원은 항소 법원의 역할을 한다.

슬로바키아의 산업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은 Banská Bystrica의 유일한 관할 지방 법원에서 독점적 관할권이 있다.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및 분쟁의 1심 법원은 Bratislava I 지방 법원, Banská Bystrica 지방 법원 및 Košice I 지방 법원 세개 법원이다.

### 3.2. 형사구제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법상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침해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IV. 영국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5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5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75



# 01

## 지식재산제도 개요

### 1.1. 개요

영국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으로 지식재산권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영국은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법률 및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특허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인정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디자인은 신규성과 개별적 특징을 갖춘 경우 보호 가능하며 등록디자인의 권리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만든 날로부터 15년이다. 영국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로,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존속 기간은 무한정 갱신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저작권법에 따라 어문, 공연, 음악적 작품, 예술적 작품, 음원, 영화, 방송, 출판물의 편집 등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영국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특정 명칭에 대하여 명성(goodwill)을 취득한 미등록 상표에 대한 사칭통용(passing off)을 규제하는 '부정거래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

스위스(Switzerland)

11

스페인(Spain)

12

슬로바키아(Slovakia)

13

영국(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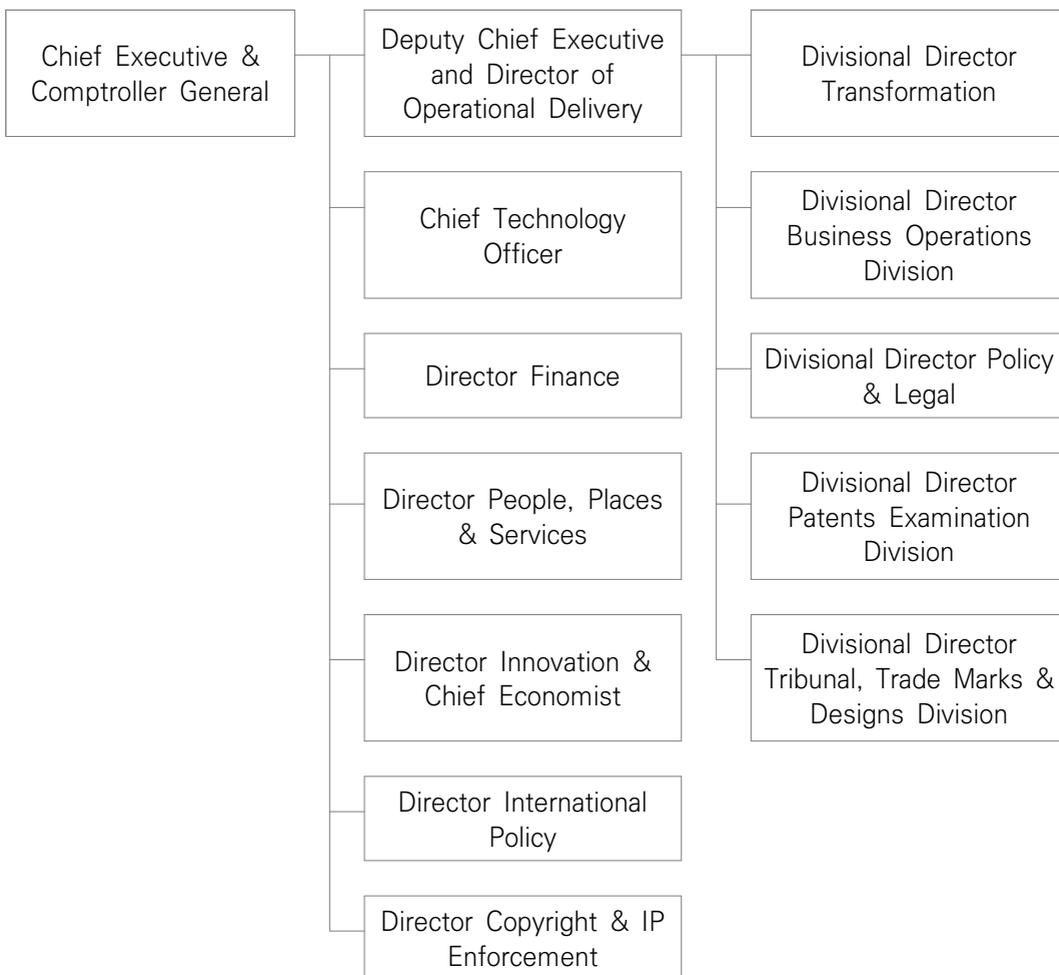
14

오스트리아(Austria)

15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 UK IPO

영국 내 특허 신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통상산업성(DTI)의 후신인 비즈니스/기업/규제 개혁부(BERR: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산하 기관인 영국 지식재산청(UK-IPO: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영국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림] 영국 특허청 조직도<sup>152)</sup>

15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44241/structure-chart-Nov19.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44241/structure-chart-Nov19.pdf)

영국 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상표에 관한 등록 등의 업무를 하고 한국 특허청과 달리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한다.

영국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www.ipo.gov.uk](http://www.ipo.gov.uk)이며,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열람이 가능한 특허 출원 공보, 디자인, 상표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유럽특허청과 함께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하여 온라인 출원기능을 제공하는 epoline 서비스 역시 제공한다.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53)</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9,922	7,844	132,974	16,611	11,018	184
2015	19,904	7,934	142,360	17,908	12,581	473
2016	19,009	8,183	150,575	27,300	15,166	1,292
2017	18,632	8,771	164,392	43,980	23,364	2,604
2018	18,599	8,076	172,866	58,970	28,910	4,538

15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GB](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GB)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을 포함하여 임의의 종류의 산업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출원으로 취급된다(4.-(1)조).

영국 특허법은 1.-(2)조에 a) 발견, 과학상의 이론, 수학적 방법, b) 문예, 연극(dramatic), 음악 혹은 미술작품 또는 그 외의 미적 창작물, c) 정신 활동, 규칙이나 방법, 게임을 하는 것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 컴퓨터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 d) 정보의 게시는 발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발명의 상업적 이용이 공공의 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허여되지 않으며(1.-(3)조), 수술이나 치료를 통한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 치료법 또는 신체에 대한 진단법에는 발명이 허여되지 않는다(4A조).

### 나. 등록요건

① 신규하며 ② 진보성이 있고 ③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1.-(1)조).

발명이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취급되고, '종래 기술'이란 발명의 우선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서면이나 구두로 사용이나 임의의 다른 방식으로 공공에 이용가능하게 된 모든 기술을 포함한다(2조).

진보성이 있다고 함은 '종래 기술'의 일부를 형성하는 임의의 사항에 관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조).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자

(a) 발명자 또는 (b) 법률의 규정 또는 외국법이나 조약 국제협약 또는 발명 이전에 발명자와 이루어진 임의의 협의에 의하여 영국에서 발명을 한 시점에 발명에 대한 재산권 전체에 대해 권리가 부여된 자 c) 상기의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한 자는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7.-(1)조).

특허 출원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추정(간주)된다(7.-(2)조).

## 2) 대리인

영국에는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제도가 있으나 특허변리사 외에도 사무변호사(Solicitor)나 법정변호사(Barrister)도 특허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

특허변리사가 되려면 이공계 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영국 특허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특허변리사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는 특허변리사의 감독 하에 최소한 2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져야 특허변리사로서 등록할 수 있다.

## 3) 출원

출원인은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명세서를 포함한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씨치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원 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씨치리포트와 함께 특허청 공보를 통해 공개된다.

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Description)', '청구항(Claims)', '요약(Abstract)', '도면(Drawings)'으로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출원 후 12개월 내에는 출원명세서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다.

## 4) 씨치리포트 작성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씨치리포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만약 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경우, 씨치리포트 신청 기한은 영국 출원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중 더 늦은 날이다.

씨치리포트는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으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판단이 이루어진다. 씨치리포트 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특허청은 선행기술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씨치리포트 발행은 씨치리포트 신청 후 4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출원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공개된 지역 및 공개 형태를 불문하고 씨치가 이루어진다. 출원인은 씨치리포트를 보고 인용된 선행문헌을 검토한 다음 출원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발명이 선행문헌을 바탕으로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심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심사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출원이 공개되기 전이라면 출원을 취하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 5) 심사 절차

### 가) 형식적 요건 심사

특허청은 출원수수료 납부 후 1개월 내에 해당 특허출원의 공개를 위해 형식적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지에 대한 방식심사를 완료한다.

### 나) 실제 심사

특허등록 요건인 실제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출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심사청구료와 더불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특허청은 심사청구 요청이 접수된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 등록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1차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제기한 거절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추가 심사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허청은 등록 허여된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송부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에서 심사 및 등록까지는 평균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일로부터 54개월의 기한 내에 해당 출원의 등록 또는 거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다) 심사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써치리포트 요청 시 심사청구도 함께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심사청구 신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출원을 심사하기 때문에, 빠른 심사청구를 통해 공개 이전에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공개 이전에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써치리포트에 인용된 선행문헌을 검토하고 심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없어진다.

또한 발명의 조기 공개를 통해 심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특별히 조기 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기 심사를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조기 심사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심사에 착수하여 8주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 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영국, 미국, 일본의 각 나라 특허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다른 나라에 조기 심사를 신청하여 조기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원인은 조기심사를 청구하면서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6) 불복

심사과정에서 특허의 등록 거절을 통지 받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관(Hearing Officer) 앞에서 직접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다. 심판관은 당해 특허 출원의 심사관과는 관계가 없고 심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심사관이 배정된다.

심판관이 심리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릴 경우 출원인은 고등법원(High Court)의 특허 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허가를 얻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마.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권은 수수료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된다.

특허권 보호기간을 더 청구할 수 있는 추가연장인증(SPC: 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제도가 있다. SPC는 의약 또는 식물보호 생성물로서의 약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허가 절차에 소요된 시간으로 인하여 특허보호 기간에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SPC는 특허 보호 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된다. 해당 의약 또는 식물보호 생성물로서의 약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소요된 행정당국의 허가 절차 기간만큼 해당 특허의 보호기간을 더 청구할 수 있다. SPC 신청에 따른 특허청 요금은 250파운드이다.

## 2) 실시권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 실시권 계약이 체결되면 특허청에 설정신청을 하여 그 실시권 약정을 특허등록부(Register of Patents)에 등재할 수 있다. 실시권은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 독점적(exclusive): 단독 실시권자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단독(sole): 단독 실시권자 및 특허 소유자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비-독점적(non-exclusive): 여러 명의 실시권자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재실시권(sublicense): 실시권자가 타인이나 기업에게 특허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실시권을 설정한다.

### 3) 강제실시권

누구든지 특허권의 허여일자로부터 3년 이후에는 언제라도 특허법 제4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바. 심판제도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특허 등록 후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영국은 특허청 뿐만 아니라 특허 법원에서도 무효심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1심은 영국 특허청, 특허 법원 또는 특허 지방 법원(Patent County Court) 중 한 군데서 열리게 된다. 이때 영국 특허청은 특허청장, 특허 법원과 특허 지방법원은 1명의 전문 판사가 심판관이 된다

#### 사. 비용<sup>154)</sup>

(단위: GBP)

단계	금액	
	온라인제출	우편제출
출원(출원 시 납부)	£60	£90
출원 (출원 후 납부, 2021년 3월 31 일 전 납부)	£60	£90
출원 (출원 후 납부, 2021년 3월 31 일 후 납부)	£75	£112.50
검색	£150 (25청구항 초과 시 £20 추가)	£180 (25청구항 초과 시 £20 추가)
실체심사	£100 (35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10 추가)	£130 (35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10 추가)

- 특허 출원 후 4년째 해에 갱신해야 하며, 그 후 해마다 '마감일'(최초 제출한 달의 말일) 전에 갱신해야 하고, 마감일 이후 6개월까지 갱신할 수 있음.
- 특허권 갱신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함

154) <https://www.gov.uk/patent-your-invention/print>

단계	금액	
	온라인제출	우편제출
갱신 비용	연차	비용
	5년차	£70
	6년차	£90
	7년차	£110
	8년차	£130
	9년차	£150
	10년차	£170
	11년차	£190
	12년차	£220
	13년차	£260
	14년차	£300
	15년차	£360
	16년차	£420
	17년차	£470
	18년차	£520
	19년차	£570
	20년차	£610

## 2.2.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영국 디자인법 등록 디자인(Registered Design)과 미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호한다.

#### 1) 등록디자인(Registered Design)

등록디자인이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형상, 제품에 부착된 장식 또는 이 둘의 조합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아래 디자인은 등록이 될 수 없다.

- 오로지 제품의 기능적인 작용으로만 이루어진 디자인
- 정상 사용시 보이지 않는 복잡한 제품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국가 상징, 국기, 국제적인 인장이 포함된 디자인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 2) 미등록 디자인권(Design Right)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의 무단복제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디자인이 만들어진 날로부터 15년간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다. 단, 미등록 디자인권은 3D 형상에 한해서만 보호가 되며, 카펫 디자인 또는 벽지와 같은 2D 패턴 또는 제품의 표면 장식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

### 나. 등록요건

#### 1) 신규성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어떤 디자인과도 동일해서는 안 된다.

#### 2) 개별적 특징

디자인이 업계의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인상이 이전의 디자인과 달라야 한다.

#### 3)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디자인이 대중에게 최초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록할 수 없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인

디자인의 창작자, 창작자의 고용인, 또는 계약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을 구입한 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해 출원을 할 수 있다.

#### 2) 출원

등록디자인 출원을 하려면, 서식을 작성한 후 출원 수수료와 디자인도면(또는 사진)을 동봉하여 특허청에 제출한다. 출원 수수료는 출원시에 납부되어야 한다(추납 불가).

#### 3) 심사

출원서 접수 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등록된다. 거절이유 발견시 심사리포트를 출원인에게 송부하며 출원인은 심사리포트에 기재된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출원이 거절된다.

2006. 10. 개정 디자인법 심사기준에 따라 출원 디자인에 대한 선행디자인 검색 및 유사 여부(신규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실상 등록심사는 형식 심사가 되었고, 추후 디자인의 등록 이후 무효 소송을 통해 실체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디자인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대략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 4) 등록 및 공고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결정이 내려진 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약 3주 후 특허디자인 공보에 게재되고 등록증이 발행된다.

등록에 따른 디자인의 공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최고 1년까지 공고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디자인 1개당 40파운드이다.

디자인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제3자가 열람가능하도록 공개된다.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 5) 불복

심사과정에서 디자인등록부의 등록 거절을 통지 받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심판관(Hearing Officer) 앞에서 직접 당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는 심리(Hearing)를 요청할 수 있다. 심판관은 당해 특허 출원의 심사관과는 관계가 없고 심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심사관이 배정된다.

심판관이 심리에도 불구하고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릴 경우 출원인은 고등법원(High Court)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허가를 얻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등록디자인의 권리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으로, 5년마다 갱신 수수료(연차료)를 납부하여야만 권리가 유지된다. 연장신청 시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할 수 있다. 이 추납 기간 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스위스(Switzerland)

11

스페인(Spain)

12

슬로바키아(Slovakia)

13

영국(England)

14

오스트리아(Austria)

15

미등록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만든 날로부터 1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침해행위 발생시 권리자는 디자인권이 존재하고 디자인이 무단복제되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 마. 심판제도

디자인의 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면 누구나 등록부 등록 후 언제든지 무효를 이유로 해당 디자인의 등록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특허청 뿐만 아니라 특허 법원에서도 무효심판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1심은 영국 특허청, 특허 법원 또는 특허 지방 법원(Patent County Court) 중 한 군데서 열리게 된다. 이때 영국 특허청은 특허청장, 특허 법원과 특허 지방법원은 1명의 전문 판사가 심판관이 된다

### 바. 비용<sup>155)</sup>

(단위: GBP)

구분	온라인 양식		서면 양식
	디자인 건수	비용	
디자인 등록출원	1건	£50	최초 £60, 이후 출원에 포함된 나머지 디자인은 £40
	10건까지	£70	
	20건까지	£90	
	30건까지	£110	
	40건까지	£130	
	50건까지	£150	

- 디자인등록은 5년째 해에 갱신되어야 하며, 이후 5년마다 최대 25년까지 갱신해야 한다.

디자인 등록 갱신	갱신 기간	비용
	첫 번째 갱신	£70
	두 번째 갱신	£90
	세 번째 갱신	£110
	네 번째 갱신	£140

155) <https://www.gov.uk/apply-register-design>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을 가진 임의의 표시(표장)을 의미한다. 상표는 문자, 로고, 도안, 숫자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3차원이거나 소리를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관시키는 기능을 하는 보통 상표 외에 증명 표장, 단체 표장 역시 등록 가능하다.

#### 1) 증명 표장

증명표장은 표장이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표장의 소유자에 의해 상품의 태생, 재료, 제조방식 또는 서비스의 수행, 품질, 정밀도 또는 다른 특성에 대해 증명되는 특정 표장을 말한다. 주로 민간단체, 정부 기관, 기술 협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 증명 표장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 2) 단체 표장

표장의 소유자가 1명이 아닌 협회 구성원 전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표장으로,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표장이다. 단체 또는 협회만이 단체표장의 출원인 자격을 갖는다.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을 등록 하려면 해당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통상표의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증명 표장과 단체 표장의 소유자도 침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 나. 등록요건

표장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류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서비스류나 이와 동일 유사한 서비스류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등록 상표가 없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등록이 거절 될 수 있는 사유로 식별력과 관련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하거나, 특성을 나타내는 표장
- 당업계에서 상용화 또는 관습화된 용어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 이상한 활자체로 된 표장
- 색채로만 이루어진 표장
- '.com', 'co.uk' 등의 인터넷 도메인명으로 이루어진 표장

그 외 부등록 사유로 거절될 수 있는 표장은 아래와 같다.

- 공공 정책 또는 공중도덕에 반하는 표장
-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표장
- 공중을 기만하는 표장
- 영국 왕실, 여왕, 왕가 깃발로 구성되거나 이와 유사한 표장
- 영국 국기, 국가, 국제기구 또는 조약의 국기 및 문장
- 국제적인 보호 표시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인

자연인, 법인, 단체, 협회 등 누구나 상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다.

### 2) 출원

상표 출원을 하려면 특허청 서식의 출원서 양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출원서를 송부해야 한다. 출원과 동시에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요금 지불을 요청하게 되며, 출원인은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출원번호 통지서는 출원서 접수 후 약 6일 뒤 발행된다.

### 3) 심사

#### 가) 심사의 내용

2007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상표 개정법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절대적 거절이유(absolute grounds)만을 고려하여, 즉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과 상표로 적합한지만을 기준으로 상표 출원을 심사할 뿐 더 이상 선행 상표를 이유로한 출원 상표의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상표권 등록 요건의 실제 심사는 이의신청단계 또는 등록 무효 신청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 나) 동일 유사한 선행상표가 검색될 경우

신규 출원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선행 상표 검색이 이루어지고, 혼동을 초래할 만한 선행 상표가 발견된 경우 특허청은 선행상표권자에게 신규 상표 출원의 존재를 통지하게 되고, 출원인에게 심사리포트를 통해 선행상표의 존재를 알려준다.

출원인은 심사리포트 접수 후 2개월 내에 추후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답변 기한은 이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선행상표와 충돌이 되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류를 삭제 보정할 수도 있다. 출원인이 그대로 출원을 요청하면 특허청은 해당 상표를 공고하게 되고 선행상표권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 가속심사 제도(fast track examination)

출원인이 출원료와 함께 추가수수료 300파운드를 내면, 영국 특허청은 해당 출원건을 심사하여 10일 내에 상표 출원인 또는 해당 대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다만 가속심사 이후의 이의신청 절차는 일반 심사 이후의 절차와 동일하다(3개월).

## 라) 분할 출원

다류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일부 지정상품 또는 상품 분류에 대해 등록 거절이 된 경우, 출원인은 등록 허여된 지정상품 또는 상품류를 대상으로 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시리즈 상표 출원 또한, 시리즈 상표 중 공고 결정을 받은 일부 상표를 대상으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

심사 결과 부등록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등록을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상표 공보에 해당 출원을 공개한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에,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는다면 특허청은 해당 출원의 등록증을 발행한다.

절대적 거절 이유에 해당되는 상표인 경우(식별력) 공고된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 이러한 의견을 특허청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선행 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해당 선행 상표권자만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상행 상표는 선행 상표는 아래의 상표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영국에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
- 영국이 지정되어 영국 내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마드리드’ 상표)

- 유럽공동체상표 출원 또는 등록
- 이의신청인이 '커먼로(common law)'를 근거로 주장하는 미등록상표권리

## 5) 등록

심사관의 심사 진행 후 상표의 등록이 결정되면 해당 상표는 상표 공보에 게재된다. 공보에는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등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실리게 된다. 만약 집 주소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공고 전에 사서함 주소 또는 다른 주소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대체할 수 있다. 상표 공보는 특허청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금요일 마다 공고된다.

상표 출원이 공고 결정되면 출원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제3자가 열람가능하도록 공개된다.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시 또는 제출 후 14일 이내에 이유를 제시하며 해당 자료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최초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심사 중 거절이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지 않으면 대략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보호범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상표권 존속 기간은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

### 2) 등록상표의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출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갱신 출원시 납부해야할 출원료는 1개류 1출원당 200파운드, 추가 1개류당 50 파운드이다.

### 3) 등록으로 인한 효력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자신의 상표가 등록 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사용권을 줄 수 있다.
- 타인에게 자신의 상표를 양도할 수 있다.
- 등록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슷한 상품 또는 서비스류에서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야기한 침해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4)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취소

상표가 등록된 후 5년 이내에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최소 5년 동안 사용이 중단되었다면, 누구든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마. 비용<sup>156)</sup>

(단위: GBP)

	금액	추가 류당
표준 출원(온라인)	£170	£50
'Right Start' 출원(온라인)	£200 (£100 선납 후,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100 추가)	£50 (£25 선납 후,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25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원이 등록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Right Star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록 규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출원을 계속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li> <li>- 상표는 10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만료일 6개월 전후로 갱신 가능함</li> </ul>		
상표 갱신	£200	£50

## 2.4.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 또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는 권리다. 어문, 공연, 음악적 작품, 예술적 작품, 음원, 영화, 방송, 출판물의 편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어문 저작물에는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한 설계자료, 데이터베이스 외의 표 등을 포함한다. 예술적 작품에는 전통적인 회화, 판화, 조각 외에도 사진, 건물, 건축 설계, 건축 작품도 포함된다.

## 나. 저작권자

업무상 저작물 또는 국제기구의 저작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저자가 저작재산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156) <https://www.gov.uk/how-to-register-a-trade-mark/apply>

## 다. 저작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 기간은 저작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문학, 음악, 희곡의 경우 원작자 생존 기간동안 그리고 사후 70년 동안 보호 된다. 영화의 경우, 감독, 영화 음악 작곡자, 각본가 중 가장 늦게 고인이 된 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은 첫 방송일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음반은 5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책 또는 신문과 같은 출판 편집에서의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은 만든 날로부터 25년간 보호된다.

### 2) 효력

저작권자는 영국 내에서 a) 복제, b) 배포 및 대여 c) 공연 전시, 또는 공개적 재생, d) 공표 e) 2차적저작물 작성을 독점적으로 할 권리(저작재산권)를 가진다.

### 3) 2차 침해

저작물의 침해 사본을 만들거나 사본을 영국내로 수입하거나 영업을 위해 소유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를 청약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공연장에서 공연으로 문학, 연극,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 된 경우, 공연장 사용을 허가한 자는 공연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저작물이 재생장비 등을 통해 공연된 경우, 장비 또는 장비의 상당하는 부분을 공급한자는 그 장비가 저작권을 침해할 정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진다.

### 4)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예외

다음의 행위 등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정 조건 하의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 연구 및 개인 학습
- 비평, 리뷰, 인용 및 뉴스보도
- 캐리커처, 패러디 등
- 저작물들이 다른 예술, 녹음, 영화, 방송에 부수적으로 취급되는 경우

- 장애인을 위한 특정 조건 하의 사용
- 교육을 위한 특정 조건 하의 사용
- 도서관에서의 특정 조건 하의 사용
- 공공 행정을 위한 저작물의 사용
- 저작권 만료를 전제로 한 사용

5) 실시권, 양도 등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줄 수 있다.

**라. 저작인격권**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자 및 영화의 감독은 법률에서 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작품의 저자 또는 감독으로 표시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작가 또는 감독이 잘못 표시되지 않도록 할 권리가 있다.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자 및 영화의 감독은 자신의 작품이 경멸적인 취급(darogatory treatment)을 받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만들어진 사진 또는 영화의 경우, 사본 등이 대중에게 전달되는 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마. 실연자의 권리**

공연에 대하여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경우, 녹음 또는 녹화의 발행, 대여를 하는 경우 기록자는 실연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연자는 복제권, 배포권, 임대권리, 사용권을 가진다. 실연자의 권리는 양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2.5. 부정경쟁행위**

영국에는 부정경쟁을 다루는 별도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경쟁 분쟁을 다루는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청(OFT: Office of Fair Trading)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청에 제소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제소 후 침해로 결정이 나면, 경쟁항소법원

스위스(Switzerland) 11

스페인(Spain) 12

슬로바키아(Slovakia) 13

영국(England) 14

오스트리아(Austria) 15

(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쟁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할 수 있고,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는 대법원에서 한다.

## 2.6. 식물 육종자 권리(Plant breeders rights)

식물 육종자 권리는 새로운 식물 변종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이다. 상기 권리자는 본 권리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식물 품종을 타인이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새로운 식물 또는 변종은 영국 또는 유럽공동체의 식물변종 관할 기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영국의 식물 품종 및 변종 관할 기관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이다.

### 3.1. 민사적 구제

#### 가. 영국의 법원 체계

##### 1) 심급 체계

영국의 지재권 심급 체계는 3심제로서 1심(Hight Court), 2심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상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House of Lords)으로 이루어져 있다. 2심 항소 법원은 3인 합의 재판부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사건의 항소는 항소 허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항소 법원의 심리 방식은 1심 법원의 소송기록과 변호사의 변론만 듣고 심리하는 재심(Re-hear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증인 또는 증거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사실관계의 입증 이루어지는 1심 재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독자적 법률 체계와 법원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특허침해소송(patent infringement proceedings)은 특허법원(patent court)이나 지재권 기업법원(Intellectual Property Enterprise Court: IPEC)에서 처리한다.

##### 2) 특허법원

특허 법원(Patents Court)은 민사 사건 1심 관할법원으로 모든 종류의 특허청 처분 불복 사건 및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침해 금지(injunction) 청구(claim) 등을 관할한다.

##### 3) 특허 지방 법원(PCC : Patents County Court)

특허 지방 법원(Patents County Court)는 특허 소송의 신속화와 저가의 소송 비용에 의하여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1991년에 설립되었다. 특허 법원과 같이 특허와 디자인의 무효 및 침해 소송 사건을 취급하지만, 특허청의 심결 취소 소송은 취급하지 않는다.

##### 4) 통합 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

영국은 2018년 4월 26일 통합 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을 비준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통합 특허법원과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통합 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은 국제 조약이다. 국제법원은 계약 국가의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향후 일원화된 특허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합 특허법원은 현재의 정부 체제하에서 부여된 특허에 대한 민간 당사자 간의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에서 유일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 나. 민사구제절차

### 1) 소송 전 오피니언 제도

영국특허청은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절차로 2005년 10월 1일부터 특허 침해 및 유효성에 대한 공적 견해를 발행하는 ‘오피니언 제도(Opinion Service)’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오피니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즉, 오피니언 결과로 인하여 특허가 취소되거나 오피니언 결과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등 법적 구제절차를 청구할 수 없다.

오피니언 제도는 ①특허사무소에서 얻는 소견보다 더 중립적이고 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②비용이 £200로 매우 저렴하며 ③빠른 기한(최단 3개월)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④절차가 간단하며 ⑤특허침해문제와 특허의 효력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피니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부문에 활용될 수 있다.

- 특허권 침해 또는 비침해의 확인(실시행위의 계속, 중지)
- 실시권 계약, 권리 양도 교섭에의 활용
- 중재기관에 분쟁조정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찰 고소의 근거자료
- 경고장의 증거, 경고장에 대한 반론의 증거
- 법적소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2)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

영국특허청은 지재권 소송에 연관된 발명가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지재권 소송 중재서비스(Mediation)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 특허청은 지재권 소송 심리에 참여해본 인원으로 구성된 본 중재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소송이전 분쟁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이 이미 진행된 경우, 심리를 진행하는 담당 판사들에게 중재를 통해 양측 간 유리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중재가능 여부를 판별해주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중재가 가능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지재권 소송 중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중재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전적으로 비밀 유지된다. 중재자는 당사자들에게 그 사건에 관한 감정 및 그들의 입장에 관해 숨김없이 얘기하도록 독려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진행중인 또는 추후 진행될 법원의 소송을 ‘기득권을 침해함이 없는(without prejudice)’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쌍방 간의 중재가 실패하여 소송이 진행 될 경우, 재판관은 중재 결과에 대해 보고 받지 않는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은 중재 과정 동안 밝혀진 어떠한 정보나 인정 사실을 재판 중에 말해서는 안 된다.

### 3) 소송을 통한 구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 금지명령(injunction)
- (침해 물품의) 인도/폐기
- 정보 제공 (침해 거래, 공급자, 고객에 관한 정보)
- 손해배상액 청구
- 소송비 변상

이중 금지명령, 인도/폐기, 정보제공은 긴급한 가금지 명령(temporary injunction)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의 중간금지명령(interlocutory action)을 구할 수 있다. 중간금지명령은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주요 쟁점이 아닌, 당사자 간의 ‘형편의 균형(balance of convenience)’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형편의 균형’에 관한 판정은 주로 상업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한다. 양 당사자들은 승소를 가정으로 재판이 끝나고 받게 될 단순한 손해배상금으로는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4) 손해배상액의 산정

#### 가) 일반론

특허 및 미등록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미등록 디자인권자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손해배상은 형벌 보다는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자에게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현재까지 특허 및 미등록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제조업자인 원고에게 재정된 손해배상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침해자인 피고의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특허 제품 판매로 벌어들였을 이익의 보상
- 피고의 침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제품 가격을 인하하여 입은 손해의 보상
- 피고인 침해자가 판매한 특허 제품에 대한 순수 판매 로열티의 계산

만약 원고의 특허가 영국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특허권자에 의해서든 실시권자에 의해서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로열티 지불로만 인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원고가 제공자로서 피고인 침해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침해자는 실시권자로서 침해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 나) 2차 손실

특허가 제품 및 서비스 판매와 연관되어 2차 손실(secondary loss)이 발생되었다면 특허권자는 2차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2차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특히, 2차 손실이 침해의 결과 그리고 침해로 예견이 가능한 결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은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없었으므로 다소 논란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 다) 계속적 손해

특허권자는 침해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손해는 침해로 인하여 특허권자가 낮춘 가격 하락의 효과와 유통 채널과 소비자 연결간의 시장 혼선이 계속됨으로써 발생된다. 즉, 침해가 없었더라면 가격 인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특허권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자가 훨씬 낮은 가격으로 특허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을 장악한 지역의 경우 침해 행위가 중단되었다 해도 시장 혼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적인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는 침해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특허권자의 제품 시장에서 철수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라) 연구비 보상

침해로 인하여 판매 손실을 입은 특허권자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면 연구 개발(R&D) 비용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연구비 보상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연구비로 돈을 사용한 절대적인 이유가 시장에 나와 있는 침해 물품 때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침해가 없었더라면 연구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3.2. 형사적 구제

영국에서는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는 범죄로 간주되지만 특허 침해는 민사 소송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영국법에 따라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한 피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특허 침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단,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

디자인 침해 또한 형사 처벌 조항이 없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물론, '사칭통용(passing-off)'에 근거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사칭통용'의 주요 조건은 소비자의 혼동으로 중소기업 디자이너가 창작한 디자인을 유명 디자인 업체에서 고의로 모방한 경우 '사칭통용'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결국 형사 처벌이 힘들다.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근거규정	규정
상표의 무단 사용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92조 위반	6개월 징역 및/또는 벌금 5,000 파운드
침해품 제조 및 취급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107조(1)(a), (1)(b), (1)(c), (1)(d)(i)-(iii), 107(1)(d)(iv), 107(1)(e) 위반	6개월 징역 및/또는 벌금 5,000 파운드
프로그램 부정 입수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297조 위반	벌금 5,000파운드
무단 복제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제297조A 위반	6개월 징역 및/또는 벌금 5,000 파운드
무역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물품에 거짓 상표 사용	Trademark Descriptions Act 제1조(1)(a) 위반	6개월 징역 및/또는 벌금 5,000 파운드
무역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거짓 상표가 상용된 물품의 공급 또는 배포	Trademark Descriptions Act 제1조(1)(b) 위반	6개월 징역 및/또는 벌금 5,000 파운드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V. 오스트리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83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286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293



## 1.1. 개요

오스트리아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을 두어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법에 규정되어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실용신안의 심사는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권자는 의약품의 승인된 활성 성분 또는 특허(기초 특허)가 적용되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해 추가 보호 인증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얻는 기간에 소요되는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디자인법에 의하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의 특성, 예를 들어 색상, 모양, 표면 구조 및 재료 등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가능하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호는 즉, 이름, 문자, 숫자, 로고, 3차원 형태, 소리, 색상 및 기호 등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것이 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와 구별하는 데 적합한 것이라면 이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학, 음악, 시각 예술 및 영화 예술의 지적 창작물은 저작자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고, 저작권에 대한 사용권은 양도가능하다.

오스트리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9. 4. 23.)	가입	가입	가입 (1999. 4. 13.)	가입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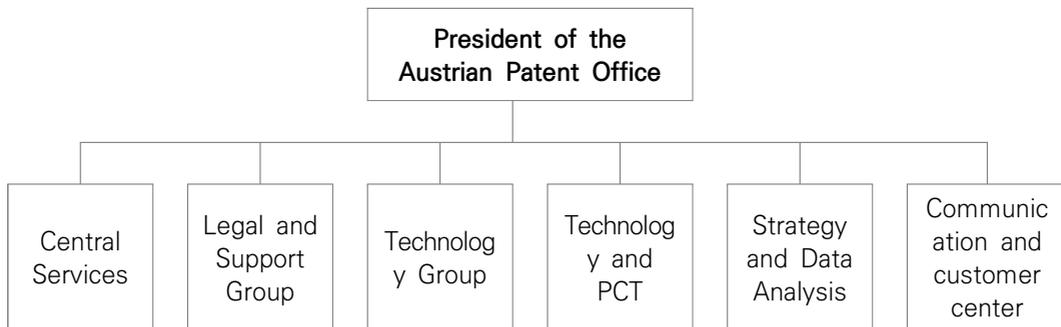
한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오스트리아 특허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관이다.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는 특허청에서 결정되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민사 특허 침해 사건은 비엔나 상업 법원의 3명의 전문 상원 의원 앞에서 심리된다. 비엔나 고등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역할을 하는데, 사건이 당면한 특정 사건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법적 중요성과 관심사에 관한 문제인 경우 대법원에 추가 항소도 가능하다.

한편,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는 비엔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심리한다.<sup>157)</sup>



[그림] 오스트리아 특허청 조직도<sup>158)</sup>

157)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621-066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621-066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158) <https://www.patentamt.at/de/ueber-uns/>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59)</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4,058	271	25,692	8,447	3,827	1,215
2015	4,200	236	24,730	8,145	3,572	1,181
2016	4,117	237	24,190	8,466	3,396	1,439
2017	4,298	232	23,518	8,710	-	-
2018	4,327	168	25,661	9,731	-	-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159)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AT](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AT)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모든 기술 분야의 새로운 발명은 그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고 산업상 이용가능한 경우 특허가 부여된다. 장치 및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자연에 존재했다라도 기술적 방법의 도움을 받아 자연 환경에서 분리되거나 생산되는 생물학적 물질, 인체의 분리된 구성 요소 또는 유전자의 서열 또는 부분적 서열을 포함하여 기술적 과정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얻은 구성 요소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발견, 형성 및 발달 단계의 인체, 유전자 서열을 포함한 인체의 단순한 발견, 미적 창조물, 데이터 처리, 비즈니스 활동, 게임 등을 위한 규칙 절차 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나. 등록요건

오스트리아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오스트리아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 국내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유럽특허청(EPO)에 유럽 특허 출원을 하여 오스트리아를 지정하는 방법, 또는 PCT 출원에서 오스트리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의 이름, 발명의 명칭, 청구항, 발명의 내용이 포함된 출원서를 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설명, 주장 및 요약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문서의 독일어 번역을 나중에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는 출원 후 18개월 뒤에 게시되고, 요청에 따라 더 일찍 게시할 수도 있다. 특허 출원은 오스트리아 특허청(ÖPA)의 심사관이 심사하며, 공식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출원서는 최초 공개된 범위에서 수정할 수 있다. 심사관이 특허 부여에 이의가 없는 경우 특허 부여가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출원이 공개된 후 제3자는 특허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가 없고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특허 공보에 특허 부여가 게시됨으로써 특허가 등록된다. OA(Office Action) 등 별도 절차 없이 출원 및 심사가 진행될 경우, 특허 등록까지는 출원일로부터 약 2년이 소요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특허는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지불하면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보호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 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특허와 유럽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특허의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내의 법원 판결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sup>160)</sup>

### 마. 심판제도

특허 부여 공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절차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되면 각 당사자는 스스로 이의 제기 절차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등록된 특허는 언제든지 무효 심판 청구를 통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심사에 따라 특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취소될 수 있다. 특허 무효성에 관한 결정은 비엔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sup>161)</sup>

### 바. 비용<sup>162)</sup>

청구항이 10개 이하인 특허의 경우 서면으로 출원하는 비용은 €342,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322이다. 청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추가 청구항 당 €104이다. 특허출원의 공고비용은 €208이다.

### 사. 추가 보호 인증서<sup>163)</sup>

추가 보호 인증서는 의약품의 승인된 활성 성분 또는 특허(기초 특허)가 적용되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한다. 의약품은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불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호 인증서의 최대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5년이다.

160) 최효선 변리사, “유럽지재권 제도 최신동향”, 14쪽

161)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181>

162) 더 상세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patentamt.at/en/patents/apply-for-patents/fees/>).

163) <https://www.patentamt.at/en/patents/patents-service/supplementary-protection-certificates/>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의 승인된 활성 성분 또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한 특허 보유자 및/또는 기본 특허의 승인 보유자이다.

## 2.2. 실용신안

새롭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있다. 반면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미적 창조물, 정신적 행동 수행, 게임 플레이 또는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영구 운동 기계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연 법칙(에너지 보존 법칙, 선형 운동량 보존 원리 등)에 반하는 발명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없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심사 절차에 있다. 실용신안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검토된다. 특허 출원과 동일한 출원 서류가 필요하지만 절차, 보호 기간, 비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실용신안이 출원되면 이에 대한 검색 보고서가 전송되고, X, Y 또는 A로 분류된다. 부정적인 검색 보고서(카테고리 X 또는 Y)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등록비를 지불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할 수 있으나, 제3자의 무효 선언 요청에 따라 실용신안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수반한다.

실용신안의 경우 연간 유지 보수비용을 지불하여 최대 10년 동안 보호될 수 있는데, 2~5년의 비용과 6~10년의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할 수 있어 전체 비용이 특허보다 절감될 수 있다.<sup>164)</sup> 실용신안을 서면으로 출원하는 비용은 €206,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186이고, 공고비용은 €135이다.<sup>165)</sup>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오스트리아 디자인법에 의하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의 특성, 예를 들어 색상, 모양, 표면 구조 및 재료 등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여기서 특성이란 전체 제품 또는 그 일부의 모양이며, 특히 선, 윤곽, 색상, 모양, 표면 구조 및/또는 제품 자체의 재료 및/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제품이란 복잡한 제품, 포장, 장비, 그래픽 기호 및 인쇄 이미지로

164) <http://www.kpl-patent.at/en/property-rights/patents-and-utility-models/>

165) 더 상세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patentamt.at/en/patents/apply-for-patents/fees/>).

조립되는 개별 부품을 포함한 모든 산업 또는 공예 품목을 의미한다. 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나. 등록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하고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사용자들이 제품 패턴 정보에 입각하여 생성된 인상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다른 경우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디자인이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출원서는 봉인하여 비밀디자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비밀 디자인의 경우 특허청에서 공지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되고 등록되지 않는다. 샘플 이미지 또는 샘플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시 샘플을 공개해야 한다.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디자인이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디자인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디자인 등록에 이의가 없으면 등록되며, 디자인은 등록과 함께 공보에 게시된다.

디자인이 등록되기까지는 약 1달 정도가 소요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최대 4회 한도로 갱신이 가능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마. 비용<sup>166)</sup>

등록 및 공고를 포함하여 1건 디자인 대한 출원비용은 평균적으로 약 €127.5이다. 여러 건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 비용은 10건까지는 최소 €577이며, 비밀디자인 출원에는 약 50%의 추가비용이 부과된다.

166) <https://www.patentamt.at/en/designs/apply-for-designs/fees/>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호는 상표로 보호될 수 있다. 즉, 이름, 문자, 숫자, 로고, 3차원 형태, 소리, 색상 및 기호 등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것이 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와 구별하는 데 적합한 것이라면 상표로 등록 가능하다.

### 나. 등록요건

식별력이 있는 기호로 상표법이 정하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표장은 국가의 국장, 국기,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타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로만 구성된 표장,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거나 제품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모양 또는 기타 특성으로만 구성된 표장, 공공 정책이나 도덕에 반하는 표장 등이 있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이름, 등록된 주소, 상표(표장), 지정 상품 및 서비스 목록, 대리인 정보 등이 포함된 상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상표 출원에 대해 특허청은 절대적 등록 장애 사유 여부를 심사한다. 상표 출원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상표출원에 대해 유사성 검색을 요청하는 경우 특허청은 각 상표 출원과 동일한 상품, 서비스 분류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 등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 등록에 이의가 없으면 등록되며, 상표는 등록과 함께 공보에 게시된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총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에 만료된다, 존속 기간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등록 표장과 유사한 표장을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표장도 사용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 심판제도**

상표 등록 전에 출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상표 등록 후 취소신청을 통해 등록 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상표와 관련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비엔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바. 비용<sup>167)</sup>**

(단위: EUR)

구분		금액
비전자출원(3개류까지)	유사성 조사 없이 출원	300
	유사성 조사를 하는 경우	340
	3개류 초과 시 각 류마다	75
전자출원(3개류까지)	유사성 조사 없이 출원	280
	유사성 조사를 하는 경우	320
	3개류 초과 시 각 류마다	75

**2.5. 저작권****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문학, 음악, 시각 예술 및 영화 예술의 지적 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이어야 한다.

문학이란 2차원 또는 3차원의 그림 표현으로 구성된 컴퓨터 프로그램, 연극 작품(신체 언어) 및 과학 또는 교육 작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언어 작품을 의미하고, 예술작품에는 그림과 드로잉, 사진뿐만 아니라 건축 및 응용 예술 작품이 포함된다. 또한, 음악 작품 여부에 관계없이 악기, 컴퓨터에서 생성된 소리, 인간의 음성 등은 보호될 수 있으며, 곡의 개별 요소(멜로디,

167) 더 상세한 내용은 오스트리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https://www.patentamt.at/de/marken/gebuehren/>).

하모니, 리듬 등)와 그 조합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영화 작품 (동영상), 컴퓨터 게임 등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을 권리, 자신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의 저작물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와 저작물에서 수반하는 경제적 권리를 저작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시하거나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저작권은 상속 가능하다. 한편, 공동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이 누구에게도 취득되지 않고 국가가 상속재산으로 인수하지 않으면 공동저작권은 다른 공동 저작자에게 양도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저작물의 사용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는 작품 창작의 순간부터 저작자의 일생 및 그의 사망 후 70년 동안 지속된다.

저작권의 저자 및 보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사용에 저작권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저작권 부과금은 저장 매체 및 재생 장비/장치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저장 매체 또는 재생 장비의 첫 번째 전문 판매자가 지불한다.

#### 라. 등록요건

오스트리아 저작권은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등록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요건이 아니다.

## 2.6. 영업비밀

오스트리아 불공정경쟁법에 의하면 비공지성, 상업적 가치,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

### 3.1. 사법구제

오스트리아는 연방보통법원 이외에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행정법원이 있다. 연방보통법원은 구법원(Bezirksgericht), 지방법원(Landesgericht),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 및 대법원(Oberster Gerichtshof)으로 구성된다.<sup>168)</sup>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문제는 특허청에 회부되고 특허 침해와 관련된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민사 특허 침해 사건은 비엔나 상업 법원의 3명의 전문 상원 의원 앞에서 심리된다. 비엔나 고등법원은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역할을 하는데, 사건이 당면한 특정 사건을 넘어서는 일반적인 법적 중요성과 관심사에 관한 문제인 경우 대법원에 추가 항소도 가능하다. 2014년부터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에 대한 항소는 비엔나 고등 법원과 대법원(문제가 되는 사건을 넘어서는 중요한 법률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심리한다.<sup>169)</sup>

### 3.2. 형사구제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형법상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어, 침해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다.

11  
스위스(Switzerland)

12  
스페인(Spain)

13  
슬로바키아(Slovakia)

14  
영국(England)

15  
오스트리아(Austria)

168) [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64/view.do?seq=9794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http://overseas.mofa.go.kr/at-ko/brd/m_8464/view.do?seq=97941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169)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621-066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8-621-066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VI. 이탈리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29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0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06



## 1.1. 개요

이탈리아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령을 산업재산권법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가능하다. 이탈리아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저작권은 표현 형식에 관계없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및 영화의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조건하에서 디자인 개체를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이탈리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5. 3. 28.)	가입	가입	가입 (2000. 4. 17.)	가입	가입

한편,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이탈리아 특허청(Ufficio Italiano Brevetti e Marchi, UIBM : Ital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은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심사 하는 기관으로, 로마에 설치되어 있다.

이탈리아에서 지식재산관련분쟁은 지식재산소송(예비 구제 절차 포함)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이 있는 기업 법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고, 현재 22개의 기업법원이 있다.<sup>170)</sup>



[그림] 이탈리아 특허청 조직도<sup>171)</sup>

170)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4-621-248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28sc.Default%29>

171) <https://uibm.mise.gov.it/index.php/en/navigate-the-site-with-three-clicks/organization-chart>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72)</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2,243	781	106,514	10,196	40,219	541
2015	-	-	-	-	-	-
2016	13,019	973	114,905	10,608	39,235	393
2017	13,006	1,031	109,491	11,111	39,255	1,991
2018	13,323	900	117,153	12,888	46,149	1,212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172)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IT](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IT)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기술 문제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적인 제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이탈리아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이탈리아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국내 특허로 출원하는 방법, 유럽특허청(EPO)에 유럽 특허 출원을 하여 이탈리아를 지정하는 방법, 또는 PCT 출원에서 이탈리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이탈리아를 지정한 PCT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이탈리아 특허청에 직접 진입이 불가능하고 유럽특허출원을 통해야 했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이탈리아 특허청에 직접 출원이 가능해졌다.

이탈리아 특허청에 출원하는 경우 발명의 명칭, 출원일, 우선일, 명세서 등이 포함된 출원서를 제출하여, 방식심사, 실체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게 된다.

발명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동시에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고, 특허청은 출원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부여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출원인은 자발적으로 또는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특허 출원을 산업 발명에서 실용신안으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출원일로부터 약 3년이 소요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이탈리아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다. 이탈리아 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국내 특허와 유럽특허청을 통해 부여받은 특허의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탈리아 내의 법원 판결은 해당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sup>173)</sup>

173) 최효선 변리사, "유럽지재권 제도 최신동향", 14쪽

## 마. 심판제도

이탈리아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청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고, 유럽특허청의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부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탈리아 특허 무효는 침해 소송 등의 분쟁 시 법원에서 무효 항변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무효만을 다투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특허 전체의 무효 판단이 잘 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이유로 잘 이용되지 않는다.

## 바. 비용<sup>174)</sup>

발명 특허의 경우, 전자 제출의 기본비용은 €50.00이고, 종이 제출은 페이지 수에 따라 €120.00에서 €600.00 사이이다. 청구항이 11개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구에 대해 € 45.00의 추가 요금이 있다.

## 2.2. 실용신안

이탈리아에서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법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실용신안 보호의 대상은 신규한 것으로서, 기계 또는 기계부품, 기구, 부품 또는 범용물품에 특별한 효용성, 사용편이성 또는 유용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독특한 특징, 배열,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니거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실용신안의 등록 절차 등은 특허에 대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인데, 등록에만 약 5년이 소요된다.<sup>175)</sup> 출원 관납료는 페이지 수 및 청구 수에 관계없이 전자 제출은 €50.00, 종이 제출의 경우 €120.00의 제출 수수료가 있으며, 검색 수수료는 없다. 갱신수수료(5년 등록 유지료)는 €500.00 이다.

174) <https://uibm.mise.gov.it/index.php/it/brevetti/deposito-di-una-domanda-di-brevetto/quanto-costa-brevettare>

175) <http://www.sib.it/en/patents/inventions-insights/utility-model/>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이탈리아 산업재산권법에 의하면 디자인 등록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 또는 모델로 보호 자격이 있다.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품 어느 쪽도 물품으로 간주되며, 특히 복합 물품에 포함되는 부품, 포장, 외장, 도형 기호 및 인쇄 글꼴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 나. 등록요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하고 독창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유럽공동체 출원의 경우와 같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이탈리아 디자인 출원은 방식 요건을 충족하고 디자인이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등록된다. 방식 위반, 공서 양속 위반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등록 후 무효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신규성 및 독창성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이탈리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이후 5년마다 최대 4회 한도로 갱신이 가능하여 최장 2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이탈리아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청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고,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출원에 대한 방식 심사에서 거절 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바. 비용

전자 제출의 기본 비용은 €50이고 다중 설계의 경우 €100, 종이 제출은 단일 디자인은 €100, 다중 디자인은 €200사이이다. 등록료는 두 번째 연장은 €30, 세 번째는 €50, 네 번째는 €70, 다섯 번째는 €80이다.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이탈리아 특허청의 보호대상인 상표는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과 소리를 포함하며, 표장은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디자인,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기 표장은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 냄새는 상표로 보호되지 않는다.

### 나. 등록요건

표장이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는 것이면서 공공질서나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이탈리아 특허청은 출원된 상표에 대해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진행한다. 실체심사 시에는 식별력의 존부 등 절대적 거절 사유만을 판단하고, 선등록 혹은 선출원 상표와의 저촉문제는 심사하지 않는다.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이유가 없으면 공보에 공고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정보제공 절차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상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등록료 납부에 의해 상표권이 발생한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탈리아 상표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에는 개별국 출원보다 마드리드 혹은 유럽상표출원(CTM)을 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 라. 상표권의 효력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에 만료되며, 존속 기간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이탈리아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특허청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고, 유럽공동체상표청의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유럽공동체상표청 또는 법원에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하며,

등록상표를 법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불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심판 청구 역시 가능하다.

### 바. 비용

상표 출원 기본료(1개 류, 10년 등록료 포함)은 €101이고, 류를 추가할 때마다 €57가 추가된다. 이의신청 관납료는 €250 이다.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문학, 음악, 건축물, 연극 및 영화 촬영물 등 모든 지적 창작물 등 표현의 방식과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지적창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의 보호 분야에 속한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은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 안무저작물, 건축 및 응용미술의 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등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으로 보호 가능하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이탈리아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작품을 수정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인격권과 경제적 사용권을 규정하고 있고, 경제적 권리와 관련하여 법은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1차적 권리와 2차적 또는 관련 권리를 구분한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이탈리아에서 저작물의 경제적 사용권은 작가의 전 생애 동안 그리고 그의 사망 후 70 년 동안 지속된다. 한편, 유럽연합은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사후 또는 저작자가 익명이거나 가명인 경우에는 일반대중이 그 작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화 및 시청각 작품도 감독 등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음반 제작권은 음반에 고정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라. 등록요건**

이탈리아와 유럽연합의 저작권은 베른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EU에서도 별도 등록절차 없이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무방식주의). 따라서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저작권이 있는 제3자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의 지리적 범위, 기간, 사용 수단, 사용 범위 등을 특정하여 허용할 수도 있다.

**마. 비용**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모두 별도로 등록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2.6 기타****가. 영업비밀**

영업비밀은 사업, 상업 또는 영업에 관한 기밀 정보를 말하며,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상업적 가치, 및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지리적 표시**

제품이 특정 지리적 원산지 및 명성(특정 품질 또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리적 표시(GI)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3.1. 사법구제

이탈리아에서 지식재산관련분쟁은 지식재산소송(예비 구제 절차 포함)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이 있는 기업 법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고, 현재 22개의 기업법원이 있다. 이탈리아 전문 기업 법원은 특허 침해 및 무효 청구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데 침해 및 무효 조치는 동일한 절차에서 동시에 처리 될 수 있다.

한편, 당사자는 권리의 존재와 침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을 입증하여 예비 구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이탈리아 세관 당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출고를 구금하거나 통관을 유예 할 수 있다.

### 3.3. 형사구제

이탈리아의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VII. 체코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09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12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21



## 1.1. 개요

2020년 현재 체코공화국(이하 '체코')이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창작물(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디자인(산업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법규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저작권법, 산업디자인법이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는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실용신안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모양, 구조 또는 재료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구성된 제품의 외관이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가지면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 색상, 그림, 문자, 숫자 또는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또는 소리를 포함한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든 기호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체코는 창작의 노력의 고유한 결과인 문학 작품 또는 기타 예술 작품, 과학 작품 등을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기본적으로 각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등록 요건은 국제적 기준과 유사하다. 다만 특허의 경우 제3자가 타인의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특허청에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프라하시 법원에 침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의 경우 출원에 대한 심사 시, 유럽 기준에 맞추어 상대적 거절 사유에 대한 심사를 2019년부터 폐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디자인권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방식심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체코는 지식재산권 출원의 측면에서 체코특허청의 역사가 오래된 것에 비해 41년간 계속된 오랜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특허출원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2010년대부터 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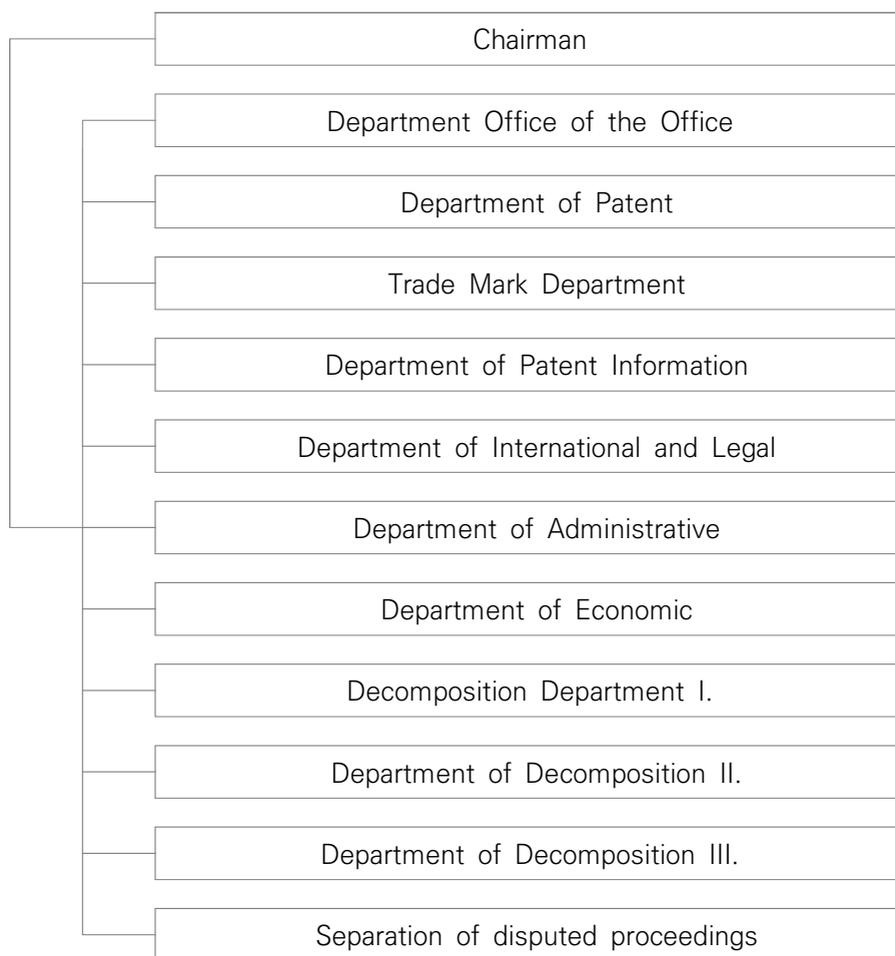
체코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3. 1. 1.)	가입	가입	가입 (1996. 9. 25.)	가입	가입

한편, 체코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체코특허청(Czech Industrial Property Office)은 1919년에 프라하에 설립되었으며 특허, 실용신안, 반도체배치설계,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체코 특허청 조직도<sup>176)</sup>

176) <https://www.upv.cz/cs/upv/kontakty/kontakty-na-predstavene.html>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Czec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 주소: Ul. Antonina Cermaka 2a, 160 68 Praha 6 - Bubeneč
- 전화: (420) 220-383-111
- 팩스: (420) 224-324-718
- 이메일: posta@upv.cz
- 홈페이지: <http://www.upv.cz>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77)</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077	62	20,362	5,134	1,938	15
2015	1,093	72	22,364	4,339	1,794	65
2016	981	47	22,841	5,076	1,610	193
2017	997	66	23,263	5,340	2,511	73
2018	921	54	23,006	5,731	1,520	91

<sup>177)</sup>[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Z](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CZ)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체코에서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신규성(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닐 것), 진보성(해당 기술이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특허 분야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을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 범위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이 요구된다(특허법 제3조). 신상품과 기술 이외에도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의약품, 미생물, 바이오테크놀로지 공정과 그로 인한 제품도 특허를 얻을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발명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일부 "발명"은 특허 보호 측면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체코에서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행위를 수행하고 게임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또는 컴퓨터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수행
- 인간과 동물의 신체를 치료하는 방법
-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 1) 출원서 제출

출원서류로 ①출원서, ②명세서, ③청구항, ④요약, ⑤ 필요할 경우에는 도면, ⑥위임장(인증 불필요), ⑦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등이 필요하다. 신청은 특허청 접수실에서 가능하며,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2) 출원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즉시 출원공개 된다. 사무국은 신청서를 게시하고 해당 간행물을 특허청 관보에 발표해야 한다.

## 3) 실체심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관은 명백히 특허할 수 없는 발견이나, 출원공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특허 부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특허청은 거절결정을 내린다. 한편, 출원인은 3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 4) 공고

특허의 효력은 특허청이 관보에 특허가 부여되었음을 통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귀속된다. 특허권이 부여되면 체코 내에서 특허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특허에 대한 권리는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자는 특허권 협약을 통해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4년, 부여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시기까지는 특허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특허법 제20조).

## 2) 존속기간

실체적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마. 심판제도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한다(특허법 23조). 발명이 특허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권한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누구나 특허청에 특허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프라하 시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브르노 최고행정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바. 비용

2020년 기준 특허출원 접수료는 기본 1200CZK, 그 외 출원후 4년까지는 매년 1,000CZK의 유지료가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체코특허청 홈페이지<sup>178)</sup>에서 확인 가능하다.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나 이들의 조합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관한 신규하며 산업적 적용가능성이 있는 물체에 대한 권리로 정의한다. 특허와는 다르게 실용신안의 등록은 보통 출원 후 3~4개월 후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 나. 등록요건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신청서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은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

### 다. 취득절차

#### 1) 출원

실용신안 등록은 소정 양식에 따라 특허청에 우편이나,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에 실용신안 출원의 주체를 명시하고,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 도면 등이 필요하다.

#### 2) 심사

특허청은 실용신안 출원에 대하여 등록의 가부, 즉 법률상 기술적 해결책이 아닌 물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는지, 명백히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지, 결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며 그 외 실제적 심사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등록부에 실용신안이 등록되면 특허청은 해당 사실을 공표한다.

178) <https://www.upv.cz/en/ip-rights/patents/fees.html.html>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특허청의 등록부에 등재 시 부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0년이다. 4년 동안 지속되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3년 동안 두 번 연장하여 총 10년간 보호할 수 있다.

## 마. 비용

2020년 기준 출원 접수료는 기본 1,000CZK, 그 외 등록 유효기간 연장 접수시마다 6,000CZK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체코특허청 홈페이지<sup>179)</sup>에서 확인 가능하다.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체코의 디자인권은 ‘디자인법’에 의해 규율된다. 산업 디자인은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모양, 구조 또는 재료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구성된 제품의 외관을 의미한다. 이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제품의 속성이어야 하므로, 기술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간 또는 평면 개체로서 기능해야 하며 가령, 특정 제품에 연결되지 않은 그래픽 자체는 디자인이 아니다.

### 나. 등록요건

모든 산업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 보호된다. 출원일 이전 또는 우선일 이전에 동일한 산업 디자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된다. 위 동일함의 기준에 대해, 기존 제품과 미미한 차이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창작된 전체적인 인상과 다를 경우 본질적으로 독자적이라고 인정된다(디자인법 No. 207/2000 Coll.)

### 다. 취득절차

#### 1) 출원

신청서는 우편, 전자접수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에 신청자에 대한 정보, 등록부에 산업디자인을 등록하겠다는 의사 진술서, 제품 외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해당 산업 디자인의 표현이 포함되어야 한다.

179) <https://www.upv.cz/en/ip-rights/utility-models/fees.html>

## 2) 심사

디자인권에 대한 출원공개 제도는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신청과 신청대상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지만을 확인한다. 등록이 가능한 경우 특허청은 산업디자인 등록부에 해당 디자인을 등록하고 공표한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은 관보에 공고된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해당 산업디자인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산업디자인에 대한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2)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이의신청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효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무효심판은 무효 이유에 따라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디자인법 제27조).

### 바. 비용

2020년 기준 출원 접수료는 기본 1,000CZK, 갱신료는 첫 5년은 3,000CZK이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체코특허청 홈페이지<sup>180)</sup>에서 확인 가능하다.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체코에서 상표는 상표법(441/2003 Coll.)에 의해 보호된다. 상표는 한 사람의 상품이나

180) <https://www.upv.cz/en/ip-rights/industrial-designs/fees.html>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름, 색상, 그림, 문자, 숫자 또는 제품의 모양이나 포장 또는 소리를 포함한 단어 등으로 구성된 모든 기호를 뜻한다.

## 나. 등록요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체코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 [체코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사유]

- 어떤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식별할 수 없는 표시
- 식별력이 부족한 표시
- 상품 혹은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생산시기 혹은 제공시기 또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그 외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거래상 도움이 될 수 있는 표식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되는 상표
- 거래상 통용되는 표현 혹은 공정하고 확립된 상관습에서 상용되고 있는 표식 또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 (중략)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취득절차

#### 가) 출원

출원서(신청자를 식별하는 정보, 등록이 요청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 상표 견본 포함) 등이 필요하다. 상표 검색이 필수는 아니나, 제3자의 상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코의 상표 데이터베이스(www.upv.cz) 또는 EUIPO에서 관리하는 TMview 및 eSearch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다.

#### 나) 심사

특허청은 출원이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정식으로 심사하여 출원 대상의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체코 특허청은 EU 지침에 따른 국내 상표법 도입 의무사항 반영 등 상표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고, 이러한 개정 상표법(zákona č. 286/2018 Sb.)은 201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그에 따라 특허청은 선등록 상표와의 잠재적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 결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 대신 상표등록 예정공고 및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를 통해 혼동 가능성 있는 유사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게 된다. 상표 등록 기간은 신청 절차 중 제3자의 이의 등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약 6~8개월이 소요된다.

## 2) 소요시간

체코에서 상표 출원 후 1차 의견제출통지(OA) 발행까지는 약 3~6개월이 소요되고, 의견제출통지 혹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록까지는 약 4~7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체코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상표의 양도는 개정 민법에 따라 체코 특허청이 공개등록부로 관리하는 등록부에 등록이 될 때 인정된다. 상표 소유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등록부에 변경이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2)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청이 혼동가능성 있는 선등록 유사상표의 존재를 사유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지 않게 됨에 따라, 체코에서 상표를 등록한 제3자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타인의 상표 등록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며, 관련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선등록 상표와 잠재적 혼동가능성이 있는 유사상표가 출원된 경우에도 그 출원상표를 즉시 거절결정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공보에 게재하기 때문이다. 상표가 등록되면 유사 또는 동일상표의 선등록자 등은 특허청 회보 공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근거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이의 신청 내용을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 2) 기타 신청

특허청이 신청에 대해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면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1개월 내에 특허청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 제3자는 특허청에 대해 상표

무효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은 5년 동안 계속해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가 일반 명칭이 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있어 해당 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 바. 비용

2020년 개인 기준 상표 출원 접수료는 기본 5,000CZK이다. 상세한 비용은 체코특허청 홈페이지<sup>181)</sup>에서 확인 가능하다.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체코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령(121/2000 Coll.)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은 창작의 노력의 고유한 결과인 문학 작품 또는 기타 예술 작품, 과학 작품 등을 말한다. 법적 규정, 공무원 등의 공식적 작업, 공익적인 저작물, 전통민속문화의 창작물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법 제3조).

#### [체코 저작법상 저작물의 종류 예시 (저작권법 제2조)]

- 연설이나 글
- 시각 미술 작품
- 사진 작품
- 그래픽 또는 조각 등 순수 예술 작품
- 건축, 도시 디자인 작업
- 음악 및 음악 및 텍스트 작품
- 극적, 극적 음악적, 안무 및 무언극 작품
- 시청각 작품 (영화 포함) 등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체코 저작권법은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이용,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 및 공개 여부, 다른 작업의 개입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인격권을 부여한다(저작권법 제11조, 제12조).

181) <https://www.upv.cz/en/ip-rights/trade-marks/national-application-information/fees1.html>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복제, 배포, 대여, 전시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개별적인 계약 등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는 저작권자의 생명과 그 후 70년 동안 존속한다.

#### **라. 등록요건, 취득절차**

체코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떤 형태의 등록도 필요하지 않다.

### 3.1. 사법구제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의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 권리자는 특허법, 상표법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침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상대방의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침해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침해 제품의 파기, 침해 제품에 대한 사용 중지 등 침해 금지 명령 등도 역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한편 1심 법원(프라하 시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프라하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브르노 대법원에도 상소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은 특허청에서 해당 권리의 무효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고, 그와 상관없이 무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법원은 특허청의 최종결정에 따를 의무는 없는 것이다.

### 3.2. 행정구제

체코는 체코 국내 시장에 출시된 상품과 관련하여 지적 재산권의 관세 집행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채택한 바 있다(법률 No. 355/2014 Coll.). 해당 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의 관세 집행과 관련하여 EU 규정 No 608/2013의 2조에 정의된 용어를 따르고 있으며, 위 규정의 구조와 규칙을 따른다. 권리자는 체코 영토에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침해제품에 대해 세관에 압수 등 관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3.3. 형사구제

특허법 및 형법은 특허 및 기타 지정된 권리를 고의적으로 침해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침해의 경우(피해 금액이 약 200,000유로 초과) 징역형은 최대 8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체코의 형법 규정에 의하면 침해자는 침해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 금전적인 처벌, 물건의 몰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사 소송은 경찰, 주 검찰청의 기소로 진행된다. 한편, 최근 체코 내에서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해결되는 형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VIII. 크로아티아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25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28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38



## 1.1. 개요

크로아티아 공화국(이하 '크로아티아')은 19세기 후반부터 지식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 및 규제 활동을 시작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준수하는 국제표준에 따라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관련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크로아티아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에 EU의 공동체(acquis communautaire) 적용을 단기간에 완료했으며, EU 규범의 도입과 시행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새로운 규정과 법률 연구에 대한 모든 권한은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에 있다.

크로아티아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은 특허법(Patent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 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디자인권은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크로아티아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상표법(Trademark Act)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년간 보호되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저작권 및 관련법(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Act)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행정적 절차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2020년 특허법이 개정되며 실용신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각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보호 요건, 등록 절차 등은 국제적인 기준과 유사하다.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특허청)이 1차적으로 지식재산권 권리를 허용하는 심사 기관이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상업법원 등에 항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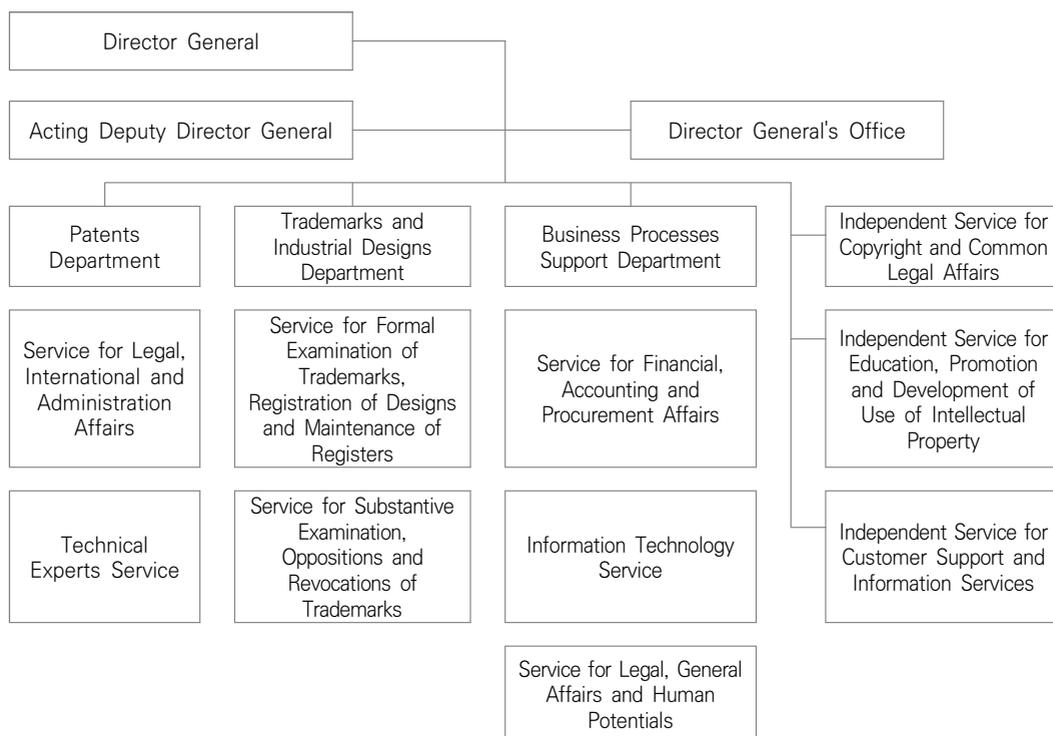
크로아티아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8. 7. 1.)	가입	가입	가입 (2004. 1. 23.)	가입	가입

한편, 크로아티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크로아티아 지식재산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IPO)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행정기관이다(<http://www.dziv.hr/>). 지식재산청은 각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출처, 원산지)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권리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된 전문적인 활동과 입법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제, R&D 관련 기관 등과의 대외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크로아티아 SIPO 조직도<sup>182)</sup>

182) <http://www.dziv.hr/en/about-sipo/what-is-sipo/organizational-structure/>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83)</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182	30	4,885	4,636	603	722
2015	178	17	4,623	3,831	513	651
2016	189	13	4,749	3,973	655	538
2017	158	11	4,772	3,948	505	658
2018	135	15	3,773	4,413	430	459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183)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HR](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HR)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크로아티아에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은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하는 신규성, 진보성(해당 기술이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특허 분야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을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 범위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이다.

#### 크로아티아 특허청의 특허 요건에 대한 정의

- 신규성: 세계 어느 곳에서든 특허 신청을 하기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됨
- 진보성: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기술의 이전 기술로부터 자명한 상태여서는 아니됨
- 산업적 이용가능성: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며 산업분야에서 생산 또는 사용에 적합해야 함.

### 나. 등록요건

특허 발명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일부 "발명"은 특허 보호 측면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보호할 수 없다(특허법 제5조~제7조).

-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술적 창작물
- 지적 활동의 실행, 게임 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지침 및 방법
- 정보의 제시
- 컴퓨터 프로그램 등

발명품 범주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윤리적 이유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 식물을 얻기 위한 생물학적 과정과 같은 동식물의 종(種)
- 인체 및 그 일부 요소(예: 유전자의 한 부분)의 단순한 발견
- 인체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절차 및 시술 절차
- 공공질서나 도덕성(권위, 유전자 변형, 배아)에 반하는 행위

## 다. 취득절차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발명을 기술하는 특허출원의 심사를 바탕으로, 특허청의 인정에 따라 특허를 취득한다.

### 1) 출원서 제출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 가능하다.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이름, 현지 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 출원서(Request), 명세서 및 클레임(Specification & Claims), 필요한 도면 및 요약, 위임장, 발명자 선언서, 우선권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2) 출원공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특허청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공보에 원인과 출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특허법 제35조)

### 3) 실체심사

특허법에 따라 실체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예전 크로아티아 특허법에 의하면 실체적 심사 없이 부여되는 특허인 '합의 특허(consensual patent)'가 존재하여 일반 특허 내지 합의 특허 중 한 가지 방식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21일 새로운 특허법이 의회에서 채택되며 실용신안제도가 도입되었고, 합의특허는 2020년 2월 19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출원인이 실체적 심사요청 시 특허출원의 실체에 대한 심사절차를 실시한다. 심사하는 동안, 신청자는 특허 청구에 대한 수정이나 추가적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

### 4) 공고

해당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사무국은 특허권 부여에 관한 결정서를 발행하고, 특허권은 특허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무국 관보에 게재한다. 한편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무국은 특허권 부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 5) PCT 절차 이용

크로아티아는 특허협력조약(PCT)가입국으로 국제출원인은 누구든지 크로아티아를 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라. 특허권의 효력

### 1) 존속기간

실체적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2) 이전 및 실시

특허권자는 특허 존속기간 중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그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한편 특허권자에게는 출원일로부터 4년,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 내에 특허를 실시해야 하는 실시의무가 있다(특허법 제68조).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및 불복항소

크로아티아에서는 기본적으로 특허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청의 1심 결정에 대해 항소위원회에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는 SIPO의 결정 통보로부터 3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한다.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 분쟁은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2) 무효청구

특허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무효청구가 가능하다. 무효청구는 특허 존속기간 내에 누구든지 언제나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79조~제83조).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권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 바. 비용

2020년 기준 특허 출원 신청서 작성 수수료와 비용은 각 100 HRK, 1,200 HRK이다. 그 외 심사청구료, 특허 인증서 비용, 유지비용 등이 발생한다.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새로운 특허법이 2020년 2월 20일 발효되며 기존의 '합의 특허'를 대신하여 실용신안(Utility Model)이 도입되었다. 실용신안의 경우 생명공학, 화학, 제약 분야가 아닌 제품만 보호 가능하며, 공공정책이나 도덕성에 반하는 발명은 보호받을 수 없다.

### 나. 등록요건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신청서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아닌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

### 다. 취득절차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법 및 특허규정에 따라 실시하는데, 형식적 심사만을 거친다. 새로운 법은 실용신안 등록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있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실용신안의 권리자는 실제적 조사를 거치지 않는 권리에 근거하여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로 전환하기 위한 실제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비용

실용신안권 출원 신청료가 760 HRK, 그 외 등록료, 유지비용 등이 발생한다.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크로아티아에서 산업 디자인에 의해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산업디자인 적용과 관련하여 실시해야 할 보호요건 및 전체 절차는 산업디자인법 및 산업디자인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나. 등록요건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신규성이라는 점에 관해서, 등록절차는 제품이 유통되기 전이나 설계 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디자인 물품의 분류체계는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에 따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디자인법 제7조~제9조).

- 설계의 정의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디자인
- 공공의 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기술적 계획, 구상만을 표시하는 디자인
- 상표 또는 저작물의 부정 사용을 구성하는 디자인
- 이전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를 사용한 디자인
- 파리협약 조항에서 다루는 배지, 엠블렘을 권한없이 사용한 디자인

## 다. 취득절차

### 1) 출원

출원서(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로카르노 의장 국제분류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물품 이름, 도면 또는 사진, 우선권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 2) 심사

특허청은 접수된 출원서가 법률 및 규정에서 정한 정식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소정의 수수료 및 절차적 부담금에 대해 심사하며, 크로아티아에서는 실체적 심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디자인법 제31조). 따라서 등록 신청을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향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별적 특성을 직권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설계자 및 기타 규정된 표시, 보호할 설계의 사진 또는 그래픽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 출원서 및 산업디자인 보호요건에 대한 소정의 심사절차를 실시한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산업디자인 등록 결정서를 발행하고 산업디자인 관련 자료를 특허청 관보(크로아티아 지적재산권 관보)에 게재한다.

**라. 디자인권의 효력****1)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 중에는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과 관련하여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물품 수입 또는 양도, 타인에게 위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2)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마다 4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은 최장 출원일로부터 25년이다.

**마. 심판제도****1) 이의신청**

크로아티아에서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특허청이 특정 상표, 디자인 또는 특허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신청인은 자그레브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무효심판제도**

디자인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무효청구가 가능하다. 무효청구는 존속기간 내에 누구든지 언제나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법 제44조).

**바. 비용**

출원서 접수 수수료 및 접수비용이 각 50HRK, 200HRK, 디자인권의 유지비용 및 등록비가 400HRK, 그외 갱신요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2.4. 상표****가. 보호대상**

상표는 시각적인 표시, 디자인, 문자, 숫자, 기호,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 삼차원 형상, 색채 및 이들의 조합으로서, 취급하는 상품·서비스를 타인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 구별하는 표지로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정의되고 있다. 상표, 서비스마크, 단체상표, 보증상표로 그 종류가 나누어진다(상표법 제2조, 제53조, 제54조)

## 나. 등록요건

크로아티아 상표법 제9조,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절대적 거절사유, 상대적 거절사유 등 상표의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표지
- 등록이 요구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에 관해 식별력을 갖지 않는 표지
- 거래에 있어 종류, 질, 양, 용도, 가치, 지리적출처, 상품의 제조시기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기,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다른 특징을 표시하기 위해 제공되는 표지 또는 표시에만 관련되는 것 현재의 언어 또는 선의를 갖고 확립된 거래실무에 있어서 관용된 표지
- 이전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하여 크로아티아 공화국 대중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 이전 등록된 상표권과 동일 유사하며 이전 상표권이 크로아티아 공화국에서 저명하여 해당 상표의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취득절차

#### 가) 출원

출원서(출원인의 주소, 성명, 니스분류에 상품 또는 서비스 및 그 구분), 상표 견본 등이 필요하다. 크로아티아는 한 출원에 다분류의 상품 및 또는 서비스를 특정하는 다분류일출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나) 심사

심사관은 출원서에 정보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고 상표의 절대적 거절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하며(상표법 제34조), 상표에 대해 출원공개제도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 다) 공고

실체심사 결과 등록거부의 절대적 거절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특허청은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을 인정하고 해당 자료를 관련 규정에 의해 관보에 게재한다(상표법 제43조).

## 2) 등록기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관보의 발행 기간, 상표 등록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3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 전체 절차는 9~12개월이 걸린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가 등록이 되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상표법 제11조, 제19조),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한편 상표권은 영업과 관계없이 양도가 가능하다(상표법 제38조)

## 2)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해당 상표에 대해 등록이 되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해당 상표의 상대적 거절사유에 입각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상표법 제44조). 특허청은 이러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상표권의 효력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 2) 무효심사 청구

공인된 국가기관의 요청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상표법 제9조(상표권 등록을 거부하는 절대적인 이유) 및 제10조(상표권 등록거부의 상대적 사유)에서 정한 상표권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수행하여 결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65조 등).

## 3) 불사용취소

등록된 상표가 연속하여 5년 이상 크로아티아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심포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불사용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20조).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바. 비용

상표권 출원서 수수료 및 접수비용이 각 100HRK, 500HRK(개인상표 기준) 상표권 유지비용 및 등록비 등이 약 1200HRK, 그 외 인증서 발행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문학, 과학, 예술 등 창의적 영역의 작가들은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저작권자의 그러한 권리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의 체계를 저작권이라고 본다. 저작권법상 기본적인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인간의 지적 창조성이 요구된다.

저작권법에서 독창성이란 절대적인 참신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주관적 의미에서의 참신함이 요구된다. 작가가 자신에게 알려진 다른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주관적으로 독창적이라고 여겨진다.

#### [크로아티아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예시 ]

- 언어 작품(서면 작품, 구두 작품, 컴퓨터 프로그램)
- 뮤지컬 작품
- 드라마
- 안무와 판토마임 작품,
- 시각 예술 작품(그림, 조각, 그래픽 분야) 및 기타 시각 예술 작품,
- 건축 작품
- 응용 예술 및 산업 디자인 작품
-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해 생산된 사진 등 작품
- 시청각 작품(영상 작품, 영화 창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작품)
- 지도 제작 작품, 도면, 평면, 스케치, 표 등과 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특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자는 합의된 조건하에서 복제, 공연, 녹음, 방송, 번역 또는 작품의 각색을 금지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경제적 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자의 도덕적 권리는 저자가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위임했는가에 관계없이 저작권자에게 남아있다.

####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권의 효력은 저자의 도덕적 권리(저자의 개인적, 지적 유대를 보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경제적 권리, 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한 기타 이해관계로 구성된다. 또한 소위 '저작인접권'으로 저작권 작품의 공연, 제작, 배급, 방송 등에 관한 예술적 표현의 권리 및 법적 보호와 조직적, 사업적, 재정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 역시 보호한다.

#### 라. 등록요건, 취득절차

다른 지적재산권과는 달리 행정적 절차 또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3.1. 사법구제

특허권자 또는 독점 실시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상업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으며, 항소는 크로아티아 고등 상업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최종 상소법원은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대법원과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다.

침해 대상이 특허로 보호되는 방법인 경우, 입증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구제 수단으로, 잠정 조치, 특정 행위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및 폐기청구가 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 3.2. 행정구제

상표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즉, 상표법 제1항에 따른다. 특허법 제142조 제1항, 상표권자 또는 특허권자는 표지가 표시된 상품에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그 상품 생산에 사용한 물질, 즉 특허권 침해로 생성되거나 취득된 상품에 대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 3.3. 형사구제

크로아티아 공화국 형법에 따라 보호 상표 및/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상표 및/또는 특허권 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관할 주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88조 제3항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려고 의도되거나 이용된 물품은 법원에 의해 몰수 또는 몰수 및 파기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IX. 폴란드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4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4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54



### 1.1. 개요

폴란드는 1920년부터 법률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해왔으며, 근대에 와서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IPL) 같은 지식재산 관련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와 같은 국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2020년 현재 폴란드의 등록 및 보호 법규는 지식재산법(IPL), 저작권법(Neighbouring Rights) 등이 있다. 지식재산법(IPL)에서 상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그리고 지리적 표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할 경우 민사 및 형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 외 등록 상표, 회사명, 부정경쟁 행위,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불특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품 또는 그 장식의 선, 외곽, 색채, 형태,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부터 생기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및 상품 또는 포장의 3차원 형태, 소리 등 다른 사업체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활동의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한편, 폴란드는 최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IP 전문법원은 바르샤바, 그단스크, 포즈난, 루블린, 카토비체 5개 지방법원과 바르샤바, 포즈난에 위치한 2심 항소법원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전문법원은 유럽연합 상표, 디자인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그 중 바르샤바 IP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품, 실용신안, 집적회로 지형, 식물 품종 및 회사 영업 비밀(기술적 성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갖게 된다. 그에 따라 국가 특허청의 결정(상표 또는 산업디자인의 무효와 관련된)에 관한 일부 사건은 기존과 같이, 바르샤바의 주 행정 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 심판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이 아닌 폴란드 특허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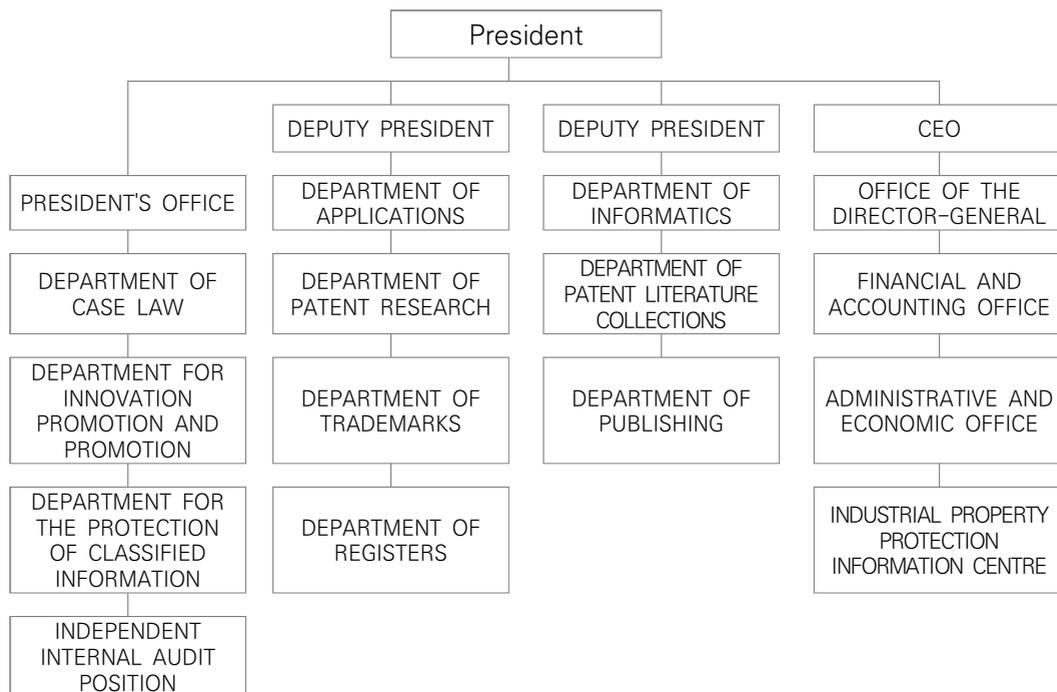
폴란드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90. 12. 25.)	가입	가입	가입 (1997. 3. 4.)	가입	가입

폴란드는 2004년 3월 1일 유럽 특허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유럽 특허기구의 일원이 되었고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폴란드 특허청(Urząd Patentowy : Polish Patent Office, PPO<sup>184</sup>)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의 특허 관리 정부기관으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출원, 각 심사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폴란드 특허청 조직도<sup>185)</sup>

184) <https://uprp.gov.pl>

185) <https://uprp.gov.pl/pl/o-urzedzie/komorki-organizacyjne>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86)</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4,424	155	45,613	7,102	-	-
2015	5,250	139	45,359	6,402	-	-
2016	4,675	135	49,549	6,909	-	-
2017	4,382	117	42,954	7,339	-	-
2018	4,734	115	41,528	7,690	-	-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186)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PL](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PL)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폴란드에서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수 조건으로 신규성(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닐 것), 진보성(해당 기술이 숙련된 기술자에게 해당 특허 분야의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않을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 범위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이 요구된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발명은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일부 "발명"은 특허 보호 측면에서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

-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술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
-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 식물 혹은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혹은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 다. 취득절차

#### 1) 출원서 제출

출원서류로 ①출원서, ②명세서, ③청구항, ④요약, ⑤ 필요할 경우에는 도면, ⑥위임장(인증 불필요), ⑦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⑧양도증 (특허를 취득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 등이 필요하다.

#### 2) 출원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즉시 출원공개된다.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공개를 앞당길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특허출원에 대해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송부되는데, 조사보고서도 공개의 대상이 되고 제3자는 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원공개 전에 출원절차가 특허청에 의해 정지된 경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는 진행되지 않는다.

### 3) 실체심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명세서·청구항에 있어서의 발명의 충분한 개시 등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관이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가 송달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의 응답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부여의 결정이 내려지며, 응답했으나 계속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의 결정이 내려진다.

### 4) 공고

특허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 후, 일정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가 부여된다.

### 5) 기타 절차 이용

파리루트, PCT루트(명세서등의 폴란드어 번역문이 필요), EPC루트(명세서등의 폴란드어 번역문이 필요) 등이 존재한다.

## 라. 특허권의 효력

###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이 부여되면 폴란드 내에서 특허에 관련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특허를 얻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제품을 발명한 발명자 및 단체에 주어진다. 특허에 대한 권리나 소유권은 승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허의 소유자는 특허권 협약을 통해 타인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2) 존속기간

실체적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가 인정된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사후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허여에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대한 특허청의 최종결정, 보호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이유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Art.246 IPC). 특허권자등 권리자는 이의신청 접수에 대하여 통보를 받게 되며, 또한, 특허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Art. 247 IPC). 이의 심사 후, 특허권자 등 권리자는 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의 신청절차는 종결되고 획득한 권리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이의 결정에 대해 불복 소송이 가능하다.

## 2) 재심사

출원인은 특허청이 결정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Art. 244 IPC). 재심사는 특허청장이 임명한 전문가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재심사청구 기한은 명령이 발부된 경우에는 2개월이며, 당사자가 결정 또는 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다. 특허청은 재심사가 청구된 결정 또는 명령을 유지할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번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

## 3) 무효 청구

과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무효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개정 법률에 의해 누구든지 무효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IP 전문 법원이 도입되었지만 바르샤바 IP 법원은 특허 무효 절차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무효화 조치는 특허청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지방행정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해야 한다.

## 바. 비용

2020년 기준 출원료로 550PLN, 특허의 보호기간 처음 3년차까지 480PLN, 그 이후에도 매년 수수료가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폴란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87)</sup>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 구조나 이들의 조합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관한 신규하며 산업적 적용가능성이 있는 물체에 대한 권리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유용성의 요건은 최근 개정법률에서 대체됐다.

187) <https://uprp.gov.pl/pl/przedmioty-ochrony/wynalazki-i-wzory-uzytkowe/wynalazki-i-wzory-uzytkowe-procedura-krajowa/oplaty-zgloszeniowe>

## 나. 등록요건

요구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신청서의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가능성이 아닌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

## 다. 취득절차

기본적으로 특허와 같으며 ①원서, ②명세서, ③청구항, ④도면, ⑤위임장, ⑥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⑦양도증(실용신안에 대한 보호를 취득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부여의 결정후, 일정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부여된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실용신안의 권리자는 실제적 조사를 거치지 않는 권리에 근거하여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에 따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로 전환하기 위한 실제적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마. 비용

2020년 기준 출원료로 550PLN, 보호기간 처음 3년차까지 250PLN, 그 이후 10년차까지 매년 수수료가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폴란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88)</sup>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산업재산권법의 정의에 따르면 (IPL 제102항), 산업디자인은 모든 산업 또는 수공예 제품의 외부,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작업 또는 부품의 형태로서 특히 제품의 라인, 윤곽, 모양, 색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과 장식에 의해 주어진 형태라 할 수 있다(컴퓨터 프로그램 제외).

### 나. 등록요건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품 또는 그 장식의 선, 윤곽, 색채, 형태,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부터 생기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이어야 한다.

188) <https://uprp.gov.pl/pl/przedmioty-ochrony/wynalazki-i-wzory-uzytkowe/wynalazki-i-wzory-uzytkowe-procedura-krajowa/oplaty-zgloszeniowe>

## 다. 취득절차

### 1) 출원

①출원서, ②명세서, ③도면, ④위임장(인증불필요), ⑤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⑥양도증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이 필요하다.

### 2) 심사

디자인권에 대한 출원공개제도는 운용되고 있지 않으며, 실체심사도 없다. 등록요건으로 신규성·독자성이 필요하지만 이들 실체요건은 심사되지 않으며 방식요건·공서양속 위반만이 심사된다. 다만 명확하게 신규성·독자성이 결여된 디자인은 방식요건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디자인권의 효력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 중에는 디자인이 등록된 물품과 관련하여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물품 수입 또는 양도, 타인에게 위의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실시권의 허여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디자인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되는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나 디자인을 제조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 2)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누구나 공보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오로지 제품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정해지는 디자인, 신규성·독자성이 없는 디자인, 다른 제품과 기계적 연결 또는 상호작용 시키기 위해 정확한 형상 및 크기로 복제해야 하는 디자인 등은 부등록사유가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디자인권자에게 반대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특허청의 이의결정에 대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2) 재심사

특허청이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심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3) 무효 청구

디자인 등록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는 디자인의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무효 결정은 IP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바. 비용

2020년 기준 출원비용은 300PLN, 이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동안 5년까지 150PLN, 이후에도 25년까지 존속기간동안 수수료가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폴란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89)</sup>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및 상품 또는 포장의 3차원 형태, 소리 등 다른 사업체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가 보호대상이다. 단체상표, 단체보증상표제도가 있다.

## 나. 등록요건

## [폴란드 상표 등록의 절대적 거절 사유]

- 상표를 구성할수 없는 표시
- 순전히 설명적인 기호
- 악의로 신청한 표시, 공공정책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시
- 국가 기호, 국제기구의 기호 또는 규제기호가 포함된 표지판 등

## [폴란드 상표 등록의 상대적 거절 사유]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시
-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이전 상표와 동일한 표시
- 일반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이전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 등

189) <https://uprp.gov.pl/pl/przedmioty-ochrony/wzory-przemyslowe/wzory-przemyslowe-procedura-krajowa/oplaty-zgloszeniowe>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취득절차

#### 가) 출원

① 신청서, ② 상표견본(도형·색채등의 문자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③ 음향을 녹음한 테이프(음향상표인 경우), ④ 상표사용계약(단체상표, 단체보증상표인 경우), ⑤ 위임장(인증 불필요), ⑥ 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등이 필요하다. 상표 검색은 필수가 아니나, 제3자의 상표를 확인하기 위해 권장된다.

#### 나) 심사

2016년 법률 개정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을 위해 폴란드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해당 관청은 상표등록의 절대적 거절사유만을 심사한다. 예전에는 상대적 거절사유를 모두 심사해 상표권 취득기간이 최소 1년 반 정도가 소요되었고 출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지출이 많았으나 개정법으로 인해 특허청의 상표등록 심사 업무량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볼 때 상표등록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다. 특허청이 절대적인 거부 사유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통지를 보낸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신청자는 주어진 기한 내에 신청을 뒷받침하는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거절이유통지에의 응답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부여의 결정이 내려진다.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2016년 법률 개정으로, 상표의 소유자인 제3자가 서면으로 동의(Letters of consent)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2015년 12월 1일 이후 제출된 상표부터 적용).

### 2)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

상표 등록에는 약 9~ 12개월이 걸리며, 특허청이 절대적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 있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폴란드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상표의 양도는

특허청에 의해 등록된다.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특허청 상표등록부에 변경이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 2)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 마. 심판제도

### 1) 이의신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심사가 폐지됨에 따라, 폴란드에서 상표를 등록한 제3자는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타인의 상표 등록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표가 등록되면 제3자는 유사 또는 동일상표의 선등록자로서 특허청 회보 공시일 이후 3개월 안에 자신의 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하다는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다시 상표등록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후 특허청이 이의신청을 심사하며, 상표출원 신청자에게도 이의신청 접수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만약 상표출원 신청자가 이의신청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허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결정문을 발급해야 한다.

### 2) 재심사

신청이 거부된 경우 특허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상표 등록이 거부된 후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또다시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3) 무효 청구

상표가 등록되면 제3자는 이미 취득한 상표권을 근거로 하는 사유 또는 절대적인 거부 사유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가 제3자가 이미 취득한 상표권에 근거한 경우 권리보유자만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IP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4) 기타 취소 신청

폴란드 법에 따라 등록 상표가 등록 후 5년 동안 보호 대상 상품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 상표가 취소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이를 막기 위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외 상표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도 제3자는 특허청에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바. 비용

2020년 기준 출원비용은 1개류 기준 450PLN(전자출원의 경우 400PLN), 이후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상세한 비용은 폴란드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sup>190)</sup>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폴란드의 저작권에 관한 주요 법적 규칙은 1994년 2월 4일에 채택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은 그 이후로 EU 국제기준에 맞게 수차례 수정되었다. 폴란드는 베른협약 가입국이다. 법 제1(1) 조에 따라 저작물은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활동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 (CJEU) 판례법의 독창성 요건과 동일하게 이해된다.

#### [폴란드 저작법상 저작물의 종류 예시]

- 단어, 수학적 기호, 그래픽 기호로 표현된 저작물 (문학, 저널리즘, 과학 및 지도 제작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시각 미술 작품
- 사진 작품
- 산업 디자인 작업
- 건축, 건축 및 도시 계획 및 도시 계획 작업
- 음악 및 음악 및 텍스트 작품
- 극적, 극적 음악적, 안무 및 무언극 작품
- 시청각 작품 (영화 포함) 등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폴란드 저작권법은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에게 모든 개발 분야에서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이용,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저작물 사용 방법 (17조).

190) <https://uprp.gov.pl/pl/przedmioty-ochrony/znaki-towarowe/procedura-krajowa-/oplaty-zgloszeniowe>

**다. 저작권의 효력**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의 효력은 저자의 도덕적 권리(저작인격권)에도 미친다. 사적 복사,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사용 등 소위 ‘공정한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에 예외를 두고 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저작권자는 IP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라. 등록요건, 취득절차**

폴란드에는 저작물 등록이 없으며,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 3.1. 사법구제

특허, 상표, 디자인권 침해의 경우 민사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장 또는 금지 명령(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적용되는 임시 판결)을 제출함으로써 침해 절차가 개시된다. 원고와 피고는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에서 당사자는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등 금전적 구제책과 침해중지, 불법적 이익의 포기, 제품의 시장에서의 퇴출 파기, 가처분 등 비금전적 구제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폴란드는 2020년 7월부터 IP 전문법원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폴란드 특허청에서만 가능했던 IP 사건 관련 반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법원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근거한 침해 소송이 제기됐을 때, 예전에 피고는 해당 상표 및 디자인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특허청에 접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반소로 해당 상표 또는 디자인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 3.2. 행정구제

국경에서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는 바르샤바에 있는 관세청장에게 세관 당국의 조치(AFA)를 신청하고 독점적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AFA가 허가되면(교부일로부터 12개월의 유효기간을 조건으로), 세관 당국이 폴란드로 들어오는 상품이 AFA가 적용되는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상품을 압류하고 결정권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침해 소송(범죄 및/또는 민사 집행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청구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압류된 물품은 풀려난다. 상표나 디자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도 EU 관세규정(608/2013)을 기반으로 관세 보호를 요청하여 마찬가지로 제품의 압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3. 형사구제

폴란드 지적재산권법은 EU 상표를 포함한 위조 상표 등 상표권 침해행위 및 특허권 침해에 대해 형사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도 특허 관련 범죄(특허권 부여 방해, 특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상표권의 경우 기소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일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검사가 수행한다. 상표나 특허의 경우 형사 사건의 소송 기간은 기소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과 검사의 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에 가기 전에 침해자와 권리자 간 합의에 도달하거나 벌금형으로 종결될 수 있다.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X. 프랑스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57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60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74



1.1. 개요<sup>191)</sup>

프랑스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법률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청은 발명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특허와 실용증의 2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실용증은 특허와 그 보호 대상에 차이가 없으며 타제도의 실용신안과는 무관하다. 특허와 실용증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증 출원에는 예비 조사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실용증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 또는 모델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프랑스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표시가 가능한 표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어문·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영상·소프트웨어·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창조행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프랑스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의 특징은, 권리 부여 시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침해 소송에 이르는 경우 무효판단과 함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독자적인 심사 체계가 있다.<sup>192)</sup>

프랑스는 파리 제1심 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이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는 파리 항소 법원에서 심리한다.

지재권 침해에 관한 구제절차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191)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프랑스)

192) 다만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L612-12) 특허 가능한 발명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적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 출원이 거부될 여지가 발생하였다.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뿐더러 세관으로부터 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제품 및 관련 도구 등이 압류 보관되어 일정 기간 통관이 보류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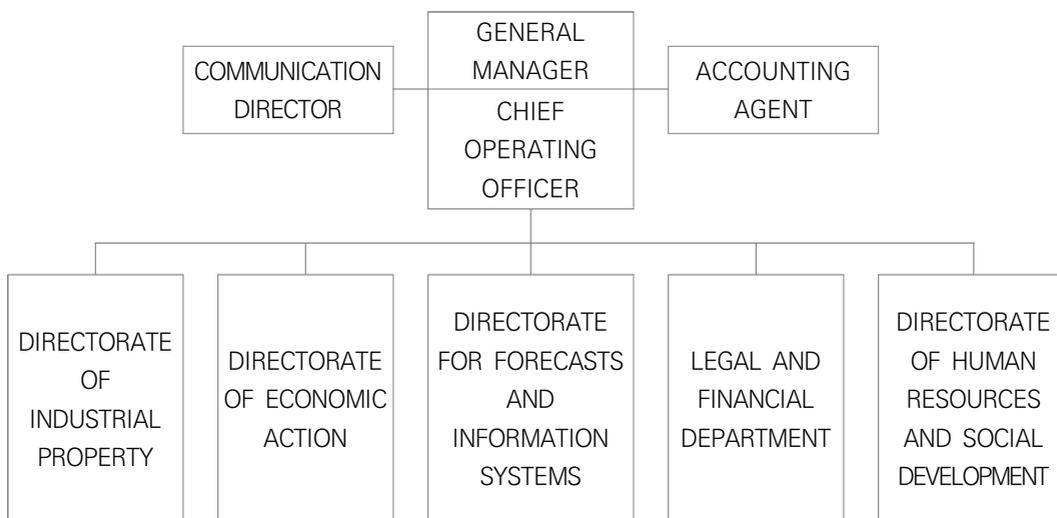
프랑스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78. 2. 25.)	가입	가입	가입 (1997. 1. 7.)	가입	가입

한편,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프랑스 국내 출원은 “국립 산업재산권청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INPI, 이하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이라 함)”이 심사를 한다.



[그림] 프랑스 INPI 조직도<sup>193)</sup>

193) <https://www.inpi.fr/fr/gouvernance-metiers-0>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194)</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25,116	2,033	275,285	18,056	21,781	1,163
2015	25,085	1,994	290,514	17,465	20,138	919
2016	24,714	2,012	283,240	16,030	20,427	1,056
2017	25,040	1,832	279,624	17,496	17,872	1,148
2018	24,741	1,919	308,485	19,013	18,676	834

이탈리아(Italy)  
16체코(Czech Republic)  
17크로아티아(Croatia)  
18폴란드(Poland)  
19프랑스(France)  
20194)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FR](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FR)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발명을 특허 대상으로 하되, 발견과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 창작물, 정신적 활동, 놀이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법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은 발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L611-10).

### 나. 등록요건

프랑스 특허는 발명의 단일성과 신규성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침해 소송시 무효판단과 함께 진보성을 법원에서 판단한다.<sup>195)</sup>

#### 1) 발명의 단일성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프랑스 특허법 규칙도 유럽 특허 조약(EPC)과 완전히 동일한바, 발명의 단일성을 확보하려면 특허청구범위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발명의 단일성 위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중 하나의 발명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거나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발명의 단일성 위반에 근거한 거절 통지는 예비 조사보고 이전 또는 예비 조사보고서 발행과 동시에 한다. 발명의 단일성 위반에 근거한 거절통지가 예비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통지되는 경우는, 예비조사는 첫 번째 특허청구범위에 청구된 발명에 대하여만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복수의 발명을 포함한다고 판단되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더 중요한 발명을 최초 청구항으로 출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신규성

프랑스 특허법은 절대적 신규성이 요구된다. 즉, 출원된 발명은 출원일(또는 우선일)전에 해당 발명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지·공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명이 공표된 경우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국제 박람회에 발명을 출품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

195)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프랑스)

다만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L612-12) 특허 가능한 발명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적 적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허 출원이 거부될 여지도 있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개관

프랑스 국내 특허취득 절차는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에 출원, 특허 요건에 대한 방식 심사, 예비조사, 최종심사, 특허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2) 제출서류

프랑스 특허 출원은 외국어로도 할 수 있으나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프랑스어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R612-21). 이 때 제출되는 서류로는 출원서(출원인의 명칭/주소, 발명자의 성명/주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출원국명,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기재), 명세서 및 청구범위, 도면, 위임장(프랑스의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때는 위임장 불요), 발명자 지정서(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우선권 증명서(우선권 표지 번역 필요)가 있다.

### 3) 방식 심사

특허 요건에 대한 방식 심사는 예비 조사보고서 절차 전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에서 실시한다. 출원 명세서의 결함 유무, 출원 발명의 특허 대상 여부 및 하나의 발명을 청구하는지(발명의 단일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출원 서류가 제출된 후에 우선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요구 사항(출원서에 기재될 필수적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결함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기간 내에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시정된 날이 출원일로 인정된다.

한편, 보호 대상 요건, 발명의 단일성 및 명세서 등의 기재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상기 방식 심사의 결과,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소정 기간 내에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된다. 또한 발명이 단일성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통지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할 수 있으며,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 4) 예비조사 보고서(Rapport de Recherche Préliminaire)

프랑스에서는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심사관의 의견내용이 첨부되는 예비조사 보고서(Rapport de Recherche Préliminaire : Preliminary Search Report)에 대응하여야 하고 대응하지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않는 경우 최종 거절 결정이 통지된다.

출원인은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을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연기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데, 18개월 이내에 예비조사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허 출원은 자동으로 실용증 출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인에게 통보된다(L612-15, R612-55).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은, 출원인이 예비조사 보고서 수령 후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내에 예비조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내며 이 기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최종 거절통지가 발송된다.

#### 5) 최종심사 보고서(Rapport de Recherche)

최종심사 보고서는 예비조사 보고서에 지적된 선행 기술에 대한 출원인의 보정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고 공개된다.

예비조사 보고서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에 의해 신규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등록을 위한 최종 검색 보고서가 공개되는데, 제3자는 최종심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 출원인은 제3자의 의견을 통지받으면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다.

예비조사 보고서에 대응한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에도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청구항이 있다면, 심사관은 거절 통지를 발행하고 출원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드문 경우지만, 신규성 결여를 근거로 한 심사관 거절이 최종 결정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불복으로 파리 항소 법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은 진보성 판단을 근거로 거절을 통지할 수 없다. 예비조사 보고서에 진보성을 부정할만한 선행 문헌이 존재한다고 의견을 밝혔음에도 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에 의해 진보성 결여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최종심사 보고서에 진보성을 위협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고 기재할 수 있고, 이 때 해당 특허청구범위는 추후 법원에서 유효성에 대하여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의 판사뿐이므로, 판사는 특허의 유효성 판단 시, 최종심사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나 그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6) 등록 및 등록기간

심사관이 최종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출원인에게 특허 등록 수수료 및 공보 발행 비용의

지불을 통지한다. 특허는 최종심사 보고서를 포함하여 공개된다. 특허 등록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된다.

### 7) 실용증 출원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은 발명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특허와 실용증의 2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실용증은 특허와 그 보호 대상에 차이가 없다. 즉, 타제도의 실용신안과는 무관하다.

특허와의 차이점은 실용증 출원에는 예비 조사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실용증 출원을 하거나 출원후 우선일로부터 18개월동안 예비조사 보고서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특허출원이 실용증 출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예비조사 보고서는 작성되지 아니한다. 실용증 출원인은 심사과정 없이 등록되는데, 실용증이 등록된 경우 실용증 권리자는 권리 행사에 앞서 프랑스 지식재산권청에 실용증에 대한 예비조사 보고서 작성을 청구하여 작성된 예비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8) 임시특허출원제도(R612-3-1)<sup>196)</sup>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2020. 7. 1. 임시특허출원(demande provisoire de brevet) 제도를 시작하여 기업이 특허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특허출원을 활용하면 출원인은 출원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긴급을 요하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고 임시특허출원 후 12개월 내에 공식적인 특허출원서류를 제출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특허로 전환 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9) 직원의 발명

종업원의 발명은 종업원의 실제 업무에 발명의 임무를 포함하는 업무 계약을 수행하거나 명시적으로 위탁된 연구 및 조사의 수행 중에 한 경우, 당해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한다. 당해 발명의 창작자인 종업원이 추가 보상을 받을 조건은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및 개인 고용 계약에 의해 결정된다(L611-7).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실용증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L611-2).

196) 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 - '프랑스 산업재산청, 임시특허출원 제도 시작'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프랑스&po\\_item\\_gb=EU&po\\_no=19810](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프랑스&po_item_gb=EU&po_no=19810))

## 2) 양도 및 실시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유래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는 서면을 통하여 양도될 수 있고 발명의 실시에 관한 독점 또는 비독점적 실시권 부여의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실시권자가 약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실시를 하는 경우, 특허에 부여된 권리가 적용될 수 있다(L613-8). 권리의 양도 및 변경이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특허 등록 원부에 위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나, 등록 전이라도 양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L613-9).

실시권자는 계약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허권자가 침해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때 특허권자는 실시권자가 제기하는 침해 소송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L615-2).

## 3) 강제실시권

특허 부여 후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만료된 때, 특허권자 또는 그 권리의 승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럽 연합 회원국 또는 다른 유럽 경제 지역 협정 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특허의 대상인 발명의 실시 또는 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준비를 시작하지 않거나 특허의 대상인 물품의 프랑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양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sup>197)</sup> 제3자에게 강제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L613-11).

강제실시권은 파리 제1심법원 (Tribunal de Grande Instance)에 신청하여야 한다(L613-12). 강제실시권은 비독점적 실시권에 해당한다(L613-13).

### 마. 심판제도

등록 특허권을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적용가능성 또는 발명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무효로 될 수 있으나 무효 사유가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무효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L613-25).

### 바. 비용<sup>198)</sup>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관납료는 다음과 같다.

197) 위 '실시' 또는 '판매'가 3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198) <https://www.inpi.fr/fr/comprendre-la-propriete-intellectuelle/le-brevet>

- 특허 또는 실용증명서 제출 : 26유로
- 조사보고서: 520유로
- 특허 부여: 90유로
- 추가 청구: 42유로
- 임시특허 출원비용: 26유로

\* 단, 직원 수 1천명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단체, 연구소 등은 50%를 감면

## 2.2.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 또는 모델로 보호 자격이 있다. 공업 제품 또는 수공예품 어느 쪽도 물품으로 간주되며, 특히 복합 물품에 포함되는 부품, 포장, 외장, 도형 기호 및 인쇄 글꼴은 포함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된다(L511-1).

또한, (1) 물품의 외관의 특징이 물품의 기술적 기능만으로 정해지는 경우 (2)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대체시켜 이와 연결 또는 그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양자의 기계적 결합을 가능하게 하고 두 물품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형상 및 치수를 맞추어야 하는 경우도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그 디자인이 모듈인 시스템에서 호환성을 가지는 물품의 여러 조합 또는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제공하는 디자인 또는 모델은 보호의 적격성이 있다(L511-8).

### 나. 등록요건

프랑스의 디자인 출원은 무심사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하므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 후 무효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보호 요건(신규성 및 독창성)의 실체 심사에 대하여 판단한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디자인의 등록 출원은 출원인의 거주 또는 등기 영업소가 파리에 있거나 프랑스 국외에 있는 경우, 산업재산권청에 신청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된다. 만일 출원인의 거주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또는 등기 영업소가 파리 이외의 프랑스 국내에 있는 경우 등록 출원은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산업재산권청 또는 상사 법원(또는 상사 재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프랑스 국내 디자인 등록 절차는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에 출원, 방식 심사, 등록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등록까지는 약 10개월이 소요된다.

#### 1) 제출서류

등록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로는 출원서(출원인을 지정하고,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개수 및 도면이나 사진의 개수를 기재),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진이나 도면, 보호대상 물품의 설명, 우선권 증명서 및 그 번역문, 위임장(프랑스 국내 대리인을 이용하여 출원할 경우엔 불필요)이 있다.

#### 2) 방식 심사

방식 심사에서는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성 및 독창성 여부는 등록 후 무효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한다. 만일 방식 위반, 공서양속 위반이 있는 경우엔 출원인에게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다.

#### 3) 등록 공고

디자인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하고 공서 양속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 등록 공고가 된다.

#### 4) 간이절차에 의한 디자인 등록

상품 형태가 단기간에 변경되는 업종의 물품에 관하여 일반적인 디자인 등록 절차 외에 간이 절차에 의한 디자인 등록 제도도 있다.

### 라.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25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L513-1).

#### 2) 이전/실시

디자인 또는 모델 등록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그에 대한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다(L513-2). 단, 디자인 또는 모델에 부여된 권한을 수정 또는 이전하는 행위가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위 사항이 디자인 및 모델 등록 원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독점 사용권자는 실시권자는 계약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디자인 등록권자가 침해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521-2).

### 3) 무효 사유

디자인 또는 모델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디자인 또는 모델이 먼저 보호된 식별 가능한 표지를 소유자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인 경우엔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검사는 무효 사유에 관계 없이 직권으로 디자인 무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L512-4).

### 4) 권리의 제한 사유

디자인 등록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다음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L513-6).

- 사적으로 행해지는 비영리 목적의 행위
- 실험 목적의 행위
- 인용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하는 복제 행위로서, 등록 및 권리 소유자의 이름이 언급된 경우

## 마. 심판제도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바. 미등록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 등록을 거치지 않고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등록디자인(unregistered Community design : UCD)이 있는데, 이는 프랑스 제도가 아닌 EU기구인 OHIM에 의한 RCD제도 내에서의 보호로서 EU 내에서 대중에게 처음 공개된 날부터 3년간 보호될 수 있다. 다만 해당 디자인을 모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디자인 창작자가 미등록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 2.3.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표시가 가능한 표지이다(L711-1).

## 나. 등록요건

### 1) 절대적 거절 이유

절대적 거절 이유의 심사는 출원된 상표가 상표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식별력이 있는지 또는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이다(L711-2, L711-3). 거절 이유가 출원의 일부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그 일부만이 거절된다(L712-7).

#### 가) 식별력

일상의 언어 또는 기술적 언어로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필연적 포괄적 또는 일반적인 호칭 구성에 지나지 않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특히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기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진 것, 상품의 성질이나 기능에서 발생하는 형상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표지 등의 경우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나) 비등록사유

산업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1883년 3월 20일 파리 조약(개정) 제 6조의 3 또는 세계 무역기구를 설립하는 협정의 부속서 1C 제 23조(2)에 의해 제외된 표지이거나 공서 양속에 반하는 표지 또는 법률에 의해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히 내용, 품질 또는 출처에 관하여 공중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지 등의 경우에도 등록되지 않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상표등록 출원은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에 의해 거절되지 않고,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 등록을 결정하고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 증명서가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등록 내용이 공고된다.

상표등록 절차는 상표 등록 출원, 방식심사(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등록공고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등록까지는 약 4~6개월이 소요된다.

### 1) 제출 서류

상표 출원시 필요한 서류로는 출원서(출원인을 지정), 상표의 인쇄 견본(상표의 특징), 상표의

설명,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Nice 분류에 따른다), 우선권 증명서 및 번역문, 위임장(프랑스 국내 대리인을 사용하는 경우 위임장 불요), 식별력 취득의 증거(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출원인 경우)가 있다.

## 2) 방식심사 및 등록공고

프랑스 산업 재산권청은 방식 심사를 함에 있어 출원인이 특정한 상표의 견본과 지정 상품·서비스의 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에 관한 거절 이유를 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접수 후 6주 이내에 공고한다(R712-8).

## 3) 이의신청

누구든지 등록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이 거부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L712-3), 위 이의신청이 이유있을 경우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L712-7).

## 라. 상표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 2) 이전/실시

상표에 따른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에 지역적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에 따른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독점적, 비독점적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고 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sup>199)</sup> 권리 이전 또는 질권 설정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로 된다(L714-1).

### 3) 권리의 상실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를 계속하여 5년간 등록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L714-5). 이 외에도 상표권자의 행위 결과,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의 일반 명칭이 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게 된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L714-6).

<sup>199)</sup> The rights under a mark may be wholly or partially licensed on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basis or pledged

## 마. 심판제도

상표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거나, 식별력이 없는 등의 상표등록은 무효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고로 2020. 4. 1.자로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을 통하여 상표 무효 및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산업재산권청 웹사이트에서 무효 및 취소청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sup>200)</sup>

## 바. 비용

출원 기본료는 190유로이고, 지정상품을 추가할 때마다 40 유로씩 추가된다.

## 2.4. 저작권<sup>201)</sup>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정신적 창작물’)의 종류로, 어문·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영상·소프트웨어·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 등이 인정된다.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프랑스는 저작권자에게 공표권·철회권·공연권·복제권 등이 인정된다. 이 중 철회권은 저작자가 이용권을 양도한 이후 철회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사전에 보상할 것으로 조건으로 철회권의 행사가 가능하고, 철회권 행사 이후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 발행을 결정한 때에는, 처음에 정한 조건에 따라 처음에 선택한 양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이용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L121-4).

### 다.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 내용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 사유는 저자의 동의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L122-4, L335-2).

- 전체 또는 부분의 공연 또는 복제
- 저작권 침해 저작물의 판매, 수출 및 수입

200)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프랑스&po\\_item\\_gb=EU&po\\_no=19628](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프랑스&po_item_gb=EU&po_no=19628)

201)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france/france.do>

## 라. 저작권의 제한

저작자는 저작물의 공표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가족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적인 무료공연,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가 명확히 표시된 언론 논평이나 교육 목적의 공연 또는 복제물 배포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L122-5).

## 마.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L123-1부터 L123-12까지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저작권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70년
- 공동 저작물의 경우, 공동 저작자들 가운데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 시청각 저작물은 감독, 시나리오 작가, 대사 작가, 삽입된 음악의 작곡가들 중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 시점을 기산점으로 한다.
- 익명, 무명 또는 집단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 권리의 보호 기간은 저작물이 발행된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기간 만료 후에 공표된 사후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호기간은 출판일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25년
- 저작권자가 프랑스를 위하여 사망하였고, 그 사실이 사망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될 경우엔 저작권 보호기간을 30년간 연장한다.

## 바. 등록절차

저작권은 창조행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하므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실질적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물의 창작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Enveloppe Soleau 또는 집행관을 이용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외에도 국제 저작권등록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안이 추천된다.<sup>202)</sup> 또한 소프트웨어 이용권에 대하여 저작권을 설정할 경우,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설정된 저작권을 산업재산권청에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다.<sup>203)</sup>

202)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france/apply\\_policy.do](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france/apply_policy.do))

203)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france/apply\\_policy.do](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france/apply_policy.do))

## 사. 이전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L131-1). 저작권의 양도는 양도되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양도되는 권리의 이용 범위는 범위, 목적, 기간, 장소에 따라 제한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L131-3). 공무상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지시를 받아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국가에 양도된다(L131-3-1).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L131-4).

## 아. 저작권 이용 계약

저작권 이용 계약에 관하여 출판, 공연, 시청각 저작물제작, 광고물 제작, 소프트웨어 이용권의 담보설정, 언론에 관한 개별 계약이 규정되어 있다(L132 이하).

## 2.5. 기타

### 가. 추가보호증명제도<sup>204)</sup>

프랑스 추가보호증명제도(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는 특허 만료 이후에도 추가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사람 및 동물용 의약품과 식물보호제에 대하여 적용된다. SPC에 의한 보호는 “기본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 내에서” 및 “의약품으로서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특정제품(product), 및 SPC 만료일까지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상기 제품의 의약품으로서의 모든 용도”에 한정된다.

### 나. 지리적 표시

프랑스 지리적 표시(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AOC)는 ‘원산지 명칭’에 관한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진위 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품질 표시의 이름, 관련제품, 지역, 특유한 경우 원재료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350유로이다.<sup>205)</sup>

204)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프랑스)

205) <https://www.inpi.fr/fr/comprendre-la-propriete-intellectuelle/les-indications-geographiques>

**다. 영업비밀<sup>206)</sup>**

프랑스는 2018년 영업보호비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프랑스 상법 L151-1부터 L154-1까지의 규정에 도입되어 제조 비밀 공개와 같은 행위를 규정하였다.

영업비밀 침해는 적법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로 구성되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업 비밀을 은폐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영업 비밀 보유자는 침해자에 대한 금지조치,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탈리아(Italy) 16

체코(Czech Republic) 17

크로아티아(Croatia) 18

폴란드(Poland) 19

프랑스(France) 20

206)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l2ef128e41ed511e38578f7ccc38dcbee/View/FullText.html?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4012000001759b09fbb6a4208add%3FNav%3DKNOWHOW\\_GLOBAL%26fragmentIdentifier%3Dl2ef128e41ed511e38578f7ccc38dcbee%26parentRank%3D0%26startIndex%3D1%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transitionType%3DSearchItem&listSource=Search&listPageSource=8a89c13bf036a44b4bc3353381155ef8&list=KNOWHOW\\_GLOBAL&rank=10&sessionScopeId=4a08aac98b1ffa94cfe782d5e72977913da4b05c0cde0a2de284f47623823001&originationContext=Search%20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Default\)&ScopedPageUrl=Home%2FPracticalLawGlobal%2FknowHowGlobalTopic%2Fw-021-4629&ScopedJurisdiction=France&comp=pluk&navId=0A9A5605D11B2A079337180F0999B354#co\\_anchor\\_a402607](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Document/l2ef128e41ed511e38578f7ccc38dcbee/View/FullText.html?navigationPath=Search%2Fv1%2Fresults%2Fnavigation%2Fi0ad74012000001759b09fbb6a4208add%3FNav%3DKNOWHOW_GLOBAL%26fragmentIdentifier%3Dl2ef128e41ed511e38578f7ccc38dcbee%26parentRank%3D0%26startIndex%3D1%26contextData%3D%2528sc.Default%2529%26transitionType%3DSearchItem&listSource=Search&listPageSource=8a89c13bf036a44b4bc3353381155ef8&list=KNOWHOW_GLOBAL&rank=10&sessionScopeId=4a08aac98b1ffa94cfe782d5e72977913da4b05c0cde0a2de284f47623823001&originationContext=Search%20Result&transitionType=SearchItem&contextData=(sc.Default)&ScopedPageUrl=Home%2FPracticalLawGlobal%2FknowHowGlobalTopic%2Fw-021-4629&ScopedJurisdiction=France&comp=pluk&navId=0A9A5605D11B2A079337180F0999B354#co_anchor_a402607)

### 3.1. 사법구제

#### 가. 개관

민사상 구제절차로는 침해소송, 무효소송이 있다. 특히 침해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의 모든 관련 기능 및 요소와 해석된 특허 청구의 모든 요소를 비교하여 평가된다.

#### 나. 법원 조직

지식재산권의 소송은 1심 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TGI), 2심 법원(Cour d'Appel), 대법원(Cour de Cassation)을 거칠 수 있다.

#### 다. 대응 절차 및 방법

##### 1) 구제조치

##### 가) 청구 방안

지재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구제조치로는 침해금지, 침해품과 침해품의 제조·판매에 사용된 설비의 압수 및 폐기,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있다.

##### 나) 원고 청구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방안

피고는 관련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특허의 유효성에 관하여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정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다투거나 '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ex.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등)고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를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침해여부에 관하여 L613-5부터 L613-7까지의 사유(ex. 사적이고 비상업적 목적의 행위 또는 특허 발명의 대상에 관하여 실험 목적으로 한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의 의약품 조제 행위)를 들어 방어하거나, 원고가 유럽 경제지역(EEA) 내에서 제품의 첫 판매에 동의하여 특허 보유자의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의 경우 상표의 무효 사유, 관련 상표 미사용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반 명칭화로 인한 상표권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방어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피고는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부재(독창성 부족, 보호 기간 만료), 권리 소진 또는 저작권 제한 사유를 들어 방어할 수 있다.

디자인 침해의 경우, 피고는 디자인의 무효 사유, 권리 소진, 권리 예외 사유(개인 및 비상업적 사용, 실험적 사용)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 청구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다.

#### 다) 증거에 관한 내용

당사자는 공개된 문서의 사용, 검색 및 보존 명령(saisie-contrefaço 절차), 증인신문 절차 등을 이용하여 침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형사 소송에서 얻은 증거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민사 소송에서 얻은 증거를 다른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 2) 소멸시효

특허소송의 경우, 무효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침해소송은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L615-8, L615-8-1). 디자인 소송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소송은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민사소송(침해소송)은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L521-3, L521-3-2). 상표권 침해 소송은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L716-4-2).

#### 3) 증거 압류(saisie-contrefaçon)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관할 법원(TGI)에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L521-4). 법원은 법정에서의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침해 물품의 압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침해 용의품 목록 작성과 이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샘플, 침해 용의품 제조 및 판매에 사용되는 도구의 압수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다.<sup>207)</sup> 증거 압류 신청은 대부분 승인되지만, 승인된 조치의 범위가 수정될 수도 있다.

법원의 증거압류 신청 승인은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선택한 전문가를 동반한 집행관에게 명령서에 언급된 건물에 들어가 모든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결정된다.

#### 4) 가처분

권리자는 침해행위가 임박하였을 경우 침해 혐의자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거나 은행 계좌 또는 부동산 압류와 같은 보존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07)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프랑스)

## 5) 최종 구제

### 가) 금지 명령

법원이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금지명령 청구에 따라 법원은 특허 기간 동안 침해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L613-3, L615-3).

### 나) 손해배상

손해 당사자의 이익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결정한다.

### 다) 침해 상품의 폐기

위조품에 대한 민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위조품으로 판단된 물품, 재료 및 주원료에 대하여 상업적 공지, 영구 폐기, 몰수를 명령할 수 있 판결을 공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비용은 침해자가 부담한다(L615-7-1).

## 3.2. 행정구제

### 가. 관련 기관

프랑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는 세관(재무부 관세국: Direction Generale Des Douanes Bureau)에 의한 처리가 일반적이다.

### 나. 구제 방안

권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세관에 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고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세관조치 제도가 있다.<sup>208)</sup>

권리자의 서면 청구에 따라, 세관은 물품을 검사하고 침해물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을 압류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 조치는 권리자가 압류 조치 통지 후 10일 이내에, 변질되는 물품의 경우 3일 이내에, 예방 조치가 제1심 법원장에 의해 명령된 사실, 또는 고소인이 민사 법원 또는 형사 법원에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추후 침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고소인이 배상할 책임을 담보하는 보증 조항을 제출받은 사실 중 하나를 세관 당국에 증명하지 않으면

208)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해외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프랑스)

해제되고 세관 당국은 이를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L521-14, L614-32, L716-8). 압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L521-14, L614-32, L716-8).

한편 권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세관은 침해품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상품을 압류 보관할 수 있다(L521-15, L614-33, L716-8-1).

### 3.3. 형사구제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소유자임을 부당하게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지 7,50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L615-12).

특허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자는 3년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한 상품에 대한 처벌은 7년의 징역과 75만 유로의 벌금으로 증가된다(L615-14). 위반의 반복이 있는 경우 또는 위반자가 침해를 받은 당사자와 현재 혹은 과거에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형벌이 가중된다(L615-14-1).

디자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한 자는 3년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이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한 상품에 대한 처벌은 7년의 징역과 75만 유로의 벌금으로 증가된다(L521-10).

침해를 범하는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판매, 공급, 대여 등의 행위를 한자는 4 년의 구금과 400,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 행위가 조직범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한 상품에 대한 처벌은 7년의 징역과 75만 유로의 벌금으로 증가된다(L716-9).

프랑스 또는 해외에서 출판된 작품을 프랑스에서 위조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수출, 수입하면 3년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일 위반이 조직 범죄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엔 7년의 징역과 75만 유로의 벌금으로 증가된다(L335-2). 저작물이나 보호받는 대상을 허락 없이 명백히 공중에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고의적으로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공중송신하여 제공할 경우 3년의 징역과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L335-2-1).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XI. 핀란드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38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384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397



## 1.1. 개요

핀란드는 특허·상표·디자인 외에도 저작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구제절차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한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핀란드 형법에 49장 2절의 ‘지식재산범죄’를 규정하는 것 외에도 각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는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지만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다.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나 장식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이 신규성과 창의성을 가지면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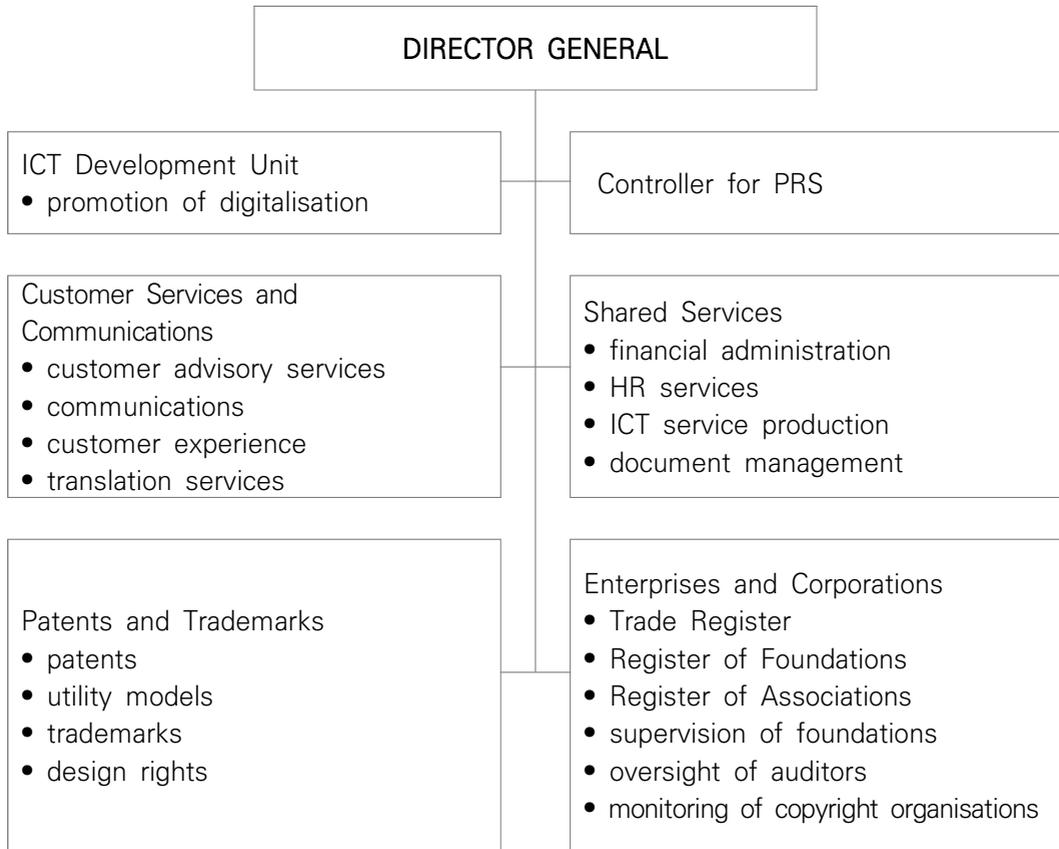
핀란드 상표법 규정에 따라 독점권을 취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징으로 업무상 사용되는 표시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핀란드는 문학 또는 예술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표현된 가공적 또는 서술적 표현물, 음악저작물, 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수공예품, 산업미술제품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핀란드 국내 지식재산 관련 기관은 경제고용부(MEAE) 산하의 핀란드 특허청(FINN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H)으로, 특허 및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sup>209)</sup>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분쟁은 법원(market court)에서 담당하고 있다.

<sup>209)</sup> <https://www.prh.fi/fi/index.html>



[그림] 핀란드 특허청 조직도<sup>210)</sup>

핀란드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0. 10. 1.)	가입	가입	가입 (1996. 4. 1.)	가입	가입

한편, 핀란드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210) [https://www.prh.fi/en/presentation\\_and\\_duties/organisaatio\\_19.html](https://www.prh.fi/en/presentation_and_duties/organisaatio_19.html)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211)</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3,615	126	11,634	3,232	1,406	74
2015	3,291	127	11,589	3,310	1,212	205
2016	3,078	108	12,736	2,860	-	-
2017	3,218	139	10,942	3,384	990	249
2018	3,113	100	10,485	3,873	887	105

211)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FI](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FI)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산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분야의 신규성·진보성 있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 1) 발명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미적 창조물,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지적 활동, 게임,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1조).

#### 2) 신규성

출원된 발명은 글, 발표 등을 통하여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발명이 공표된 경우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국제 박람회에 발명을 출품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된다(2조).

###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취득 절차

핀란드 특허 보호 절차로는 핀란드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하거나 유럽 특허와 같은 지역 특허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EPC) 외에도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단일 국제 출원 신청을 제출하는 방안이 있다. 이하에서 기술하는 것은 핀란드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핀란드 특허 등록은 출원, 형식심사, 실질심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 2) 출원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7조). 출원서엔 발명에 대한 설명 및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도면(필요할 경우)을 첨부한다. 이 때, 발명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분야의 숙련자가 발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출원이 거부되거나 허가된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다.

출원서는 핀란드어, 스웨덴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른 언어로 작성하였더라도 번역을 준비하여야

한다(8조).<sup>212)</sup> 출원인이 핀란드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유럽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출원하여야 한다(12조).

### 3) 형식심사

출원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고 수수료가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일부가 누락된 경우, 핀란드 특허청으로부터 기한 내 결함의 시정을 통지받고, 기한 내에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법8조)

### 4) 실질심사

형식심사 후 특허 출원은 기술분야의 전문 특허 심사관이 신규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평가하는 실질심사로 진행된다. 발명품이 특허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특허 출원에 장애가 없는 경우 특허 심사관으로부터 승인을 통지받는다. 반면에 발명이 특허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특허 출원에 다른 장애가 있을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한다.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출원서 수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기각되나, 기한 만료 후 4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수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동일한 기간 내에 규정된 복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기각된 출원서가 복원될 수도 있다(15조)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를 검토하며 심사를 진행하고, 인쇄 수수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의견 진술 요구 또는 거절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만일 거절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특허가 출원된 발명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법원의 최종 결정 시까지 특허 부여 절차가 중지될 수 있다(법 제17조).

### 5) 특허 등록

‘특허 등록부’란 핀란드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 및 핀란드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럽 특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로(법령37조),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등록부에 기록된다(법령38조).

### 6) 처리 기간

특허를 부여받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2.5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sup>213)</sup>

212) 출원서 작성사항 중 일부(ex. 발명의 설명)가 영어로 작성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보이나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 작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핀란드어 및 스웨덴어로 작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13) 핀란드 특허청 <https://www.prh.fi/en/patentit/frequentlyaskedquestions.html#What%20is%20a%20patent?>

### 7)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핀란드는 대한민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신속 심사 신청을 통한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다.

#### 다.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 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 동안 유효하다(법 제40조). 예외적으로 의약품 및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하여 추가보호인증제도(SPC)를 이용하여 최대 5년(소아용 의약품의 경우 5.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 갱신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특허가 소멸될 수 있다(법51조).

##### 2) 보호 범위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법제39조).

##### 3) 이전/실시

특허권자가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 그는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법43조). 특허 양도 및 실시권에 관한 사항은 요청시 특허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 4) 강제실시권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발명이 핀란드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희망하는 자는 발명이 작동하지 않는 합법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강제 실시권을 취득할 수 있다(법45조).

##### 5) 특허의 무효

‘발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발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사유가 확인되면 법원으로부터 특허가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법52조)

#### 라. 심판제도

부여된 특허를 무효로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PRH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제기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법원에 특허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특허 보유자는 특허청에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24조). 이 때, 이의제기의 결과 특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출원 당시 명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25조). 출원인은 제3자의 이의 신청에 대한 특허청의 최종 결정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최종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법26조, 법27조).

### 마. 추가보호인증(SPC)

추가보호인증(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은 특허 만료 이후에도 추가의 독점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사람 및 동물용 의약품과 식물보호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SPC에 의한 보호는 “기본 특허에 의해 부여되는 보호범위 내에서” 및 “의약품으로서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특정제품(product), 및 SPC 만료일까지 시장판매허가를 받은 상기 제품의 의약품으로서의 모든 용도”에 한정된다.

SPC는 특허 기간 20년이 만료될 때 효력을 발생하는데, 최대 5년까지 부여되고 소아용 의약품과 관련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은 경우 요청 시 추가로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추가보호인증을 받기 위하여 핀란드 특허청에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법70조), 추가보호인증은 특허와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며 동일한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된다(법70조d).

### 바. 비용.

출원시 관납료는 500유로, 전자출원(온라인 서비스 또는 EPO를 통한 온라인 특허 출원 신청) 400유로, 15개 이상의 각 청구에 대한 추가 수수료 50유로가 소요된다.<sup>214)</sup>

## 2.2. 실용신안<sup>215)</sup>

### 가. 개관

실용신안은 특허와 유사하게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제품의 제조, 판매, 사용 및 수입과 같은 상업적 활용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을 양도하거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되는 발명을

214) 핀란드 특허청 <https://www.prh.fi/en/patentit/pathakmaks/pathakmaks.html>

215) 핀란드 특허청 <https://www.prh.fi/en/hyodyllisyysmallit.html>

사용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실용신안을 부여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인데, 심사 과정에서 신규성, 진보성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심사만 진행된다.

간단한 고안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도용당하고 복제당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용신안을 통하여 미리 권리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나. 보호대상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이 부여되고, 화합물, 식품 또는 의약품 및 미생물 발명품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미적 창조물, 계획, 규칙 또는 방법, 지적 활동, 게임,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 제공은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외에도 동식물 품종, 행동 양식, 사용이 도덕성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발명의 경우 실용신안이 부여되지 않는다.

## 다. 취득절차

### 1) 출원

실용신안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핀란드 특허청(PRH)에 실용신안 출원서를 제출하고 2개월 내에 등록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2) 형식심사

출원서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출원 수수료가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심사를 시작하고, 서류 누락 또는 수수료 미납이 확인될 경우 출원인에게 시정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2개월 내에 이를 확인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 3) 등록 가능성 확인

실용신안이 부여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용신안의 제외사유(ex. 동식물 품종)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실용신안 출원에 포함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

만일 출원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발견되는 경우, 출원인은 핀란드 특허청으로부터 수정 지시를 요구받고 2개월 내에 수정하여야 한다.

#### 4) 등록 및 게시

실용신안 출원서가 승인되면 실용신안 등록부에 입력하고 출원인에게 등록 증명서를 송부하며 실용 신안 공보에 등록한다.

#### 5) 거부 및 불복절차

핀란드 특허청으로부터 수정 지시를 요구받고 2개월이 초과하도록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 후에도 특허청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 출원인은 거부 내용이 기재된 결정문 송달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6) 특허출원의 전환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도 있고, 특허를 출원한 다음 이후에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방법이나 용도가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실용신안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4년간 유효한데,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1차 4년, 2차 2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최대 보호 기간은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10년이다.

### 마. 심판제도

등록된 실용신안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핀란드 특허청에 무효를 구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이 무효로 되는 사유로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이 부인되거나, 발명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특허 출원이 위법하게 실용신안 출원으로 전환된 경우 등이 있다(실용신안법 19조). 무효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에 실용신안권자에게 신청서가 전달되는데, 실용신안권자는 2개월 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무효 요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 기각(유효), 일부 인용(일부 무효), 신청 인용(전부 무효)이 있고,

실용신안 권리자는 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결정 후 60일 내에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신청인 역시 신청 기각(유효)결정이 이루어져 불복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바. 비용

등록비(1년~4년 보호)는 250 유로, 전자는 200 유로이며 5개 이상의 청구에 대한 추가 수수료는 20유로이다.<sup>216)</sup>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디자인은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나 장식의 특징으로 이루어진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을 의미한다(디자인법 1조)

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국장, 국기 또는 기타 엠블렘이나 상징, 또는 이들과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디자인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하다(디자인법 2조, 4조).

###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디자인 등록기관은 핀란드 특허청으로, 디자인 출원은 핀란드 특허청에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출원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당 출원서엔 디자인 작성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를 경우 디자인권이 출원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허청에 등록 출원서를 제출한 후엔 디자인을 변경할 수 없다.

디자인 등록출원은 출원일에 즉시 공개되는데, 만일 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고자할 경우엔 출원 당시 비밀 유지를 요청함으로써 최대 6개월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다(법 19조).

#### 2) 심사 및 결정

출원 방식 및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고, 디자인 등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16) 핀란드 특허청 <https://www.prh.fi/en/hyodyllisyysmallit/hinnasto/hyodmaksut.html>

승인되는데, 디자인 등록에는 평균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만일 출원에 흠결사항(디자인의 신규성,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창작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지 못한 경우 등)이 발견될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은 후로부터 2개월 내(서면으로 연장 가능)에 수정하여야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출원이 기각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법 21조).

#### 다. 디자인권의 효력

##### 1) 보호기간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5년 동안 4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대 25년까지 유효하다(법24조).

##### 2) 제한 사유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적 사용, 실업 목적의 사용, 교육 목적의 사용 등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행사가 제한된다.

##### 3) 이전/실시

디자인권은 양도될 수 있고 실시권이 타인에게 부여할 수도 있는데(법 26조), 해당 내용은 디자인 등록부에 입력되어야 한다(법 27조)

#### 라. 심판제도

등록된 디자인은 월 1회 발행되는 Design Gazette에 게재되는데, 출판 후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부에 승인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3자는 등록 게시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핀란드 특허청에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로 작성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18조).

이 경우 이의 신청은 반대하는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중 이의를 제기하고자하는 디자인을 지정한 다음 반대하는 진술과 근거를 기재하여야 하며, 만일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21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디자인 권리자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상표는 핀란드 상표법 규정에 따라 독점권을 취득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징으로 업무상 사용되는 표시로(상표법 2조), 상표는 회사에서 제조하거나 생산 한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등록요건

#### 1) 식별력

상표는 무역 과정에서 상표권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특히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기를 지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등의 사유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법 11조).

#### 2) 비등록 사유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공서 양속에 반하는 표지 또는 법률에 의해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 제품 또는 서비스의 특히 내용, 품질 또는 출처에 관하여 공중에게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지,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등록되지 않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법 12조).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 1) 출원

상표 등록기관은 핀란드 특허청으로, 상표 출원은 핀란드 특허청에 온라인 출원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영어로도 출원할 수 있으나 출원 시 처리 언어로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를 선택하여야 한다(법 16조).

등록출원서엔 출원인의 인적사항 외에도 등록이 필요한 상품 또는 서비스 목록(Nice 분류에 따른다)과 상표 요건을 충족하는 표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16조). 이 경우 상품은

1~34까지, 서비스는 35~45까지의 항목으로 분류되고(ex. 의류: 25, 통신서비스: 38) 출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분류를 변경할 수 없다.<sup>217)</sup>

## 2) 심사

상표 등록의 심사는 분류 및 출원 정보와 같은 상표 출원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 이후, 상표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원이 방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거부사유에 해당될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2개월 내에 결함을 수정하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한다(법 21조).

만일 2개월이 초과하도록 출원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출원서는 흠결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고, 출원인의 진술 후에도 등록에 지장이 있을 경우엔 출원이 거부될 수 있다(법 21조). 또한 출원인은 위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기한 연장에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법22조).

## 3) 등록

출원이 상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허청은 상표를 등록하고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등록을 게시한다(법 24조). 만일 등록이 거부될 경우, 위 결정에 대하여 60일 내에 법원에 항소하여야 한다.

상표 심사가 OA(Office Action)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된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상표권의 내용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표시가 있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법 6조, 7조).

### 2) 이전

상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고 등록된 상표의 이전은 상표 등록부에 입력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38조).

217) 핀란드 특허청 <https://www.prh.fi/fi/tavaramerkki/tavaramerkinhakijalle/tavaroidenjalpalveluidenluokitus/tavaroidenjalpalveluidenvalintajailmoittaminenhakemuksessa.html>

### 3) 실시권

상표권자는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실시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에게 권한을 다시 부여할 수 있다(법 42조).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출원에 대한 실시권은 상표 등록부에 입력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법 43조).

### 4) 보호기간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마다(마감일 1년 이전 또는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갱신될 수 있으며 기한의 정함이 없다.

### 5) 권리의 상실

상표 등록 후 5년간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5년 연속 사용이 중지된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법 46조).

이 외에도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의 일반 명칭이 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오인을 야기할 우려가 있게 된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법 47조).

## 마. 심판제도

등록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청에 서면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표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상 청구는 법원에서만 가능하나, 상표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법원과 특허청 모두에서 가능하다(법 53조, 54조, 58조). 다만 동일한 상표에 관한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일 경우 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신청은 특허청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특허청에서 처리하던 신청 사건은 소멸하게 된다(법 61조).

특허청 역시 법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수정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법 100조).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 또는 예술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표현된 가공적 또는

서술적 표현물, 음악저작물, 저작물, 영상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수공예품, 산업미술제품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지도와 도형적 소묘 또는 도면적으로나 입체적으로 제작된 저작물 및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로 본다(저작권법 1조).

#### 나. 저작권의 내용(저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원형대로나 변경된 형태로, 또는 번역이나 다른 문학·예술적 형태나 다른 기법으로 각색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그 저작물을 이용할 배타적 권리이다(법 2조).

#### 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은 저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공동 저작물의 경우 최후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해로부터, 영상저작물은 영상저작물의 주된 감독이나 대본 저작자 또는 대화 저작자 또는 영상저작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작곡가 중 최후로 사망한 사람이 사망한 해로부터 각 70년간 존속한다(법 43조).

익명, 무명 또는 집단 저작물의 경우 배타적 권리의 보호 기간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존속하고,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엔 해당 저작물이 창작된 해로부터 70년간 존속한다(법 44조).

핀란드 법률에 따라 보호 받았던 저작물로서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거나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 그 저작물을 최초로 발행하거나 공표하는 사람은 그 저작물에 대하여 법 2조의 권리를<sup>218)</sup> 취득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저작물이 발행되거나 공표된 해로부터 25년간 유효하다(법 45조).

#### 라. 저작권의 이전

저작권은 법 3조<sup>219)</sup>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전체 또는 일부 양도될 수 있는데(법 27조), 다른

218) 권리 내용에 관하여 2.5-나.항 기재 참조

219) 핀란드 저작권법 3조

- (1)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2) 저작물은 저작자의 문학 또는 예술적 명성이나 그 인격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저작자를 해치는 형식이나 내용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서도 아니된다.
- (3) 저작자는 저작물의 명시적이고 특정된 사용에 대하여만 이 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구속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약정이 없는 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권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법 28조).

공연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도는 3년간 유효하며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법 30조).

### 마.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제한 사유로는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저작의 복제(법 12조), 교육활동 및 학문 연구를 위한 복제(법 14조) 외에도 공표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리나 동영상의 녹음·녹화 방법의 복제(법 17조) 등이 있다.

### 바. 취득절차

저작권은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sup>220)</sup> 핀란드 저작권법 상으로도 등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특정 시점에 자신의 저작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잠재적 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제 저작권등록대행업체를 통한 등록을 고려할 수 있다.

### 사. 저작권 단체

현재 핀란드에는 7개의 저작권 단체가 있다.

- 작곡가 저작권 사무소 Teostory
- 공연 아티스트 및 음원 제작자 저작권 협회 GRAMEXry
- 작가, 공연자 및 출판사의 공동 조직 Kopiostory
- 시청각 제작자 핀란드 APFIry
- 비주얼 아티스트 저작권 협회 Kuvastory
- 작가와 번역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영리 협회 Sanastory
- 배우 저작권 협회-Skådespelarnas upphovsrättsorganisation Filmexry

그 외에도 저작권 정보 감독 센터(antipiracy), 핀란드 저작권 협회(copyrightsociety)가 있다.

<sup>220)</sup> 핀란드 교육문화부 <https://minedu.fi/luvat>

### 3.1. 관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저작권법상 분쟁의 관할은 법원(Market Court)에 있다(특허법 64조, 실용신안법 43조, 디자인법 43조, 상표법 75조, 저작권법 61조).

### 3.2. 사법구제

특허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특허법58조).

고의 또는 과실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 사용 및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고의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 사용 및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상표법 69조), 이에 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다(상표법 70조).

### 3.3. 행정구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특허 침해 제품을 변경 또는 파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특허법 59조).

법원은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표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고의 여부에 무관하게 침해 표지가 표시된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71조).

### 3.4. 형사구제

고의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한 경우, 핀란드 형법 49장 2절의 '지식재산범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특허법 57조, 상표법 62조, 74조, 저작권법 56조).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 2. 유럽

### XXII. 헝가리

- 01. 지식재산제도 개요 \_ 401
- 02. 유형별 지식재산권 \_ 403
- 03.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_ 413



### 1.1. 개요

헝가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률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능하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선, 윤곽, 모양, 색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 또는 그 장식에 기인하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에 대해 인정되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헝가리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헝가리가 가입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PCT	파리협약	베른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부다페스트 조약	UVOP(식물의 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 (1980. 6. 27.)	가입	가입	가입 (1997. 10. 3.)	가입	가입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EU편 참고)

221)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헝가리 지식재산권 사무소(HIPO) 홈페이지 및 각 법 규정을 참조하였음

## 1.2. 지식재산 관련 기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 대부분의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 헝가리 지식재산권 사무소(HIPO)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재판소가 1심, 메트로폴리탄 항소 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을 관할하는 사법심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222)</sup>

PRESIDENT			
NATIONAL COUNCIL OF INTELLECTUAL PROPERTY	CABINET OF THE PRESIDENT	HUMAN RESOURCES MANAGEMENT SECTION	INFORMATION SERVICES DEPARTMENT
HUNGARIAN DESIGN COUNCIL			
VICE-PRESIDENT FOR INNOVATION AND LEGAL AFFAIRS	VICE-PRESIDENT FOR TECHNICAL AFFAIRS	DIRECTOR GENERAL FOR FINANCIAL AFFAIRS	

[그림] HIPO의 조직구조<sup>223)</sup>

## 1.3. 지식재산권 출원 통계<sup>224)</sup>

구분	특허		상표		디자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4	659	73	9,974	4,168	967	73
2015	668	64	9,268	4,184	848	113
2016	726	49	10,836	3,885	1,076	146
2017	593	36	11,736	4,373	919	234
2018	529	36	8,762	4,964	841	94

222)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patent-litigation-2020/hungary>

223) <https://www.hipo.gov.hu/en/szervezeti-felepites-lekerdezese/organization>

224) [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HU](https://www.wipo.int/ipstats/en/statistics/country_profile/profile.jsp?code=HU)

## 2.1. 특허

### 가. 보호대상

특허는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발명의 유형으로 물건, 장치, 기기 및 방법발명이 있다.

### 나. 등록요건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만족하여야 하고,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조물
- 디자인,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게임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법칙 내지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특허청의 의견서를 첨부한 조사보고서 작성, ④ 출원공개, ⑤ 실체심사, ⑥ 특허부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출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허청 의견서를 첨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조사보고서에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성에 검토가 이루어진다.

특허출원부터 특허부여까지는 통상적으로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sup>225)</sup>

### 라. 특허권의 효력

#### 1) 보호범위 및 존속기간

특허권자는 등록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고, 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명세서를 참작할 수 있다.

특허권은 특허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유효하고,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하다.

225) <https://pintz.com/applying-for-a-patent>

## 2) 특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특허권자는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후 또는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시점에 발명이 헝가리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외 비상업적 목적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강제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3) 특허권의 효력 제한

특허권은 특허 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발명을 실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마. 심판·소송 제도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메트로폴리탄 재판소에 항소(재심사 요청)를 제기할 수 있고, 메트로폴리탄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메트로폴리탄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sup>226)</sup>

등록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소급하여 등록되지 않을 것으로 한다. 특허등록 무효사유에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 자격의 흠결, 발명의 불충분한 공개 등이 있으며, 헝가리의 법 제도 하에서 침해 소송 또는 침해 금지 가처분 절차를 다루는 법원에서는 특허를 무효로 할 권한이 없다.

226)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patent-litigation-2020/hungary>

## 바. 비용<sup>227)</sup>

(단위 : huf)

항목	비용		
	구분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 경우
출원료	기본 출원료	37,400	9,350
	11개 ~ 20개 청구항 추가 출원료	1,900	475
	21개 ~ 30개 청구항 추가 출원료	3,800	950
	31개 청구항 이상 추가 출원료	5,600	1,400
심사료	-	63,800	15,950
등록료	기본	35,200	8,800
	6페이지 이후부터 추가 페이지 당	3500	875

## 2.2. 실용신안

### 가. 보호대상

형가리는 물건, 장치 및 기기에 대하여 실용신안으로 보호하고 있고, 다만 특허와 달리 방법발명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등록요건

실용신안 등록을 위해서는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허에 비해 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른 진보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용신안 등록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실용신안 등록 받을 수 없는 예는 아래와 같다.

- 발견, 과학이론 및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조물

227) 기타 상세 비용은 헝가리 HIPO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www.szttnh.gov.hu/sites/default/files/patents\\_schedule\\_of\\_fees\\_2019-final.pdf](https://www.szttnh.gov.hu/sites/default/files/patents_schedule_of_fees_2019-final.pdf))에서 검색 가능

- 디자인, 지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게임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한 법칙 내지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등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와 달리 HIPO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할 뿐, 출원한 실용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실체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 가능하다.

따라서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6개월에서 12개월만이 소요된다.

#### 라. 실용신안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실용신안권자는 등록 실용신안을 보호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 실용신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2)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 3) 실용신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실용신안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에 관해서는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실용신안권자는 계약에 의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 실용신안에 대하여 제3자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고, 실용신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고, 출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할 때 합리적 범위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경우 강제 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다.

##### 4)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

실용신안권의 효력 제한에 관해서는 특허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실용신안권 역시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 실용신안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실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마. 비용<sup>228)</sup>

(단위 : huf)

항목	비용		
	구분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 경우
출원료	기본 출원료	17,000	4,250
	11개 이상 청구항의 경우 청구항 당 추가 출원료	1,100	275
유지료	처음 5년	21,400	10,700
	6페이지 이후부터 추가 페이지 당	32,000	16,000

## 2.3. 디자인

### 가. 보호대상 및 등록요건

헝가리 디자인 법은 ‘디자인’을 ‘선, 윤곽, 모양, 색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 또는 그 장식에 기인하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으로, ‘물건’을 산업 또는 수공예 물품으로 정의(단,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은 신규성이 인정되고,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디자인권으로 등록 가능하며, 신규성은 실질적 동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디자인과 다르다는 인상을 줄 때 독창성이 인정된다.

공공질서와 도덕에 반하는 경우, 법에서 규정한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나.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출원공개, ④ 실체심사, ⑤ 등록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디자인 출원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출원 수수료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 HIPO에서 디자인

228) 기타 상세 비용은 헝가리 HIPO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www.szttnh.gov.hu/en/English/hami/haszn\\_minta\\_dijtablazat\\_EN.pdf](https://www.szttnh.gov.hu/en/English/hami/haszn_minta_dijtablazat_EN.pdf))에서 검색 가능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 다. 디자인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보호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을 제조, 복제,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수입, 수출 등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디자인권은 사용자로 하여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사디자인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보호된다.

##### 2)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디자인권자의 요청에 5년씩 총 4회에 걸쳐 가장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3) 효력 제한

(i) 디자인권은 사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ii) 실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iii) 등록 디자인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지는 경우, (iv) 일시적으로 헝가리 영토에 진입한 타국에서 등록된 선박 및 항공 등이나, 이러한 선박 및 항공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의 예비 부품 및 부속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 4)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

디자인에 의해 부여된 권리는 디자인에 기인하는 디자이너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권 양도 및 실시권 설정 계약에 관해서는 특허법의 적용을 받는다.

#### 라. 심판·소송제도

등록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등록된 경우, 등록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HIPO에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HIPO 결정에 대해서는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메트로폴리탄 항소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마. 비용<sup>229)</sup>

(단위 : huf)

항목	비용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 경우
출원료	기본 출원료	32 000
	추가 디자인(최대 50개) 당 추가 출원료	6 400
갱신료	첫 번째 5년	64 000
	두 번째 5년	85 400
	세 번째 5년	107 000
	네 번째 5년	160 000

## 2.4. 상표

### 가. 보호대상

헝가리는 상거래에서 타인의 상품 및 상표와의 식별력을 가지는 단어, 문자, 숫자, 상품 또는 포장의 형태, 소리, 동작,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표시를 상표로 보호하고 있다.

### 나. 등록요건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된다(상대적 거절이유). 그 외 등록이 거절되는 예로서 아래의 경우가 있다(절대적 거절이유).

- 식별력 없는 표시
- 상품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형태 또는 다른 특성
-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태 또는 다른 특성
- 법률, 공공질서 및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상표
- 제품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해 대중으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 종교적 표시와 같이 상징적 가치가 중요한 표시 등

229) 기타 상세 비용은 헝가리 HIPO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www.sztnh.gov.hu/en/English/formaterv/Design\\_EN.pdf](https://www.sztnh.gov.hu/en/English/formaterv/Design_EN.pdf))에서 검색 가능

## 다. 취득절차 및 출원/등록 기간

① 출원, ② 방식심사, ③ 실체심사, ④ 출원공개, ⑤ 이의신청, ⑥ 등록 여부 결정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출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7개월 내지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sup>230)</sup>

헝가리의 경우, HIPO에서 도메인 이름 등록을 담당하지 않으며 이는 별도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서 관장한다. 다만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면 상표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부에서도 해당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 라. 상표권의 효력

### 1) 효력발생 및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 2) 보호범위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하고 처분할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상표권자는 제3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등록 상품(서비스) 및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 및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등한 비율로 상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3) 효력 제한

상표법 제15조 및 제16조는 상표권의 효력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유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럽 경제 지역(EEA) 내 시장에서 유통된 등록 상표 및 등록 상품의 경우, 자신의 이름 또는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4) 사용권 설정 및 상표권 이전

상표권자는 계약에 의해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도 상표권 양도가 가능하다. 다만 상표권 이전 계약은 소비자로부터 하위금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경우 그

230) <https://www.ip-coster.com/IPGuides/trademark-hungary>

계약을 무효로 한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권 설정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 마. 심판·소송제도

등록상표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에 대한 취소 및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i) 등록 취소 사유에는 ① 등록상표를 5년간 계속하여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절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② 상표 등록 이후, 등록상표가 등록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거래의 보통 명칭이 된 경우 등이 있다, ③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한 결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또는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된 경우 등(상표법 제34조, 제35조)이 있고, (ii) 등록 거절사유가 있음에도 상표 등록이 된 경우,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상표법 제33조).

### 바. 비용<sup>231)</sup>

(단위 : huf)

항목	비용		
출원료	상표	1개류(class)	60,000
		2개류	80,000
		3개류	110,000
		4개류	150,000
		이후 추가 류당	40,000
	집합 표장 또는 증명 표장	1개류	200,000
		2개류	220,000
		3개류	250,000
		4개류	290,000
		이후 추가 류당	40,000
갱신료	2019. 1. 30. 이전 존속기간 만료 상표권	3개류 상품의 경우	74,800
		4개류 이상의 경우, 추가 류당	32,000
	2019. 1. 30. 이후 존속기간 만료 상표권	1개류	60,000
		2개류	80,000
		3개류	110,000
		4개류	150,000
		5개류 이후 추가 류당	40,000

231) 기타 상세 비용은 헝가리 HIPO 홈페이지 내 비용안내 항목([https://www.sztnh.gov.hu/en/dijtablazat\\_-en\\_2019jan.pdf](https://www.sztnh.gov.hu/en/dijtablazat_-en_2019jan.pdf))에서 검색 가능

## 2.5. 저작권

### 가. 보호대상

창작의 방식, 표현의 형태 및 그 가치와 목적에 관계없이 표현되는 독창적인 지적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창작물, 특히 글이나 구술 텍스트, 음악적 구성, 음악, 안무 및 연극 작품, 시청각 작품, 미술 작품 등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① 아이디어, 이론, 과학적 발견, 수학적 개념, ② 뉴스 및 언론 정보, ③ 단순한 사실 및 데이터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저작권의 효력

#### 1) 독점배타적 권리 및 존속기간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과 함께 그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생애 전체와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사후 70년간 존속된다. 공동저작물에 관해서는,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의 생애 및 마지막 생존 저작권자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그의 사후 70년까지 존속한다.

#### 2)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권 설정

저작권자는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다만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자는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고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작성자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해석한다.

### 다. 등록요건

헝가리는 베른협약 가입국으로서,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후 침해 등이 문제될 경우 법원에 의해서 저작권의 확인 또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 3.1. 관할

헝가리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문법원을 두고 있지는 않고, 메트로폴리탄 재판소가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침해와 관련, 침해소송 및 예비 금지명령 절차에 관해서는 부다페스트 메트로폴리탄 재판소가 1심 관할권을 가지고, 메트로폴리탄 항소 법원이 2심, 대법원이 3심을 관할하는 사법심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232)</sup>

### 3.2. 민사적 대응

각 권리 소유자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 ① 침해사실을 공표하고, 침해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②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③ 부가적으로 침해 행위자에 대해 시장에서의 침해 제품 및 침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재료 및 수단의 폐기, 유통 경로에서 침해 제품의 회수 및 제거 등 불법행위를 종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3.3. 형사적 대응

각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3.4. 행정적 대응

침해 제품이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EU 규정에 기초하여 권리자는 세관의 통관 보류 조치(border measures) 등을 통해 침해 제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sup>232)</sup>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patent-litigation-2020/hungary>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권별 목차

1. 아시아		2. 유럽		3. 북미·중남미	
01. 대만	1	01. EU	1	01. 미국	1
02. 라오스	21	02. 그리스	17	02. 캐나다	35
03. 말레이시아	45	03. 네덜란드	35	03. 과테말라	65
04. 몽골	75	04. 덴마크	61	04. 도미니카공화국	85
05. 미얀마	95	05. 독일	77	05. 멕시코	103
06. 방글라데시	119	06. 루마니아	103	06. 베네수엘라	131
07. 베트남	141	07. 벨기에	119	07. 브라질	149
08. 스리랑카	169	08. 불가리아	133	08. 아르헨티나	175
09. 싱가포르	189	09. 세르비아	151	09. 에콰도르	193
10. 인도	215	10. 스웨덴	175	10. 칠레	213
11. 인도네시아	233	11. 스위스	197	11. 코스타리카	235
12. 일본	259	12. 스페인	217	12. 콜롬비아	253
13. 중국	295	13. 슬로바키아	239	13. 쿠바	275
14. 캄보디아	321	14. 영국	253	14. 파나마	293
15. 태국	345	15. 오스트리아	281	15. 파라과이	313
16. 파키스탄	367	16. 이탈리아	295	16. 페루	335
17. 필리핀	389	17. 체코	307		
18. 홍콩	419	18. 크로아티아	323		
		19. 폴란드	339		
		20. 프랑스	355		
		21. 핀란드	379		
		22. 헝가리	399		
4. 중동		5. 아프리카		6. 러시아·CIS·대양주	
01. 모로코	1	01. 가나	1	01. 러시아	1
02. 사우디아라비아	29	02. 나이지리아	25	02. 벨라루스	27
03. 아랍에미리트	51	03. 남아프리카공화국	45	03. 아제르바이잔	47
04. 알제리	79	04. 모리셔스	71	04. 우즈베키스탄	63
05. 오만	99	05. 모잠비크	87	05. 우크라이나	85
06. 요르단	123	06. 세이셸	111	06. 카자흐스탄	105
07. 이라크	149	07. 수단	131	07. 키르기스스탄	123
08. 이란	169	08. 에티오피아	149	08. 뉴질랜드	143
09. 이스라엘	189	09. 우간다	173	09. 호주	157
10. 이집트	209	10. 짐바브웨	197		
11. 카타르	233	11. 케냐	221		
12. 쿠웨이트	249	12. 코트디부아르	247		
13. 터키	269	13. 탄자니아	269		
14. 튀니지	293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소재 국가 지원

### 1. 지재권 상담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애로사항 상담

- ▶ 현지 IP-DESK 전문인력을 통해 현지 IP제도, 정책 소개, 지재권 출원 절차, 지재권 침해·피침해 구제방법 등 지재권 관련 상담

#### [상담방법]

IP-DESK	현지 IP-DESK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
	현지 전문로펌을 통한 지재권 전문상담

### 2. 해외 상표, 디자인 출원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IP-DESK를 통해 현지에서 상표·디자인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상표한도	\$300 (\$650)	\$600	\$500	\$1,000	\$550	\$300	\$300	\$300	\$300
디자인 한도	\$300 (\$650)	\$1,000	\$500	\$600	\$550	\$600	\$200	\$300	\$300
지원비율	실제 출원비용의 최대 50% 지원								
지원건	신청기업별 연간 8건(국가제한 없음)								

####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지원서 선택한 법률사무소와 상표·디자인 출원 계약
신청기업	출원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및 출원신청
KOTRA	비용지원	출원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 3.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침해) 조사 및 법률검토 지원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확인서 발급가능기업)으로 IP-DESK가 설치된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조사 및 법률 검토 시 발생하는 비용·절차 지원

#### <국가별 지원 비용>

국가	중국(홍콩)	미국	일본	독일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지원내용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법률의견서(경고장, 침해감정서 등) 작성비용 일부 지원								
지원건수	신청기업별 연간 3건(국가제한 없음)								
지원한도	\$10,000/건(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공동신청시 기업수만큼 한도증액								
지원비율	최대 70% 지원 (중복지원시 20%씩 지원비율 하락, 70%→50%→30%)								

※ 협의체 공동신청은 한류편승 관련 사건 우선지원 예정

#### <지원 절차>

신청기업	지원신청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각 IP-DESK에서 지원서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지
신청기업	법률사무소 계약	법률사무소(침해 조사 기관)와 계약
신청기업	침해조사 및 법률검토	기업부담금 납부 및 침해·피침해 조사, 행정단속, 침해감정서 결과보고
KOTRA	비용지원	IP-DESK가 결과보고서 확인 후 법률사무소에 직접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미소재 국가 지원

권역	지원 국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대만, 몽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호주
유럽 및 중동	네덜란드, 러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란
북미 및 중남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 1. 법률자문 지원

해외 지재권 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 일부 현지 지재권 전문가를 통한 법률자문 지원

###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출원지원	상표·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지원	소요비용 50% (건당 \$1,500한도)	연 4건/1사 (국가별 통합, 출원 상담 지원 통합)
분쟁대응	경고장 접수 등 지재권 분쟁 발생에 따른 법률 상담 비용 지원	소요비용 70% (건당 \$3,000한도)	

###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법률자문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법률자문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2.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단속 지원

해외 위조상품 유통피해 방지를 위한 현지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비용 지원

- ▶ 해외 진출(예정) 국내 중소기업
- ▶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등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피침해 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 지원

### <지원 비용>

구분	세부 내용	지원비용	지원건
침해조사	위조상품 유통 현황 파악, 출처 추적 등	소요비용 70% (건당 \$6,000한도)	연 1건/1사 (침해조사, 행정단속 동시신청시 1건 인정)
행정단속	침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침해기업 현장단속 및 법률조치, 세관조치 지원 등 (침해조사 연계만 가능)	소요비용 70% (건당 \$4,000한도)	

### <지원 절차>

신청기업	신청 및 접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www.kotra.or.kr)
KOTRA	지원여부 심사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신청기업	해외전문기관 계약	전문기관(법률사무소)과 피침해 실태조사(단속지원) 계약 체결
전문기관	법률자문 지원	신청기업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제출
신청기업	실태조사비용 납부	전문기관(법률사무소)에게 실태조사 비용 전액납부
신청기업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결과보고서 및 납부 증빙)
KOTRA	지원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www.kotra.or.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지원서비스 안내」 ▶ 「해외진출지원」 ▶ 「해외투자진출」 ▶ 「지식재산권보호」 페이지 내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02-3460-3357/3359, ip-desk@kotra.or.kr]

# kotra 해외지재권보호사업 소개

## 해외지식재산권보호사업 IP-DESK 현황 및 연락처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 9개국 15개소  
 ● IP-DESK 미소재 국가 사업수행 : 20개국 20개소

### IP-DESK 연락처

국가	전화	이메일
미국	LA	1-323-954-9500(142)
	뉴욕	1-646-918-5594
독일	프랑크푸르트	49-69-2429-9299
일본	도쿄	81-3-6273-4638
태국	방콕	66-2-035-1558
베트남	호치민	84-28-3822-3944(13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62-2-574-1522(Ext. 140)
필리핀	마닐라	63-2-8894-4084
인도	뉴델리	91-124-4628-500(514)

국가	전화	이메일
중국	베이징	86-10-6410-6162(47)
	상하이	86-21-5108-8771(118)
		86-21-5108-8771(116)
	칭다오	86-532-8388-7931(209)
	광저우	86-20-2208-1600(1405)
	선양	86-24-3137-0770(813)
	홍콩	852-3465-2921

### IP-DESK 미소재 국가 연락처

해외지재권실 : 02-3460-3351, ip-desk@kotra.or.kr

KOTRA자료 20-236

## 해외 지식재산제도 가이드 2. 유럽

---

발행인 : 권평오  
발행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발행일 : 2020년 12월  
주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 02-3459-3357/3359  
작성기관 : 법무법인(유한) 다래  
홈페이지 : www.kotra.or.kr

---

ISBN

979-11-6490-566-9 (94320)  
979-11-6490-567-6 (95320)(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